

발 간 등 록 번 호

33-9750040-000473-01

사회변화와 헌법

2024-G-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미국에서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미국에서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진 호 성 책임연구관(제도연구팀)

목 차

I.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3

II. 소셜미디어 환경과 청소년 규율 / 5

- 1. 소셜미디어 개관 5
 - 가. 정의 및 분류 5
 - 나. 특징 8
 - 다. 사회적 기능과 부작용 10
 - 라. 소결 11
- 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 13
 - 가. 이용현황 13
 - 나. 문제점 14
 - 1) 외국의 연구 15
 - 2) 국내의 연구 17
 - 3) 소결 21
- 3. 국내 규제 동향 22
 - 가. 현행 법령의 내용 22
 - 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4
 - 다. 입법 추진 동향 24
 - 라. 소결 25

III. 비교법적 검토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27
1. 미국 입법례 및 관련 법적 논쟁	27
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규제 동향	27
1)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27
2) 청소년보호와 인터넷규제입법의 위헌성에 관한 종래의 논의	29
가) Reno v. ACLU 사건	30
나) Ashcroft v. ACLU 사건	30
다) United States v. American Library Assn., Inc. 사건	32
3) 초기 소셜네트워킹웹사이트 규제 시도	33
4) 현재 유효한 법령 - 연방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34
나. 문제의 발단 - 페이스북 청문회	35
다.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와 한계	36
라. 연방의회의 대응과 비판	37
1) 아동온라인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 KOSA)	37
2) 아동온라인안전및프라이버시법(Kids Online Safety and Privacy Act: KOSPA)	38
3) 비판	42
가)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기술만능주의적 접근	45
나)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모호한' 표현에 대한 위헌적 검열	46
다) 성인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 및 실효성 없고 유해한 대응이라는 비판	47
라) 막연히 청소년보다 부모의 권리, 정부의 권한을 우위에 둘 우려	48
마. 각 주의 입법적 대응과 법적 분쟁	49
1) 오하이오주의 경우	50
가) 입법내용 및 동향	50
나) 당사자의 주장	51
다) 법원의 판단	52
(1) 심사기준	52

(2) 내용 기반 규제 여부	53
(3) 문제되는 법의 위헌성	54
(4) 모호성 해소 여부 - 수정헌법 제14조 관련	55
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5
가) 입법내용 및 동향	55
나) 당사자의 주장	57
다) 법원의 판단	57
(1) 표현의 자유 제한 여부	58
(2) 위헌가능성	58
3) 아칸소주의 경우	59
가) 입법내용 및 동향	59
나) 법원의 판단	60
4) 유타주의 경우	63
5) 플로리다주의 경우	64
가) 동향	64
나) 입법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64
다) 입법내용	65
6) 뉴욕주의 경우	66
가) 청소년 대상 중독성 피드 악용 방지법(SAFE For Kids Act)	66
나) 청소년데이터보호법(New York Child Data Protection Act)	67
2. 미국 외 입법례 전반	69
가. 유럽연합(EU)	69
나. 영국	71
다. 일본	75
IV.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의 헌법적 한계	78
1. 쟁점의 정리	78

2. 문제되는 헌법상 기본권, 국가의 의무	78
가. 보호대상으로서 청소년	78
나. 기본권주체로서의 청소년	79
다. 다른 기본권주체들	82
1) 부모	82
2) 소셜미디어 업체	83
3) 다른 이용자	86
3. 심사기준	87
가. 명확성원칙	87
나. 사전검열금지원칙	88
1) 국가에 의한 검열	88
2) 사적 검열	90
다. 과잉금지원칙	93
4. 개별 쟁점별 평가	93
가.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유해성 평가	93
나. 유형별 시사점	96
1) 부모의 원칙적 동의를 강제하는 유형 - 연령확인제 전제	96
2)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유형	98
3) 이용가능한 기능을 제한하는 유형	99
4) 유해성 완화에 관한 각종 조치를 요구하는 유형(업체)	101
5. 대안적 논의의 소개	101

V. 결론 / 103

■ 참고문헌	104
--------------	-----

초 록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하여 미국에서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헌법상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막대한 정보와 사상을 접할 수 있는 매체로 그 사회적 기능과 문제점 모두 복잡다단하게 나타나는데, 청소년의 이용 실태 역시 본질적으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소셜미디어가 갖는 잠재적 위험성뿐만 아니라 이점, 그리고 청소년 사회문제의 복잡성 등을 생각해 보면,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소셜미디어 규제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청소년은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이로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근래 해외 각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일반적 규제를 넘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과 주 차원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러 규제입법이 도입되고 사법적 판단도 이루어진 바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핵심은 본인확인제를 전제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연령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성인에게도 청소년과 동등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를 강제하여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인터넷규제에 관한 종전 논쟁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기도 하는데, 하급심에서는 대체로 규제내용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우리의 경우 이제 막 입법적으로 소셜미디어 규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있지만, 이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와 섯다운제를 시행한 바 있고 별도 연령확인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후견주의적 규제입법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 헌법상의 한계를 살펴 보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은 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본권을 폭넓게 제한하는데, 대표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이나 성소수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 미처 예상치 못한 기본권제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제는 국가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대신하여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측면이 있고, 자유의 매개체로서 소셜미디어 업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기

본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령확인이 강제될 경우에는 연령확인을 원치 않거나 쉽게 연령확인을 할 수 없는 다른 성인 이용자의 익명의 자유까지도 제한할 우려가 있고, 부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초래한다. 한편, 청소년과 소셜미디어를 특정하는 규제입법은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고, 청소년유해성의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관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과잉한 규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무분별하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규제입법을 계수하는 것을 경계하고, 만에 하나 이를 논의한다면 그 헌법적 한계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소셜미디어, 인터넷, 플랫폼, 청소년기본권, 표현의 자유, 익명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 연령확인제, 미국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이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라고도 함)¹⁾의 출현은 인류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다. 1990년대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등장 이후 인터넷을 매개로 거리의 제약이 없는 이용자 간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smartphone)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app]이라고도 함)이 대중화되고, 데이터통신 등 이동통신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인터넷에의 접근성, 편리성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사회구조에 다시 한 번 중대한 변화가 생겨났다. 새로운 매체는 기존의 표현방법(라디오, TV)이나 의사소통수단(우편, 전화)의 연장선상에서 이용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체하거나 보다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전형적인 소셜미디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은 물론, 모바일 메신저의 기능을 갖는 카카오톡(KakaoTalk)이나 비디오 플랫폼의 역할을 겸하는 유튜브(YouTube) 등의 매체를 일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기성언론과 대비하여 이러한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효과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소셜미디어는 당연하게도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래 한국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지 비율이 98%이고 이들 중 약 60% 이상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한달간 인스타그램과 같은 전형적인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69.9%(특히 여학생의 경우

1)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개념은 종전 영미권에서 사용하던 social media와 social network service의 개념을 한국어권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이 두 용어는 많은 경우 상호 대체가능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신문, 잡지, TV와 같은 정보 전달의 매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타인과의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양자를 정확히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개념 설정에 따라 그 범위가 다소 달라지기도 하므로, 이 연구보고서에서 양자를 엄밀히 구별하여 사용할 실익은 크지 않다.

한편,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관하여 한자어로서 정립된 법률용어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은 물론 여러 국회 입법안, 정부 보도자료 등을 살펴보면 역시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사회연결(관계)망서비스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85.1%, 고등학교 3학년 그룹의 경우 80.6%), 유튜브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이 97.7%(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약 90%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²⁾ 청소년의 절대 다수가 소셜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은 외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아직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셜미디어 이용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범죄를 조장하는 등 사회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최근 국제적인 대형 플랫폼(platform)사업자에 대한 규제 흐름 속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으로 확장되었고, 지난 수년간 각종 규제입법이 제안되거나 실제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활발한 이용에 비해 언론에서 소셜미디어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거나 외국 규제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칠 뿐, 입법론을 포함하여 아직 관련 법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위헌성 논란 속에 결국 입법자에 의해 폐지된 섯다운제(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가 존재하였는데, 관련 논의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해서도 상당 부분 여전히 유효하다. 섯행 연구 대다수는 소셜미디어 또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일반론에 관한 것이거나,³⁾ 청소년의 선거연령 제한 또는 게임물 이용 제한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연구이다.⁴⁾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외국에서의 동향으로부터 출발하여 향후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하여 선제적으로 헌법적 검토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은 실제 법적 제한을 가하는 입법과 이에 대한 반발 속에서 관련 헌법적 논쟁이 구체화된 사례로서, 우리의 법적 논의에 있어서도 여러

-
- 2) 배상률, 이창호, 김남두,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I: 10대 청소년,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64, 77, 105면.
 - 3) 예컨대 이동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에서 액세스권의 헌법적 의의, 유럽헌법연구 제13권, 2013, 263-292면; 김명수,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제4권 제2호, 2014, 110-145면; 권은정, 소셜 미디어 규제의 공법적 타당성에 관한 소고 - 허위정보 유통 규제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제31호, 2019, 545-587면; 김성화, 독일의 SNS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권법평론 제22호, 2019, 3-36면; 김현귀,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법과 정책 제26권 제1호, 2020, 27-59면 등.
 - 4) 예컨대 김지혜,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 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건과 섯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3권 제1호, 2014, 111-130면; 박종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111-145면; 황성기,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 2014, 27-49면 등.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소셜미디어의 부작용 전반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이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은 주로 성인과 대비하여,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헌법적 차원에서 청소년이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하여 기본권행사능력에 한계가 있는 자이자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상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하여 청소년을 개념 정의한 경우가 없고, 외국의 경우에도 규제마다 청소년의 범위를 달리 설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의무조항에서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뿐으로(헌법 제34조 제4항), 실제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으로(민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753조 등),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 등으로 보호된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59조). 유언, 임금청구, 국적법상 신고 등에 있어서도 보호되는 청소년의 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은 대체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여겨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을 참고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⁵⁾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라고 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⁶⁾ 그러나 소셜미디어 이용의 경우 다른 행위와 반드시 그 제한의 필요성이 같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 입법례를 보면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다소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

5) 참고로, 민법은 성년자를 만 19세에 이른 자로 규정하고(민법 제4조),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한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에 관해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이라고 정의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다는 점은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 보고서에서 “청소년”은 논의의 편의상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청소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본다.

한편 이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할 “소셜미디어”의 개념과 범주에 관해서는 본론 II장에서 별도 서술한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 연구를 기초로 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 검토나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연구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 결론을 제외하고 3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II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 및 관련 법규를 알아본다. III장에서는 외국 입법례 전반을 간략히 정리하고, 주로 미국에서의 입법동향과 관련 법적 분쟁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국내법상의 논의로 끌어들이어 헌법적 시사점을 탐구한다.

II. 소셜미디어 환경과 청소년 규율

1. 소셜미디어 개관

가. 정의 및 분류

소셜미디어는 소셜(social)과 미디어(media)가 결합된 단어로 흔히 사람들이 정보와 경험, 생각과 의견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이자 도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는 하나,⁷⁾ 이러한 개념정의가 언제나 유일하게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이는 영미권에서 유래한 소셜미디어라는 용어가 우리 법상 정의된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강화상으로도 학문영역과 견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 하에 하위 범주를 설정하거나 대체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⁸⁾ 미국에서는 2020년 기준 지난 25년간 “소셜미디어”라는 용어가 제목에 포함된 출판물만 하더라도 적어도 110,000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⁹⁾ 기간에 따라서는 소셜미디어를 대신하여 컴퓨터기반소셜네트워크(computer-supported social networks), 가상커뮤니티(virtual communities),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s), 소셜네트워크사이트(social network sites)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에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블로그(blog), 비즈니스 네트워크(business network), 제품/서비스 리뷰(products/services review),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 집단 프로젝트(collaborative

7) 설진아, 소셜미디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4면.

8) 예컨대 소셜미디어를 웹 2.0의 이념적, 기술적 기반 위에 구축된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 집합으로서, 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생성과 공유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Kaplan A. and Haenlein M., Users of the World, Unit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Social Media, *Business Horizons* 53(1), 2010, 61; social network sites를 (1)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 공개 또는 반공개 프로필을 구축하고, (2) 연결을 공유하는 다른 사용자 목록을 작성하며, (3) 자신과 다른 이들이 만든 연결 목록을 보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 기반 서비스라고 정의하는 경우로, Boyd D. M. and Ellison N. B.,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007, 211.

9) Aichner T., Grünfelder M., Maurer O., and Jegeni D., Twenty-Five Years of Social Media: A Review of Social Media Applications and Definitions from 1994 to 2019,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4(4), 2021, 215. 그 이전부터도 소셜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정의가 없고,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이용과 그 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화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는 견해로, Carr, C. T. and Hayes, R. A., Social Media: Defining, Developing, and Divining, *Atlantic Journal of Communication* 23(1), 2015, 46-65.

project), 포럼(forum), 기업소셜네트워크(enterprise social network), 사진 및 동영상 공유(photo and video sharing), 소셜게이밍(social gaming),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 가상 세계(virtual world)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함께 설명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¹⁰⁾

그럼에도 소셜미디어의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여 소셜미디어가 서로 다른 이용자를 연결하여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에 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의되어 왔다고 평가되었다.¹¹⁾ 다만 소셜미디어를 정의함에 있어 2010년 이전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people)” 간의 연결도구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면, 2010년 이후에는 공통 관심사가 사라지고 “이용자(user)”의 콘텐츠(contents) 생성(creation)과 공유(share)로 초점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는 흔히 실제 현실과 구분되는 소셜미디어 등 가상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형식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하여 이용자 간의 정보 생성, 교환, 공유를 통해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매체 내지 플랫폼은 모두 광의의 소셜미디어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고 상품 구매 후기를 남기도록 하는 경우, 정부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에 대해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경우도 결국 이용자에 의한 정보 생성과 교환, 공유를 전제로 하므로 소셜미디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 자체가 주된 목적인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관계지향형’의 소셜미디어를 협의의 소셜미디어라고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같이 사회적으로는 SNS라고도 많이 지칭되는 전형적인 소셜미디어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다분히 상대적이고 임의적인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용자 간 정보교류가 가능한 경우에

10) Aichner T., Jacob F., Measuring the degree of corporate social media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57(2), 2015, 259-260. 각 예시로 블로그의 경우 The Huffington Post,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경우 LinkedIn, 제품/서비스 리뷰의 경우 Amazon, 마이크로블로그의 경우 Twitter나 Tumblr, 집단 프로젝트의 경우 Wikipedia, 포럼의 경우 IGN Boards, 기업소셜네트워크의 경우 Socialcast, 사진 및 동영상 공유의 경우 Flickr나 YouTube, 소셜게이밍의 경우 World of Warcraft, 소셜네트워크의 경우 Facebook, 가상 세계의 경우 Second Life 등을 제시하였다.

11) Aichner T., Grünfelder M., Maurer O., and Jegeni D., Twenty-Five Years of Social Media: A Review of Social Media Applications and Definitions from 1994 to 2019,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4(4), 2021, 217-220.

는 언제든지 실질적으로 협의의 소셜미디어와 같이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온라인플랫폼으로서 소셜미디어에 속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서비스를 예시하는 것은 쉽지만, 객관적으로 소셜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아닌 것을 특정하여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소셜미디어 자체가 인터넷상에서 언어를 주고받는 사회적 상호작용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강학상 협의의 소셜미디어를 달리 정의한다면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주로 인간관계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어느 정도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또는 어떠한 정보(콘텐츠)를 다루거나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경우 규제대상인 소셜미디어로 보아야 하는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대상인 소셜미디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교육 목적 등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경우 그 예외로 두고 싶어 한다. 이용자 간의 서비스를 그 자체로 규제대상인 소셜미디어로 보되 일부 공익적이거나 생활필수적이거나 주로 일방향의 정보전달만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는 규율이 대체로 그와 같다. 그러나 이는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소셜미디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자칫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규제하여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¹²⁾ 반대로 소셜미디어의 종류를 특정하여 제한할 경우 결국 내용에 대한 검열과 닮은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와 이용자 수, 사회적 영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규율의 강도를 달리 하거나, 성인과 청소년에게 동등한 수준의 규율을 적용하는 입법형식이 논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소셜미디어라는 광범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되는 규제의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연구대상인 “소셜미디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로서, 이용자 간 정보공유 또는 관계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중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청소년 이용률(이를 이용자 기반이라고도 함)이 높은 것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2) 후술할 미국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접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셜미디어를 구분하려는 입법기술에 대해서도 이 자체가 표현행위 규제가 아닌지 다투어지기도 한다.

나. 특징

미디어연구 쪽에서는 소셜미디어에 관하여 주로 신문, 방송 등 기성 언론출판매체 그리고 비교적 폐쇄적인 포털(portal) 사이트 환경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 핵심내용으로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보통신환경(이른바 ‘웹2.0’)을 토대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로서 ‘참여’, ‘개방’, ‘대화’, ‘커뮤니티’, ‘연결’ 등의 키워드가 제시된다.¹³⁾ 즉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식과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도록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와 피드백이 매우 ‘개방’되어 있으며, ‘쌍방향 대화’를 지향하고,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소통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나 ‘연결(link)’을 통해 상호 관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이는 다른 말로 ‘이용자 중심’, ‘참여 지향’, ‘집단지성’을 활용한 플랫폼 기반이라고도 일컬어진다.¹⁴⁾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기성매체와 비교하여 보다 용이하게,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소통행위를 하면서 전혀 새로운 공동경험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점이나,¹⁵⁾ 이용자 간의 참여에 의한 상호작용성이 촉진된 점¹⁶⁾ 등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셜미디어의 개별적인 특징으로 접근용이성 등 여러 요소가 제시되기도 하나,¹⁷⁾ 모든 소셜미디어가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대상으로 삼는 소셜미디어의 경우 대체로 가입, 접근, 이용이 비교적 개방적이거나, 모든 소셜미디어가 정확히 동일한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¹⁸⁾ 소셜미디어에 따라 가입, 접근이나 정보교환의 폐쇄성/개방성의 정도가 다르고, 특히 지인관계 및 익명 여부와 관련하여 계정 생성 방식에

13) 이주영, 초점 : 소셜 미디어 서비스 현황 및 활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5권 제9호(통권 제55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48면.

14) 설진아, 소셜미디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11-12면.

15) 임영호, 김은미,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언론학의 과제 : 정보관계망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학술대회자료, 2011, 196면.

16) Eric W. T., Spencer S. C. and Karen K. L. M., Social media research: Theories, constructs, and conceptual frame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5(1), 2015, 33-34.

17)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의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다대다의 쌍방향적 관계성이 형성되어, 전파성, 개방성, 접근성, 콘텐츠다양성 등의 특성을 갖게 된다는 연구로, 공배완, 아노미(Anomic)적 사회환경과 청소년 범죄: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제15권 제6-1호, 2015, 39면.

18) 임영호, 김은미,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언론학의 과제 : 정보관계망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학술대회자료, 2011, 209-210면은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은 그 안에 담기는 메시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프트웨어나 인터페이스의 설계에 따라서도 미디어의 속성이 규정된다고 한다.

차이가 있기도 하다.¹⁹⁾ 정보전달방식 역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자/이미지/영상 중 어느 것에 의존하는지, 정보의 휘발성/보존의 정도, 그리고 이용자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기초로 하는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물론 인스타그램과 같은 대중 소셜미디어의 경우 대체로 최대한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 자신의 표현과 상호간의 연결을 극대화함으로써 접근성과 개방성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의 소통의 특징과 그로 인한 사회관계의 변화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도 있었다. (i) 소셜미디어의 등장 이전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소통상대방 및 소통량이 증가하였으나 인간관계의 획기적인 확대나 심화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여전히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과의 관계가 주를 이루는 한편, 검색가능성과 대화의 저장성으로 관계의 규모가 확대됨에도 개별 인간관계 투여 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질적 수준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²⁰⁾ (ii) 인간관계가 오로지 언어적 메시지의 교환에 의해서만 맺어지고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실과 같은 강한 관계(가족, 친구, 연인)나 약한 관계만이 아니라 각 속성이 혼합된 제3의 관계 유형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 (iii) 소셜미디어는 사적인 메시지를 복제, 반복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일정한 청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보적 성격의 미디어에 가까운데, 적극적인 이용자일수록 다수 청중을 의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상대방을 표적으로 하거나 친밀한 메시지를 교환하기 어렵다는 점, (iv) 메시지가 전파되면서 다양한 모습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대상과 맥락이 제거되는 한편 정보의 전파성, 재조합성, 저장성, 검색가능성 등으로 기성 매체와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²¹⁾

나아가 (v)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도 현실의 속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소통대상자 선정과 메시지 신뢰 등에서 권력적 불평등이 나타나기 때문에²²⁾ 결국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

19) 조성은, 한은영, 석지미, 김도훈, 소셜 미디어의 이용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소셜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미래정책(III), 기본연구14-15-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44-63면은 사회관계를 맺는 방식과 서비스 인터페이스 비교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일방향의 (유명인사, 공감 등의) 연결관계 위주의 개방형, 기존 인적 네트워크 확장 위주의 준폐쇄형, 메시지 송수신 중심의 폐쇄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20) 이로 인해 현실 인간관계에의 기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21) 임영호, 김은미,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언론학의 과제 : 정보관계망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학술대회자료, 2011, 196-202면.

22) 즉 소수의 이용자만이 다수의 청중을 갖는 한편, 메시지 역시 내용 자체로 해석되지 않고 메시지를 낸 사람의 권위나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신뢰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셜미디어 환경이 기술적으로 상호성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회적 요인이 상호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등한 소통공간이 아니라 비대칭적이고 일방향적인 관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 (vi) 구조상 대화 메시지의 형식과 분량이 제한되어 대화의 관계적 요소를 축약시켜 정보 위주의 ‘본론만 간단히’ 문화가 지배하게 된다는 점, (vii) 정보와 감정의 표현이 섞여 나타나게 되어 정서적, 함축적 표현 및 유희성이 증가하는 특징이 보이는 점, (viii) 적극적인 떠벌이형 성격을 지닌 자가 주도권을 쥐므로 현실 대화에 미숙한 사람에게 반드시 유리한 여건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상대방에 반응해야 하는 관계노동에 피로를 느끼게 되며, 실제 대인관계 진전과 무관한 친밀감의 허상만 조장하고 자기표현의 진정성도 의심이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제시되었다.²³⁾

다. 사회적 기능과 부작용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부작용에 관해서는 여러 면에서 과거 인터넷에 관한 논의와 상당 부분 닮아 있어 완전히 새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소셜미디어의 연결망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순/역기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결망 구성 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²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셜미디어는 (i) 사회관계적 측면에서는, 비록 이용자와 소셜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관계의 확장을 통하여 사회자본²⁵⁾의 절대적 크기(기존 관계의 공고화, 새로운 관계의 형성)와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개인의 심리 측면에서는 사회자본을 매개로 자존감 상승, 사회적 지지 획득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순기능이 있다.²⁶⁾ 또한 소셜미디어는 (ii) 소통 및 정보유통 측면에서는 관련 비용의 감소,²⁷⁾ 사회적 신뢰 및 투명성 확대,²⁸⁾ 사회정치적 참여 등 시민사회 참여 및 집단지성의 확대

23) 임영호, 김은미,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언론학의 과제 : 정보관계망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학술대회자료, 2011, 203-213면.

24) 조성은, 한은영, 석지미, 김도훈, 소셜 미디어의 이용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소셜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미래정책(III), 기본연구14-15-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65면.

25) 일정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구성원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26) 조성은, 한은영, 석지미, 김도훈, 소셜 미디어의 이용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소셜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미래정책(III), 기본연구14-15-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66-70면.

27) 특히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시민들의 자율적인 정보전파나 각 기업, 정부의 전파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28)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시민, 소비자와의 쌍방향 소통 과정에서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정보공

라는 순기능을 갖는다.²⁹⁾

반면 소셜미디어는 (i) 사회관계적 측면에서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의 불평등 초래, 연결관계의 선택적 배제 및 유유상종의 연결관계로 인한 다양성 저해,³⁰⁾ 개인 사생활 침해,³¹⁾ 불특정 다수가 특정인에게 집단적인 폭력과 비난을 가하는 일명 마녀사냥과 같은 집단괴롭힘 등의 역기능이 있다.³²⁾ 나아가 (ii) 소통 및 정보유통 측면에서는 정보과잉으로 인한 정보유통 및 소통 비용의 증가, 이러한 정보과잉 역기능 해소를 위해 최적의 정보만을 제공하려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기능의 (다양한 정보 노출 기회 제외/개인 성향 동조 정보만의 노출 또는 상호작용 촉진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접근성 및 선택권 제한, 반대로 지나친 관심사 분산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비생산적 시간 허비),³³⁾ 잘못된 사실의 전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특히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자와의 소통 부재, 연결망 양극화(중간층 소멸, 세대간 의견 충돌 등)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가, 사회통합 저해 등의 부작용이 제시된다.³⁴⁾

라. 소결

소셜미디어의 개념과 그 구분, 미디어로서의 특징과 사회적 기능 및 부작용에 관한 일 반론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이 주요 소셜미디어를 예시하는 것은

개 및 민원 처리 보고 등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기능을 말한다"고 한다.

- 29) 조성은, 한은영, 석지미, 김도훈, 소셜 미디어의 이용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소셜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미래정책(III), 기본연구14-15-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79-82면.
- 30) 즉 동류 집단에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장점으로 꼽혔던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가 오히려 차단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대개 일상적 소재가 소통 주제가 되는 소셜미디어보다는 특정 목적이나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 31) 자발적 사생활 공유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자체로 인한 것으로,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자체를 축소시키기도 한다. 이에 이용자들이 따라서는 다른 이용자의 활동만을 관망하는 소극적 이용자가 되거나 특정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한다.
- 32) 조성은, 한은영, 석지미, 김도훈, 소셜 미디어의 이용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소셜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미래정책(III), 기본연구14-15-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70-73면.
- 33) 각 개인과 집단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수준과 정보를 유용한 정보와 중요치 않은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에 의해 달리 나타나,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여러 가지를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멀티태스킹은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사용하면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종이와 연필로만 강의를 듣는 학생으로 구분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멀티태스킹이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34) 조성은, 한은영, 석지미, 김도훈, 소셜 미디어의 이용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소셜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미래정책(III), 기본연구14-15-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82-86면.

어려운 일이 아니나, 인터넷을 매개로 타자와 소통, 정보공유가 가능한 경우라면 개념상 얼마든지 소셜미디어에 해당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은 스마트폰 등의 도구를 이용할 뿐 인간관계에서 자연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인터넷의 이용이 포털사이트 중심으로 다소 일방향의 정보 획득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과는 달리, 근래에 와서는 이용자의 참여와 개방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물론 모든 인터넷 이용이 이용자 참여적인 것은 아니며, 형식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표방하는 경우조차 일방향의 정보 전달인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소셜미디어는 가상공간에 현실세계를 반영하여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 가상공간에서의 소통만의 고유한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사회현상으로서 소셜미디어는 사회관계적 측면과 소통 및 정보유통의 측면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 소셜미디어로 인한 부작용만을 보면 공익목적상 소셜미디어 사업자 등에게 강한 수준의 제한이 요구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자칫 자유로운 행위의 근간을 제한하여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기성 언론이나 통신매체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모습으로, 소셜미디어의 핵심인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관해서는 독특한 규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셜미디어에 관한 것은 아니나, 최초 인터넷이 등장한 이래 인터넷 실명제³⁵⁾나 섣다운제와 같이 국가의 가상공간에의 통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율규제 중심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외국에서 이러한 자율규제 중심의 인터넷 규제 법리에 또다른 도전이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소셜미디어 업체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 내지 제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국내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와 국내 규제 동향에 관해 살펴본다.

35) 현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판례집 24-2상, 606.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 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다.

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

가. 이용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청소년의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의 경우 신문/책/잡지는 2시간 44분, TV는 1시간 38분, PC는 31분, 스마트폰(태블릿 PC 포함)은 1시간 30분, 10대 청소년의 이용 시간은 신문/책/잡지의 경우 3시간 24분, TV는 1시간 8분, 데스크톱PC는 23분, PC는 39분, 스마트폰(태블릿PC 포함)은 3시간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비율은 5세 미만은 50.9%, 5-10세는 63.7%, 10-15세는 57.8%, 15-19세는 30.9%로, 5세 미만은 TV이용 제한이, 5-10세는 스마트폰 이용 제한이, 10-19세는 인터넷과 게임 이용 제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하는 대상은 스마트기기(85.7%), 게임(82.1%), 인터넷(79.4%)의 순이었다. TV와 게임의 경우 이용제한을 두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자녀 이용량이 높지만, 스마트폰과 OTT³⁶⁾의 경우 이용제한이 있는 가정이 더 적은 이용량을 보였다. 스마트폰, OTT, 게임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의 이용량이 많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해당 미디어 이용을 더 많이 제한하려 하였다.³⁷⁾

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주일간 10대 청소년의 50% 이상이 이용한 미디어 서비스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97.4%), 포털(97.3%), 메신저 서비스(95.8%), 게임 플랫폼(84.2%), OTT 서비스(78.1%), SNS(78.1%),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75.3%), 메타버스 플랫폼(52.1%)의 순이었다.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019년 약 4시간 30분에 비해 약 8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청소년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하루 3시간 정도,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1시간 30분 정도 이용하고, 메신저는 수시로 이용하며, 공부할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사진을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TV를 보거나 ‘혼밥’할 때도 스마트폰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또한 성별, 학교급과 관계없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

36) over-the-top media service.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7) 김윤화,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미디어 이용 제한, KISDI STAT Report 24-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 2-4면 참조.

38) 이에 대해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대체적이라거나,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보완적이라

브(97.3%)로, 2019년과 비교하여 숏폼(short-form) 콘텐츠의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일주일에 적어도 3, 4일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부시간 사이나 이동시간에 짧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천으로 별도 검색 없이도 편리하고 가볍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SNS(협의의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률에서는 인스타그램(81.6%)이 타 서비스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10대 청소년이 뉴스를 접하는 주된 경로는 모바일·PC(80.3%)와 TV(69.1%)이고, 인터넷에서도 주로 포털(63.7%), 온라인 동영상(63.3%), SNS(49.3%), 메신저 서비스(46.9%)인 것으로 나타났다.³⁹⁾

미국에서도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중 95%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이 중 이 중 3분의 1 이상은 이를 “거의 끊임없이(almost constantly)”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원래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는 13세 이상이어야만 이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8세-12세 청소년의 거의 40%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고 한다.⁴⁰⁾

나. 문제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문제점은 성인의 잘못된 이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매우 닮아있다. 성인의 경우에도 소셜미디어 중독이나 강박적 이용은 신체활동 부족, 수면 부족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비교하여 아직 신체적, 육체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것뿐이다. 따라서 물질과 외모 중심의 사회적 비교가 극대화되는 환경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따라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우울함, 불안감을 느끼거나, 인지 기능이나 집중력에 큰 손상을 입거나, 때로는 쉽게 매체 자체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것이다. 그 중 핵심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셜미디어 이용 그 자체에 대한 중독성은 물론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자료에 대한 노출이 증증의 우울증이나 섭식장애는 물론 때로는 자살, 자해의 위험으로 이어지거나,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각종 범죄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거나, 적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를 계속

는 시각도 이제 타당하지 않고, 더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이 온라인은 그냥 청소년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39) 반면 하루 평균 뉴스 이용시간은 2019년 60.4분에서 49.8분으로 감소하였다. 이상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022 참조.

40)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2023, 4.

하여 접하게 되는 부분에 있다.⁴¹⁾

많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규율과 유사하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문제 역시 사회 문제로서 주로 언론에서의 문제제기를 정치권에서 포착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 여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입법화된다. 우리의 경우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청소년범죄나 정신건강 등 적지 않은 언론기사가 작성되고,⁴²⁾ 심지어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학부모 등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인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위와 같은 경로를 따라 2021년 소셜미디어 소속 근로자의 내부 폭로 이후 소셜미디어의 청소년유해성이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고, 이후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각종 연구결과는 청소년 규제의 입법 목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는데, 사회적 인식과의 관계에서 이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외국의 연구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셜미디어의 청소년유해성에 관한 각종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미국 정치권이나 입법자들 역시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관련 입법의 목적 내지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그 중 가장 신뢰성 있으면서도 그간의 연구를 종합한 사례이자, 실제로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자료는 미국 연방 보건국장(Surgeon General)의 권고(advisory)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의 건강권고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우선 연방 보건국장은 소셜미디어로 인한 콘텐츠 노출, 과도하고 문제 있는 이용의 결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잠재적인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학교, 학부모, 청소년 스스로도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⁴³⁾ 이에 따

41) 그밖에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나, 악플과 같은 명예훼손적 게시물 작성, 초상권 등 타인 권리 침해, 사기, 성범죄 등 법적 문제와의 연루 등도 지적될 수 있다.

42) 예컨대 규제 손 놓은 한국...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없어, 조선일보, 2023. 6. 29. 수정, 2024. 6. 1. 접속,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6/29/45TI5EKETVEUPJYLQO7UR7DDV4; 소셜의 무분별한 콘텐츠 노출로 인한 우리 청소년 정신건강 이대로 괜찮은가?, 데일리시사, 2024. 1. 11. 수정, 2024. 6. 1. 접속, <http://www.daily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43>; ‘SNS 과용 10대, 우울증 2배’... 연령, 시간별 제한 필요[10대들의 SNS 사용/유현재], 동아일보, 2023. 6. 19., 2024. 6. 1. 접속,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618/119825762/1>.

43)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2023. 여기서 권고

르면 여러 연구결과를 기초로 할 때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일부’ 청소년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있고, 현재로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충분히 안전한지(sufficiently safe)”를 결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⁴⁾ 12-15세 미국 청소년 대상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지고, (청소년이 아닌)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결과는 3주 동안 소셜미디어 이용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한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 삶의 만족도 등이 3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한다.⁴⁵⁾ 청소년이 극단적, 부적절하거나, 해로운 콘텐츠에 쉽게 접근가능하게 되면서 극단적으로 자살, 자해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종종 혐오와 차별의 내용에 노출되거나 사이버 괴롭힘과도 연결되며, 특히 여자 청소년은 신체 이미지 등으로 사회적 비교, 자존감 저하를 겪는다고 하였다. 소셜미디어는 중독 유사 문제를 일으켜 수면 문제와 주의력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건강한 발달을 저해한다고도 보았다.⁴⁶⁾

그러나 위 권고 역시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양방향적일 수 있다는 점, 연구 대부분이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고 주로 청년층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당히 넓은 범위의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 등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여러 의문을 던지며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⁴⁷⁾

미국심리학회 역시 수천 명의 청소년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연구를 종합하여 여러 심리학 및 관련 학문을 토대로 소셜미디어의 해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최초의 건강 권고(health advisory)를 발표하였다.⁴⁸⁾ 그러나 발표내용은 (i) 소셜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에게 본질적으로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그 영향을 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과

(advisory)는 긴급한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민의 주의를 촉구하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권고하는 공개 성명(public statement)을 말한다.

44)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2023, 4.

45)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2023, 6-8.

46)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2023, 8-11. 반대로 유익한 점으로서 청소년을 긍정적인 커뮤니티와 연결할 수 있다는 점, 중요한 정보에 접근 및 자기표현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 특히 소외된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정체성 문제가 있는 이들의 발달과 지원을 돕는다는 점, 창의력을 발휘하고 친구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정신건강 관리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47)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2023, 11 참조.

4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ealth Advisory on Social Media Use in Adolescence, 2023.

사회적 상황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점,⁴⁹⁾ (ii) 청소년은 점진적, 연속적으로 발달하는데 생물학적, 신경학적 변화가 발생하는 대략 10세부터 사회환경(또래, 가족, 학교 환경) 및 신경학적 변화가 완료되는 약 25세까지 지속되므로 성숙도 수준(자기조절, 지적 성장, 위험인식 능력 등)과 가정환경에 따라 소셜미디어가 적절하게 이용되어야 하는 점, (iii)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인터넷 전반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알고리즘 등을 통해 종종 기술설계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 근거이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전제하였다.⁵⁰⁾⁵¹⁾

2) 국내의 연구

소셜미디어의 청소년유해성이 일찍부터 사회적 문제화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일한바, 여러 청소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된 결과가 적지 않는데 그 결론은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국내의 연구의 경우에도 소셜미디어의 이용의 사회에 대한 복잡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청소년유해성과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SNS 이용시간에 따른 집단 간 우울 및 충동성 수준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⁵²⁾ 한편, 소셜미디어 행동 중 확인하기, 긍정적 자기표현, 솔직한

49) 나이가 플랫폼의 특정한 콘텐츠, 기능이나 특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5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ealth Advisory on Social Media Use in Adolescence, 2023, 3. 발표내용은 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회사자료 접근 문제로 확실한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연구결과는 드물다는 점, 장기적인 종단 연구를 실시할 수 없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성인기에서의 결과 사이의 연관성이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점, 민족, 인종, 성별, 사회적 배경의 기준에 따른 소수자나 발달 또는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는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51) 한편,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어떠한 사람들은 기술이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증상’이라고 지적하는데,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로,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CSLAW ’24)*, ACM, 2024, 89. 19세기 후반 아동과 성인 사이에 “청소년기(adolescence)”가 만들어진 이래 20세기 중반까지 로큰롤(rock n’ roll)에서부터 만화책, 텔레비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청소년 문제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1990년대에는 인터넷 접속으로 인한 도덕적 공황이 떠올랐다고 한다. 또한 초기 생물학에서는 청소년들이 신경 및 호르몬으로 인하여 20대 중반까지 인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되었으나, 문화학에서는 청소년들의 뇌발달까지 그 힘을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성숙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동시에 새로운 심리이론으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많은 요소들이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논의도 제기되었다고 한다.

52) 이소영, 전해정, SNS 이용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및 충동성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2015, 7607-7616면; SNS과의존은 우울에 정적으로, 교우관계는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

자기표현, 공감적 반응하기는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사회불안은 긍정적 자기표현 및 솔직한 자기표현의 증가로 SNS 중독경향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는 연구결과.⁵³⁾

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미지 중심 소셜 미디어 이용은 신체 이미지인식에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의 영향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부정적인 자기검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텍스트 중심 이용이 자기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미지 중심 이용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⁵⁴⁾

② 오프라인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이 온라인상의 폭력 내지 괴롭힘으로 이어지거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⁵⁵⁾ SNS 등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친구들과 좋은 애착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어든다는 연구결과.⁵⁶⁾

③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SNS 중독 수준이 높아지고, 다만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

다는 연구결과로, 강선경, 최유진, 청소년의 SNS(Social Network Service)과의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 2022년 청소년 정신건강·중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5호, 2023, 359-367면.

53) 김희화, 초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행동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30권 제6호, 2023, 241-262면.

54) 나은경, 홍주현, 성형·미용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과 소셜 미디어 이용의 사회심리: 여고생의 신체 이미지와 검열, 사회비교 및 자기만족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26권 제1호, 2018, 71-96면.

55) 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145면; 같은 취지로, 김혜영, 민정식,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온오프라인 폭력피해경험 및 소셜미디어 중독, 자기통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8권 제4호, 2014, 323-333면.

그 밖에 SNS를 이용한 사이버불링의 가해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낮은 자기통제, 낮은 윤리의식, 사이버불링의 피해횟수가, 피해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낮은 자기통제로, SNS를 이용한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윤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도 이윤추구만을 위한 무분별한 서비스 확장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로, 박성훈, 심현정, SNS에서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특징 및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1호, 2015, 156-185면.

56) 박주애, 최응렬, 청소년의 SNS 및 서비스메신저 접촉빈도가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친구관계(애착)의 조절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7권 제1호, 2021, 95-112면; 남학생의 사이버불링 가해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았고, 부모스트레스, 또래애착, 게임중독 등이 원인 변수가 되었다는 연구결과로, 권진, 김보람,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제52권, 2019, 225-248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온라인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가해경험도 높으며, 소셜미디어 중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같은 결속형 매체의 이용정도가 이러한 경험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는 연구결과; 이창호, 이경상,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59-285면.

일지라도 부모-자녀간 폐쇄적(권위적, 일방적, 비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SNS 중독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⁵⁷⁾ 부모 및 또래와 애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며, 또래애착의 경우 이러한 관계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설명된다는 연구결과.⁵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청소년이 친구들과의 단절, 가족관계의 결핍으로 인하여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SNS중독에 가장 위험하다는 연구결과.⁵⁹⁾ 그 밖에 학습 목적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컴퓨터게임과 소셜 미디어 이용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학습이 우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부모의 애정을 낮게 느끼는 경우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은 부모의 애정과 또래애착에 의해 완화되었다는 연구결과.⁶⁰⁾

57) 김리원, 전지형, 청소년의 우울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 간 폐쇄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검증, 생명연구 제58권, 2020, 169-189면. 유사한 취지로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로 김진옥, 양혜정, 청소년의 우울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 교우관계 조절효과 검증, 생명연구 제56권, 2020, 101-122면; 청소년의 SNS 과의존 해소를 위해서 통제나 대안 찾기에 중점을 맞추기 보다는 청소년 개인에게 SNS가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로, 김진희, 김정모, 김영식, 오연주, 청소년의 SNS 과의존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6호, 2017, 155-178면; 역시 SNS상에서 친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온라인상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수록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은 낮아지며, 부모중재유형에 있어서, 단순히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제하거나 관망하는 태도는 자녀의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을 강화시킨다는 연구결과로, 고은혜, 배상률,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SNS 이용행태 및 부모중재,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6호, 2016, 451-472면; 청소년의 SNS중독경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기과시성향과 사회자본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로, 손수진, 정성진, 청소년의 자기과시성향, 사회자본 및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융합학문과 기독교 제3권 제1호, 2022, 41-51면.

58) 한다정, 김빛나,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소외에 대한 두려움(FoMO)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7권 제3호, 2020, 243-261면;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을 설명함에 있어 성격특성인 내현적 자기애의 중요성을 규명하였고, 또래관계가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SNS 중독경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결과로, 문영주, 최은실,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대인불안과 또래관계 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7권 제7호, 2020, 77-108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특히 자기표현의 제한과 애정철회)와 청소년 자신의 불안통제(특히 위협적인 사건이나 상황 통제의 어려움, 고립감이나 불안)는 SNS 중독경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지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로, 황난희, 정하나, 김정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불안통제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제13권 제6호(통권 제55호), 2022, 4761-4776면.

59) 천수업,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외로움과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8권 제4호, 2021, 119-146면.

60) 박재영, 한지훈, 오주현, 청소년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양육방식과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8호, 2019, 1-13면.

④ 가족환경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인터넷 게임중독과 SNS 집착 및 금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⁶¹⁾

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독경향성이 유의미하게 높고, 남학생은 대인 관계와 여가 생활에서 중독경향성과 관계가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외모와 중독경향성의 관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⁶²⁾ 또한 SNS 이용시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의 삶의 만족이 높고, SNS를 통해 형성된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결속적 사회적 자본, 정치사회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⁶³⁾

사회불안을 나타내는 청소년의 SNS중독경향성을 낮추기 위해 우울한 정서와 자기몰입과 같은 인지적 특성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로, 박영순,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SNS중독경향성 관계에서 우울과 자기몰입의 이중매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1호, 2020, 1973-1980면; 중학생의 경우 내현적 자기애와 소외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이것이 SNS중독경향성을 더 높게 만든다는 연구결과로, 조소연, 정주원, 중학생의 SNS중독 경향성에 있어 내현적 자기애와 소외감,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29권 제3호, 2017, 125-140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SNS를 통한 타인에 대한 몰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SNS 중독경향성을 보이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에 대한 개입이 효과적인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결과로, 이윤주, 손승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30권 제12호, 2023, 247-272면.

61)곽효정, 강상준, 청소년 우울이 인터넷 게임중독과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인문사회 21 제 11권 제2호, 2020, 581-596면.

부모, 교사, 친구관계가 삶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또 부모, 교사, 친구관계가 SNS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여서 SNS사용과 삶만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허위관계라는 입장이 더 우세했지만, 단순한 SNS사용의 경우와 달리 SNS중독의 경우는 SNS중독과 삶만족과는 상호영향의 관계가 높아 낮은 삶만족이 SNS중독에 이르게 하지만 SNS중독은 또한 삶만족을 저해하여 SNS중독과 삶만족과는 부(-)적 관계를 가졌다는 연구결과로, 전신현, SNS는 청소년 삶만족에 이로운가? 현실에서의 부모와 교사, 친구관계, 삶만족 그리고 SNS사용과의 관계, 공공정책연구 제40권 제2호, 2023, 153-179면.

62)이규빈, 이찬우, 심재권, 청소년의 SNS 사용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의 원인 및 연관성, 교과교육연구 제 12권 제2호, 2019, 21-36면; 여성청소년의 SNS 과몰입에 있어 환경적 편리성, 다양한 정보와 오락성 콘텐츠에의 접근성 및 압박적 사용환경(단톡방 활용, 유행 등)이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재미와 심심풀이 및 일상에서의 습관적 사용이 기본양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적 욕구충족 및 나를 세상에 알리기 등 일반 사용자와 같은 사용목적도 보이면서도 기존 대인관계의 유지보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활용례가 확인되었고, 중독적 증상들이 도출되었으며, 일탈행동, 건강이상, 가족과의 거리감과 갈등 등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로, 심용출, 신경미, 여성청소년의 SNS 과몰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10호, 2017, 29-59면.

63)박소영, 조성희,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2호, 2015, 371-379면.; 유사한 취지로 청소년과 성인초기의 경우 사용시간이 지나치게 많아 중독이 되지 않은 선에서 소셜미디어의 주된 사용목적은 친밀한 관계형성이나 생각의 기록, 정보교환과 같은 생산적인 면을 위해 사용할 경우, 자아정체감이나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로, 강민주,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청소년과 성인초기의 자아정체감 및 친밀감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6호, 2013, 1-28면.

⑥ 소셜미디어 이용강도, 소셜미디어 수동이용, 소셜미디어 능동이용은 여자 청소년의 섭식장애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셜미디어 이용의 하위요인 중 소셜미디어 능동이용과 섭식장애의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⁶⁴⁾

⑦ 청소년 자해 집단은 비자해 집단에 비해 SNS를 더 많이 사용하며, 자해행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해나 자살관련 콘텐츠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해와 관련한 SNS 사용은 정보나 안내의 획득이나 부정적 정서의 해소, 소속감, 정서적 지지 등의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해행동의 시작과 유지, 악화에 기여하며 온라인 폭력이나 우울, 섭식문제, 건강하지 않은 성 행동 및 대인관계 등과 관련이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⁶⁵⁾

3) 소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따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청소년에게도 소셜미디어는 사회관계적 측면과 소통 및 정보유통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는 성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도 있어 또래집단은 물론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핵심적인 사회연결 매체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비단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의 제어를 위해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만약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제한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 밖에 소셜미디어가 스트레스 해소 탈출구 및 친구들과의 관계성 확장, 강화 및 정보교환 등 소통창구로서 학업과 일상에 바쁜 청소년들이 제한된 시간과 경비로 나름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유용한 매체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여가문화의 측면에서는 스타와 팬 간의 정서적 공유를 통한 상호작용성의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팬덤 간의 갈등 심화 및 팬덤 내 계층화, 권력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로, 배상률, 이창호,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여가문화 및 팬덤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 페이스북을 활용한 청소년 집단지성 토론단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89-218면.

64) 임은영, 이성규, 성혜연, 여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섭식장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25권 제2호, 2023, 51-72면; 여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신체대화(온라인상 또래와의 몸매 등 비교평가)와 유명인승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신체대화와 유명인승배가 각각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로, 김효진, 임성문, 여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신체대화와 유명인승배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28호, 2015, 25-52면.

65) 김소정, 고그림, 청소년 집단에서의 자해와 SNS 사용: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인지행동치료 제20권 제3호, 2020, 247-275면; 여자 청소년이 비자살적 자해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몸을 타자화함으로써 가능했으며 SNS를 통한 집단 형성을 통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는 연구결과로, 손자영, 여자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의미, 청소년학연구 제27권 제1호, 2020, 55-83면.

3. 국내 규제 동향

가. 현행 법령의 내용

현행 법령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하여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 연령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주로, 그리고 청소년 전반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광고금지, 제공금지를 중심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아직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다. 소셜미디어 사업자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될 뿐,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사업자가 아니고, 일부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언론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⁶⁶⁾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항).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법상 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거부·설명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2항). 나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⁶⁷⁾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

한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

6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6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5호).⁶⁸⁾ 여기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관련 조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 각 목).⁶⁹⁾

그 밖에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광고금지,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유해정보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위에 따라 국내에서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만 14세 이상부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셜미디어 대다수는 형식적으로 연령만을 확인하고 다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나이를 속일 경우 가입을 막기 어렵다. 나아가 만 14세 이상부터는 소셜미디어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⁷⁰⁾

68) 반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정보의 유통이 금지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 참조).

69)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 매체물에 해당한다(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 각 호).

70)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함)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터넷게임 제공자로 하여금 친권자 등에게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25조 참조).

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한편, 정부는 2022년 7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에는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의 인식 전환을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기본원칙 정립, 기존 만 14세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까지로의 보호 대상 연령 확대 및 연령대별 보호 내용의 차등화,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 요청권(이른바 ‘잊힐 권리’) 제도화 추진,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한 게시물 삭제 또는 숨김처리 지원 시범사업의 실시, 법정대리인이 없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 제한에 따른 불이익 해소(학교, 지자체,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 동의 대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 확대 및 연령대별 교육 자료 개발, 보호자 대상 SNS 사진·영상 공유(이른바 ‘셰어런팅’)의 위험성 등 보호자 대상 교육 확대, 게임 채팅 공간 내 개인정보 관련 내용 입력시 자동 차단 등 3대 분야(게임, SNS, 교육) 보호조치 강화,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형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한,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 신속 탐지, 삭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시행에 관한 것이다.

다. 입법 추진 동향

22대 국회 이전까지는 이용 가능 연령을 높이거나 이용시간, 환경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만을 직접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 전례가 없다.

다만 과거 2011년 제정되었다가 현재는 폐지된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 1104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의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물이라는 일종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제한된 바 있다.⁷¹⁾ 청소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이용 자체에 관해서는 위헌결정⁷²⁾이 난 정보통신망법(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

71)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에 관해서는 이 외에도 대안반영되지 않고도 폐기된 유사한 수많은 의안들(예컨대 의안번호 제1808330호, 제1814634호, 제1903262호, 제1903263호)이 있었다.

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의 본인확인제가 있었다.⁷²⁾

최근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여러 입법이 제안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2201798, 2024-07-16)은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으로써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2201816, 2024-07-17)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2202761, 2024-08-13) 역시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2202777, 2024-08-13)은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라. 소결

결과적으로 우리 법상 소셜미디어 이용과 청소년 보호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항을 국내외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의 해석상 소셜미디어의 이용 제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는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 성년자와는 다른 취급이

72) 현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판례집 24-2상, 590.

73)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2011066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2106387호)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입법되지는 아니하였다.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기본권주체로서의 청소년과 기본권 보호 대상인 청소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특별한 규율을 함에 있어 그 헌법적 한계는 무엇인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도 특별한 보호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각종 입법은 이러한 찬반논거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먼저 해외 입법례 및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본다.

Ⅲ. 비교법적 검토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각국에서는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제하거나, 그에 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종래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것을 넘어서,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율 특히 그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설계, 운영에서의 유해성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주로 미국에서의 입법동향과 관련 법적 분쟁을 알아보는 한편, 외국 입법례 전반을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청소년규제입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 입법례 및 관련 법적 논쟁

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규제 동향

1)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인터넷플랫폼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왔는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에 의해 도입된 통신법 제230절(Telecommunication Act of 1934, 47 U.S.C. § 230)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상호작용적인(interactive)” 인터넷상에서의 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제3의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⁷⁴⁾으로, 동 조항은 인터넷에서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을 줄여주어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 가장 중요한 법령으로 이해되어 왔다.⁷⁵⁾ 미국 연방대법원도 적어

74) 발행자나 발화자로 취급되지 않으며(즉, 게시자와 유포자의 분리), 외설물 등 불법 콘텐츠의 제거나 조절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책한다.

75) 예컨대 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적 정보의 게시를 알고 있어도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이 무제한인 것은 아니며 연방형법, 지적재산권법,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athleen Ann Ruane, How Broad A Shield? A Brief Overview of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LSB1008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2018, 2-3.

도 2017년까지는 소셜미디어(웹사이트)를 “현대의 공적 광장”이라고 표현하는 등⁷⁶⁾ 표현의 자유를 용이하게 하는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역할을 중시하여,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여러 보호입법에 대해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⁷⁷⁾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사회에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확장되면서, 청소년 보호를 넘어 각종 콘텐츠의 관리, 정보의 확산, 프라이버시 침해 등 수많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종래 자율규제 중심의 규율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법적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관련 논쟁은 여러 국면에서 논의되었는데, 프라이버시의 측면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콘텐츠 관리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등에 의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정보의 제공 문제, 허위정보(이른바 가짜뉴스),⁷⁸⁾ 혐오표현, 테러리즘 및 극단적인 성향의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포,⁷⁹⁾ 기타 불법콘텐츠 제어가 문제되었다. 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통신법 제230절의 적용범위⁸⁰⁾와 해당 법률조항의 개정 내지 폐지 여부⁸¹⁾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⁸²⁾ 특히 2020년

76) Lester Gerard Packingham, *Petitioner v. North Carolina*(2017).

77) Petter J. Benson, *NetChoice v. Bonta and First Amendment Limits on Protecting Children Online* (LSB1107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2023, 1.

78) “Russian Influence Reached 126 Million Through Facebook Alone”, *The New York Times*, 2017. 10. 30. 수정, 2024. 4. 1. 접속, <https://www.nytimes.com/2017/10/30/technology/facebook-google-russia.html>.

79) 소셜미디어가 테러리즘 콘텐츠를 게시, 확산시킴으로써 테러를 조장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Twitter, Inc., et al., v. Mehier Taamneh, et al.*, 598 U.S. 471; *Reynaldo Gonzalez, et al., v. Google LLC*, 598 U.S. 617 참조.

80) 2018년 입법된, 연방이나 주의 성매매 관련 법률의 집행을 위 CDA 제230절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콘텐츠 게시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FOSTA-SESTA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었다(*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of 2017, Public Law 115-164; 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 of 2017*).

81) 나아가 *the Stopping Big Tech’s Censorship Act* (S. 4062), *the Limiting Section 230 Immunity to Good Samaritans Act* (S. 3983), *the Protect Speech Act* (H.R. 8517), *the bipartisan Platform Accountability and Consumer Transparency Act* 등 수많은 새로운 법률안이 제시된 바 있다. Nicholas Bradley, “Something for Nothing: Untangling a Knot of Section 230 Solutions”, *Cardozo Law Review de novo* 87, 2022, 68-73.

82) Joe Cosgrove Jr., *Section 230: Twenty-Six Words that Created Controversy*, *Infrastructure* 61(2), 2022,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소수 소셜미디어 독점기업이 미국의 통신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대체로 반보수적 경향성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해 통신법 제230절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콘텐츠 운영 원칙을 마련하며, 검열 관행이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검열방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Online Censorship, EO 13925)을 발동하는 등 법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제어하려는 강력한 시도가 있었다.⁸³⁾ 청소년 관련 소셜미디어 규제 역시 위와 같은 인터넷규제의 흐름 속에서 함께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주법이 통신법 제230절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2) 청소년보호와 인터넷규제입법의 위헌성에 관한 종래의 논의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불과 2021년경부터이지만, 이에 앞서 2000년 전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입법 시도와 헌법적 대결을 간략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여러 선구적인 사건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표현규제 입법이 성인과 청소년의 인터넷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성을 판단한 적이 있는데, 이 역시 많은 부분 근래의 이슈와 논의의 결을 함께 하고 있고 또 실제 향후 판단도 이에 근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Reno v. ACLU*⁸⁴⁾ 사건,⁸⁵⁾ *Ashcroft v. ACLU* 사건⁸⁶⁾에서는 문제된 인터넷상의 청소년 보호 입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United States v. American Library Assn., Inc.* 사건⁸⁷⁾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핵심 쟁점은 관련 규제입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 기반 제한이라면 엄격심사척도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규제대상이

5-9.

83) 그러나 동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결국 후임 행정부에서 이를 취소하면서 결국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Biden revokes Trump executive order that targeted Section 230 / The order would have changed legal protections for social media platforms”, *The Verge*, 2021. 3. 15. 수정, 2024. 4. 1. 접속, <https://www.theverge.com/2021/5/15/22437627/biden-revokes-trump-executive-order-section-230-twitter-facebook-google>.

84)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미국시민자유연맹. 1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인권단체이다.

85)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21 U.S. 844 (1997).

86) *Ashcroft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35 U.S. 564 (2002); *Ashcroft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42 U.S. 656 (2004) 등 참조..

87) *United States v. American Library Assn., Inc.*, 539 U.S. 194 (2003).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게 충분히 한정되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규제수단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⁸⁸⁾

가) Reno v. ACLU 사건

Reno v. ACLU 사건에서는 1996년 제정된 연방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47 USC § 223) 중 “외설적, 부도덕한 (obscene or indecent)” 메시지의 의도적 전송과 “성적이거나 배설적인 활동 내지 조직 (sexual or excretory activities or organs)”을 사회통념상 “반사회적(offensive)”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묘사, 표현하는 정보의 전송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의 위헌성이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규제에 해당하는데 “부도덕한”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성인을 제외하는 등 제한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지 않았으며, 인터넷통신의 고유한 성격에 비추어 충분한 규제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반사회적” 자료의 전송이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추후 표현규제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⁸⁹⁾

나) Ashcroft v. ACLU 사건

Reno v. ACLU 사건 이후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상 음란물 노출을 규제하기 위한 시도로서 1998년 제정되어 CDA보다는 규제대상이 되는 대상과 자료의 범위를 좁힌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 47 USC § 231)은, 온라인 출판업자로 하여금 17세 미만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자료”에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신용 카드, 직불 계좌, 성인 액세스 코드 또는 개인식별번호의 사용 요구, 디지털 인증서 기타 합리적인 조치 등 연령 확인 기술의 의무화)을 강제하였다. 여기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자료란 사회통념상 “호색적인 흥미(prurient interest)”를 자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성적 행위 또는 과도한 노출(여성의 가슴 등 포함)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의되었다. 다만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는 경우 제외하였다.

88) 박정훈, 미국의 온라인상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와 위헌성심사기준 - 청소년온라인보호법(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0권 제2호, 2011, 385-415면 등 참조.

89) 참고로 이 사건에서 앞서 살펴본 통신법 제230절은 위헌판단에서 제외되었고,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연방대법원은 *Ashcroft v. ACLU* 사건에서도 COPA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아동온라인보호위원회(The Commission on Child Online Protection)⁹⁰⁾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터링(filtering)⁹¹⁾과 COPA와 같은 규제입법을 비교할 때, 전자는 후자에 비해 (i) 정보의 원천 측면에서 보편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 측에서 선택적인 제한을 가하고, (ii) 자녀가 없는 성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성인도 필터를 끄는 것만으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iii) 무엇보다 규제입법에 대한 해석 여하와 상관없이 필터 사용의 촉진은 어떠한 종류의 언어도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효과가 제거되거나 적어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그 우월성이 확인되었고, 문제된 규제입법 이후 보다 덜 제한적인 법률이 두 개 통과되었다는 점이 해당 입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위 사건은 수차례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⁹²⁾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의 하급심⁹³⁾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사가 사실심리와 함께 보다 구체화되어 판단되었다.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i) 본인 확인 조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거나 쉽게 회피될 수 있어 유효하지 않다. (ii) 본인 확인 조치는 웹사이트 소유자, 운영자 및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불러옴과 동시에, 사이트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페이

90) 청소년의 인터넷상 유해자료 접근 제한에 관한 여러 수단의 상대적 장점을 평가하기 위해 의회에서 설립하였다.

91) 웹 브라우저 또는 기타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이 표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특정 범주의 자료를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연령 및 성숙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판시사항은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조항의 위헌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의견(재판관 조용호)에 의해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와 같이 이를 대체할 만한 덜 침해적인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복잡하고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상당한 본인인증 절차를 이용자 모두에게 강요한다는 지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15. 3. 26. 2013헌마354, 판례집 27-1상, 312, 322-325.

92) 이후 COPA는 다시 하급심을 거쳐 수차례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2002년 연방대법원(5인의 법정외견)은 하급심으로 하여금 COPA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인지, 불명확하지 않은지, 엄격심사를 통과하는지 등을 다시 판단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이후 반복하여 하급심의 판단을 거쳤으나 2004년 연방대법원(6인의 법정외견)은 COPA가 엄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본안심리를 위해 재차 환송하였다.

이후 2009년에야 연방대법원은 COPA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발효를 영구히 금지하는 하급심의 영구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확정하였다.

93) *ACLU v. Gonzales* 478 F. Supp. 2d 775 (E.D. Pa. 2007).

지에의 액세스를 단념시키는 결과(트래픽 감소)를 낳는다. (iii) 사이트 이용자는 익명에 의한 접근이 저해됨에 따라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유출될 우려로, 특히 민감하거나 사적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낙인이 찍힌 콘텐츠에 액세스하지 않게 된다. (iv) 웹사이트 자체의 보안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v) 법의 적용범위가 상업적 음란물 제작자에 한정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하게 포괄적인 반면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청소년에게 일률 적용된다는 문제도 있다. (vi) 역외적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나마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려운데, 관할권 문제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과소하게 포괄적이다. 이는 “만약 청소년이 나이를 먹으면서 완전히 물려받게 될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깎여나갈 경우 이는 이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다) United States v. American Library Assn., Inc. 사건

잇따른 미 연방의회의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입법 실패는 방향성을 바꾼 2000년 제정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동법은 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이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컴퓨터에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인터넷 콘텐츠 검열 요구가 의회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6인의 법정의견은 CIPA가 이용자가 아닌 “공공도서관” 등으로 하여금 필터 설치를 요구할 뿐이고, 공공도서관 등이 성인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필터링된 자료의 차단을 해제하거나 인터넷 소프트웨어 필터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면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 등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전통적인(traditional)” 또는 “지정된(designated)” 공개포럼이 아니고 공공도서관 등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도서관의 기술적 확장)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반면 반대의견은 CIPA가 공공도서관 등의 재량을 없애 자금지원을 불법적으로 조건화하였다거나, CIPA의 문언상 공공도서관 등의 재량으로 인하여 성년인 이용자들의 접근을 검열하는 내용 기반 규제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등의 의견을 내었다.

위와 같은 선구적인 판결들 이후, 인터넷 규제는 해당 법률이 보호받지 않는 표현을 대상으로 하고, 단순히 장래에 범죄가 행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규제대상인 자료가 구체적이고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고, 성인 또

는 청소년이 잠재적으로 차단된 자료에 접근할 방법을 두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 하에 청소년이 유해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제한이 덜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⁹⁴⁾⁹⁵⁾

3) 초기 소셜네트워크킹웹사이트 규제 시도

2006년 연방의회 하원에서는 미처 예상치 못한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이용자의 폭증, 소셜네트워크킹웹사이트 등의 대두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협을 줄이기 위해 *United States v. American Library Assn., Inc.* 사건에서 문제된 아동 인터넷보호법(CIPA)을 참고하여 온라인범죄자배제법(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of 2006: DOPA)⁹⁶⁾을 통과시켰으나, 곧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상원에서 표결되지 않았다.

DOPA는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학교 및 도서관에게 청소년의 “상업적 소셜네트워크킹웹사이트(commercial social networking websites)”⁹⁷⁾나 “채팅방(chat rooms)”⁹⁸⁾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에의 접근을 제한하게 하는 한편, 부모 등 성년 보호자의 감독 하에 교육 목적으로 제한 해제 기능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낯선 사람과의 대화, 접근으로 인한 온라인범죄, 괴롭힘 등의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설령 DOPA에 대해 CIPA와 같이 엄격한 심사가 아닌 합리적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⁹⁹⁾ CIPA와 달리 DOPA가 특정 유형의 해로운 정보가 아니라 특정 기

94) Mary B. Kribble, *Fear-Mongering, Filters, the Internet, and the First Amendment: Why Congress Should Not Pass Legislation Similar to the 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13(2), 2008, 508.

95) 지금까지 설명한 선례 외에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564 U.S. 786 (2011) 판결도 참조할만한데, 필요한 부분에서 부가 설명한다.

96) *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of 2006: DOPA*, H. R. 5319.

97) 이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나 프로필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포럼, 채팅방, 이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신저 등 타 이용자와의 통신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of 2006: DOPA*, H. R. 5319, § 2 (c) (j)).

98) 이는 다수 이용자가 텍스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 또는 그가 지정한 부분에 메시지가 거의 즉각 표시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의미한다(*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of 2006: DOPA*, H. R. 5319, § 2 (c) (k)).

99) 이에 대해서도 복잡하고 치열한 헌법적 이익이 잠재적으로 문제되거나 표현 관련 제한이 특히 강한 정부 이익에 의해 잠재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설령 엄격한 심사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심사보다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엄격하지는 않지만 강화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Mary B. Kribble, *Fear-Mongering, Filters, the Internet, and the First Amendment: Why Congress*

술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에의 접근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것으로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¹⁰⁰⁾ 또한 이미 학교나 도서관에 필터링이 존재하여 청소년보호가 실현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강한 제한은 교육 목적으로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을 과도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제한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보호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합리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었다.¹⁰¹⁾

이후 2007년 연방과 주에서 유사 법안의 입법이 누차 시도되었으나 실패하였다.¹⁰²⁾

4) 현재 유효한 법령 - 연방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앞서 위헌성이 문제된 일련의 법령들과 달리, 1998년 입법되어 2000년부터 효력을 가진 연방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작용한다.¹⁰³⁾ 동법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주요 대상은 아니어도 청소년 서비스 요소를 포함하거나(directed to children) 청소년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는(actual acknowledge) 서비스 관리자로 하여금 청소년에 관한 정보 수집 전에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검증가능한 동의(verifiable parental consent)를 얻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온라인 액세스를 부모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 대상을 13세 이상으로 함을 밝히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가입시 자발적으로 연령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Should Not Pass Legislation Similar to the 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13(2), 2008, 519-520.

100) DOPA가 핵심으로 겨냥한 MySpace뿐만 아니라 구글과 야후, NYTimes와 같은 뉴스 사이트, 블로그, 메일, 비디오 및 팟캐스트, 사진 공유, 아마존이나 정부사이트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웹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이 해로운 자료에 접근할 가능성이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101) Mary B. Kribble, Fear-Mongering, Filters, the Internet, and the First Amendment: Why Congress Should Not Pass Legislation Similar to the 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13(2), 2008, 521-525.

102) 예컨대 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 § 49(110th); 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of 2007, H. R. 1120 등. 조지아주 등에서는 소셜네트워킹 웹사이트 소유자나 운영자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그리고 그들의 해당 프로필에 대한 상시적인 접근 허용 없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프로필 웹페이지를 생성, 유지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려 시도하였다(Georgia, SB 59 of 2007).

103)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15 U.S.C. §§ 6501-6506. 그밖에 청소년 정보 기밀성, 보안성 보장, 부모의 접근권 등이 규정되었다.

법령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나. 문제의 발단 - 페이스북 청문회

미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2021년경부터이다. 2021년 3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페이스북(현재는 ‘메타’로 사명이 바뀐)이 아동용 인스타그램(이른바 인스타그램 키즈)의 출시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했는데, 같은 해 9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서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을 입수, 공론화하면서, 입법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기 시작하였다.¹⁰⁴⁾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자살 생각을 보고한 10대들 중 영국의 경우 13%, 미국의 경우 6%가 인스타그램으로 인한 것이고, 32%의 10대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 더욱 기분이 나빠졌다고 하였다. 페이스북 측이 대부분의 10대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고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10대들에게 수많은 다른 이용자의 계정으로부터 그들이 원할 것으로 예측되는 게시물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기능 등 일부 핵심 기능이 가장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미 의회에서는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를 소환하여 페이스북 청문회를 열었고, 결국 페이스북 측은 인스타그램 키즈의 개발을 중단하였다.¹⁰⁵⁾

이후 연방과 주 차원에서 각종 청소년 보호 입법이 시도되었다. 한편, 캘리포니아, 뉴욕 등 41개주와 워싱턴 D. C.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또는 9개의 주 법원에 메타 측을 상대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디자인한 기능들을 이

104) “Facebook Knows Instagram Is Toxic for Teen Girls, Company Documents Show”, The Wall Street Journal, 2021. 9. 14. 수정, 2024. 3. 1. 접속, https://www.wsj.com/articles/facebook-knows-instagram-is-toxic-for-teen-girls-company-documents-show-11631620739?reflink=desktopwebshare_permalink; “Facebook documents show how toxic Instagram is for teens, Wall Street Journal reports”, CNBC, 2021. 9. 14. 수정, 2024. 3. 1. 접속, <https://www.cnbc.com/2021/09/14/facebook-documents-show-how-toxic-instagram-is-for-teens-wsj.html>.

105) “페이스북, 술한 비판에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 일시 중단”, 조선일보, 2021. 9. 28. 수정, 2024. 3. 1. 접속,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9/28/B5BULZFYRJBXNL3VTEOUYMZJR/.

용하여 청소년을 플랫폼에 중독시켜 신체와 정신건강을 악화시켰고, 13세 미만 청소년의 데이터를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 처리하여 연방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범위반 사실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¹⁰⁶⁾

다.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와 한계

연방의회의 페이스북 청문회 이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에 관한 여론의 동요가 일어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에는 자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콘텐츠 설정을 적용하고, 16세 미만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며, 유해 콘텐츠의 검색, 열람을 보다 제한하고, 자해 등 관련 내용 검색시 전문가 상담을 소개하거나 낯선 이용자와의 연결시 알림을 넣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¹⁰⁷⁾

그러나 위와 같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갖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근본 문제는 자율규제의 특성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적극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별도 법적 규제 없이는, 통상 실효성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연령확인 조치를 강제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성인에게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플랫폼의 경우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정책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실제 이용 사례에서 청소년의 규제 회피가 어렵지 않은 편인데, 예컨대 은어나 대체용어를 이용해 금지된 콘텐츠를 우회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106) “States sue Meta claiming its social platforms are addictive and harm children’s mental health”, APNews, 2023. 9. 25. 수정, 2024. 4. 1. 접속, <https://apnews.com/article/metachildrenteensharmlawsuit17858802d76143d358e38ee15150dc94>.

107) “메타, 청소년 유해콘텐츠 차단 강화”, 조선비즈, 2024. 1. 10. 수정, 2024. 4. 1. 접속,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01/10/WY6YCXZF55HLZBBH3V2YBL4RZQ>.

라. 연방의회에 대응과 비판

연방 차원에서 현 시점에 유효한 법률로는 앞서 살펴본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있으나,¹⁰⁸⁾ COPPA는 주로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이미 입법된 지 25년 이상 경과하였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는 하였다. 이에 미 연방의회에서는 2022년부터 대표적으로 아동온라인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 KOSA)¹⁰⁹⁾의 제정과 COPPA의 개정법안(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보통 "COPPA 2.0"이라 불림)¹¹⁰⁾을 추진하였고, 지난 2024년 7월 위 두 법안이 결합되어 아동온라인안전및프라이버시법(Kids Online Safety and Privacy Act: KOSPA)¹¹¹⁾의 명칭으로 초당적 협력 하에 연방 상원을 통과하였다.¹¹²⁾

1) 아동온라인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 KOSA)

KOSA는 온라인 피해로부터 13세 미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SNS와 같이 청소년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일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이메일서비스, 교육기관 등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었다. 그 중 핵심은 소셜미디어플랫폼으로 하여금 서비스의 설계 및 운영에서 정신적 장애, 중독, 성적 착취, 사이버괴롭힘 등 특정 피해를 방지,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할 것을 주의의무(duty of care)로 부과하는 것이었다.¹¹³⁾

108)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S. 1418.

109) Kids Online Safety Act - S.1409, H.R.7891.

그 밖에 “어린이 온라인 안전 청정 기반법(Clean Slate for Kids Online Act, S. 395)”, “소셜미디어에서의 아동 보호법(Protecting Kids on Social Media Act, S. 1291)”,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법(Social Media Child Protection Act, H. R. 821)” 등 다수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법(Digital Platform Commission Act, S. 1671)”, “알고리즘 정의와 온라인 플랫폼 투명성법(Algorithmic Justice and Online Platform Transparency Act, S. 2325)” 등 이용자 연령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안도 다수 발의되었다.

110) 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S.1418, H.R.7890.

111) Kids Online Safety and Privacy Act, S.2073.

112) 그러나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으로 올해 안에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Senate passes landmark bills to protect kids online, raising pressure on House, The Washington Post, 2024. 7. 30., 2024.

8. 1. 접속,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4/07/30/seante-kosa-passes-kids-online-privacy>. 유사한 취지를 가진 캘리포니아주법을 고려할 때, 위헌성에 대한 우려 역시 계속하여 제기된다고 한다.

113) 이는 서구 법 전통에 따라 “플랫폼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이용자의 최

위와 같은 일반적 조치의무 조항 외에, 타 이용자의 청소년 개인 및 그 데이터에의 접근 금지/자동재생, 시간에 따른 보상, 알림 등 강박적 이용 초래 기능의 제한/플랫폼 이용 시간 제한에 대한 선택권 제공/개인에 맞춤형된 (콘텐츠) 추천시스템의 선택 해제/개인정보 보호수준, 계정설정, 구매 및 거래능력 등 제어 선택권 보장/부모 등 보호자의 청소년 감독도구 기능의 숨김없는 구비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조치사항도 규정되었다.¹¹⁴⁾ 그러나 KOSA에 관해서는 법안이 제기된 직후부터 이미 대대적인 위헌성 논란이 일어났고, 현재까지도 사회 각계에 강한 반발이 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선례(Reno v. ACLU, Ashcroft v. ACLU 등)의 당사자인 ACLU(미국시민자유연맹) 역시 표현의 자유가 위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2) 아동온라인안전및프라이버시법(Kids Online Safety and Privacy Act: KOSPA)

KOSA와 많은 내용이 유사하나, COPPA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도 다수 추가하였다. 즉 온라인에서의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내용(알고리즘 투명성에 관한 내용 포함)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이하 주요내용만 간략히 살펴본다. 대상플랫폼(covered platform)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청소년(minor)¹¹⁵⁾이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여겨지는(that is used, or reasonably likely to be used by minor), 온라인플랫폼, 온라인비디오게임,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비디오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한다.¹¹⁶⁾ 설계 기능(design feature)은 미성년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빈도,

선의 이익을 위해(in the best interests of a user that the platform knows or reasonably should know is a minor)”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114) 그밖에 동 법안은 다음의 사항도 규율하였다.

- 개인에 맞춤형된 추천 시스템 및 개인 맞춤형 광고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청소년, 부모, 학교 등의 위험 보고 및 이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 구비
- 연령제한이 있는 상품광고 집행 자제
- 정기적인 플랫폼 이용 관련 위험 보고
- 매출, 고용, 사용자풀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검색엔진의 알고리즘 사용 전 이용자 안내 및 이용자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버전의 플랫폼을 기본값으로 제공

115) 17세 미만인 자. 아동(child)은 13세 미만의 자(individual)로 별도 정의하였다.

116) 그러나 다음은 대상플랫폼에서 제외되었다.

- 일반 통신 서비스, 광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실시간 통신을 위한 전화회의 또는 비디오 회의의 서비스(온라인플랫폼이 아니어야 하고, 실시간 통신 접속이 고유한 링크나 식별자[identifier]를 사용하여야 함), (단문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SMS, MMS)를 포함하여) 온라인플랫폼의 구성요소가 아니거나 이와 연결되지 않은 무선 메시징 서비스(주요 또는 유일한 기능이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되는 텍스트, 사진 또는 동영상의 전송으로 이루어지는 직접 메시징으로, 메시지가 발신자로

시간, 활동을 증가시키는 모든 기능이나 요소(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또는 자동 재생, 플랫폼 사용 시간에 따른 보상, 알림, 맞춤형 추천 시스템, 인게임 구매, 외모를 변경하는 필터)를 말한다.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personalized recommendation system)은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다른 이용자, 해시태그¹¹⁷⁾ 또는 게시물을 제안, 홍보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완전 또는 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SEC. 101).¹¹⁸⁾

대상플랫폼은 어떠한 설계 기능을 생성, 실행함에 있어 청소년에게 해악¹¹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이 의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콘텐츠의 검색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청소년 해악을 방지, 완화하는 자료와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는 위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SEC. 102).¹²⁰⁾ 이 법안에서 청소년임을 안다(know or knows)는 것은 실제 알고 있거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아는 경우(fairly implied on the basis of objective circumstances)를 말한다.

핵심은 SEC. 103의 청소년 보호도구에 관한 내용인데, 다음 표와 같다.

SEC. 103	주요내용
(a) 청소년	- 이하의 조치는 대상플랫폼이 이용자 또는 방문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부터 수신자에게 전송되고 온라인플랫폼 내에 게시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제공자 업체
- 비영리 조직/공립, 사립 교육기관/도서관 서비스 및 다른 법에서 정의된 도서관
- 뉴스 또는 스포츠 보도 웹사이트나 앱(해당 웹사이트나 앱의 비디오 콘텐츠가 뉴스 콘텐츠 또는 스포츠 보도의 수집, 보도, 출판과 관련된 경우로서, 온라인플랫폼이 아니어야 함)
- 주로 기업 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저장소, 파일 공유 또는 파일 협업 서비스로 기능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경우
- 인터넷 트래픽을 장소 간에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선택)하기 위해 존재하는 가상 사설망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

117) 해시태크(hashtag)는 특정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을 모아 분류하는 기능을 말한다.

118) 오로지 이용자의 언어, 도시 또는 연령만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은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119) - 불안, 우울, 섭식장애, 약물오남용, 자살행동 등 증거에 기반한 의학정보를 반영한 정신건강장애
 - 중독과 유사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이용 패턴
 - 신체적 폭력, 온라인 괴롭힘, 따돌림
 - 성적 착취, 학대
 - 마약, 담배, 도박, 주류의 홍보, 마케팅
 - 착취적, 불공정한, 사기적인 마케팅 관행 또는 기타 재정적 해악

120) 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에 의한 표현을 증시하려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플랫폼 측의 부담을 완화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충격을 줄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SEC. 103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용이한 다음과 같은 보호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이용자나 방문자가 청소년과 소통하는 것의 제한 · 다른 이용자나 방문자의 청소년 개인 데이터 열람 제한(특히 일반이용자에 공개[public access]되어서는 아니 됨) ·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플랫폼 이용 시간에 따른 보상이나 알림 등 청소년의 강박적 이용을 유발하는 설계 기능의 제한 ·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 제어 옵션의 제공.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선택 해제할 수 있되 연대기식의 콘텐츠 표시는 허용하거나, 이러한 시스템에 따른 추천 유형이나 카테고리 제한 · 청소년의 위치정보 공유 제한 및 (위치정보 추적시) 경고 제공 -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이 용이한 시간 제한 옵션 제공 - (위와 같은 보호도구에 관하여) 청소년에게 가장 보호적인 프라이버시 및 안전설정을 기본값으로 제공
(b) 부모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하의 조치는 대상플랫폼이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부모가 청소년의 플랫폼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고 이용이 용이한 설정을 제공하여야 함 - 부모 도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a)조에서 규정된 보호도구 및 옵션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프라이버시 및 계정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프라이버시와 계정 설정의 열람, 대상플랫폼이 이용자가 아동임을 아는 경우 이러한 설정을 변경, 통제하는 권한) · 청소년의 구매 및 금융거래 제한 능력 · 청소년의 대상플랫폼 총 이용시간 열람 및 제한 능력 - 부모도구가 활성화되고 어떠한 설정이나 제어가 적용된 경우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가시성 있는 알림 제공 - 대상플랫폼이 이용자가 아동임을 아는 경우 부모 도구의 기본 활성화 - 이 절의 발효 전 대상플랫폼이 이미 부모도구 활성화 안내를 제공했으나 부모가 이를 거부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도구를 기본 활성화할 필요 없음
(c) 보고 절차 (reporting mechan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플랫폼은 청소년에게 해악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쉽고 이용이 용이한 보고방법, 청소년 유해 문제에 특정한 전자적 연락처(electronic point of contact), 보고 수령의 확인 및 신속하게 상당한 답변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대상플랫폼은 연간 월평균 미국 내 활성 이용자 수(1,000명)에 따라 차등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기한 내에 보고(report)를 처리할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긴급한 위협이 포함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함

SEC. 103	주요내용
(d) 위법한 상품의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플랫폼은 청소년임을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 마약, 담배, 도박, 주류의 광고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
(e) 적용 원칙(rules of appl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대상플랫폼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간의 연령, 능력, 발달 수요를 고려하여 명확하고 가시성 있는 방식으로 정보 및 제어 옵션을 제공하고, 청소년이나 부모가 보호도구 및 부모도구를 약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것을 유도해서는 아니 됨. 보호도구 및 부모도구를 적절하게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용이한 제어도구를 제공해야 함. 또한 보호도구 및 부모도구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부모가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한 언어, 형식, 방법으로 정보 및 제어 옵션을 제공하여야 함 - 은폐된 패턴 금지(dark pattern prohibition): 이용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저하시키거나 방해하는 목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조작하는 것을 금지함 - 시기에 관한 고려(timing considerations): 보호도구나 부모도구가 온라인 비디오게임이 게임레벨을 진행하거나 경쟁을 마치는 등 정상적인 게임플레이의 중단을 요해서는 아니 됨. 또한 부모도구 변경 시점에 이용자 장치나 계정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인터넷 연결시 변경사항이 적용되어야 함 - 해석원칙(rules of construction): 이 절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아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플랫폼의 합리적인 조치(불법, 외설 또는 유해 자료의 배포를 차단, 감지, 방지하는 조치 또는 스팸을 차단하거나, 필터링하고 범죄활동을 방지하며, 플랫폼이나 서비스의 보안을 보호하는 조치) 방해 · 청소년의 이용내역, 검색기록, 메시지, 연락처 목록, 기타 통신 콘텐츠 또는 메타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 · 청소년의 언어, 도시, 연령만을 이용한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이용방해 · 온라인비디오게임이 경쟁 게임 플레이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용자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이름 기타 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방해

SEC. 104 이하에서는 대상플랫폼의 청소년 보호도구 등 이용약관이나 정책에 관한 공개/고지의무, 청소년 해악 예방 및 완화에 관한 조치에 관한 공개보고서 발행(독립적인 제3자와의 협력), 소셜미디어와 청소년에 관한 연구 및 시장조사 수행(플랫폼에 데이터 제공 요구 가능), 연령확인 방법 연구,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보호지침 발행 및 집행, 아동 온라인 안전 협의회(Kids Online Safety Council)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율한다.

SEC. 120 이하는 COPPA를 개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이다. 운영자(operator)의 정의(상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정보 기술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 등 확대하고,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의 개념도 확대하여 이에 포함되는 정보도 추가적으로 명시한다. 연결장치(connected device), 위치정보(geolocation information), 아동 청소년 대상 개인맞춤형 광고(individual-specific advertising to children or teens) 등의 개념도 새로이 정의한다. 보호대상으로 13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17세 미만의 청소년(teen)을 추가하여 부모나 청소년의 검증가능한 동의(verifiable consent) 없는 수집,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수집한 정보를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별도 통지 없이 미국 외로 저장/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며, 서비스 제공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보다 더 오랫동안 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내로 한정하고, 정보정정, 삭제요구권을 명시하는(개인정보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면 서비스 중단을 해서는 아니 됨) 등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도 이용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임을 실제 알고 있거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아는 경우에 이러한 규율이 적용된다.¹²¹⁾¹²²⁾

3) 비판

학계에서도 후술할 주정부 입법이 아닌 KOSA에 관해서는, 반드시 헌법적 차원의 논의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옹호 내지 비판이 있었다. 옹호론은 대체로,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121) 나아가 SEC. 120 이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따른 콘텐츠 추천시 투명성과 이용자의 제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히 "불투명 알고리즘(opaque algorithm: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선택, 순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정을 다룬다. 플랫폼은 불투명 알고리즘을 사용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명확하고 가시성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고(알고리즘의 주요 기능, 입력값, 매개변수,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방법,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등의 설명 포함), 이용자가 불투명 알고리즘과 입력 투명 알고리즘(input-transparent algorithm: 불투명 알고리즘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제공한 데이터만을 사용함)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불투명 알고리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서비스나 제품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다른 가격을 청구하거나, 제공 조건을 다르게 설정해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FTC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22) 그 밖에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된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FTC의 역할도 보강하였다. FTC의 아동 대상 모바일 및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감독 및 집행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 제출, 미국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의 청소년의 금융 기술 제품 사용시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 제출 등도 규정되었다.

년 유해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제 간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중독성, 정신건강 문제에 접근하는 논문으로서, 특히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와 연결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¹²³⁾ 더 많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쉽게 접근하게 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현행 연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점(주로 관련 법령상 제한 연령이 너무 낮고 연령 확인도 강제되지 않기 때문임), 공중보건 및 신경과학에 관한 각종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주는 점, 소셜미디어플랫폼은 청소년 이용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제적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이 논거로 제시되었다.

위 논문에서는 유해한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컴퓨터코드로서 표현의 수단(편집된 발언의 집합)으로 간주되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이 될 것이고, 통신법 제230조의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¹²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우회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검찰총장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영업 관행 등 범위반으로 인한 책임 추궁,¹²⁵⁾ 소비자의 판매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제조물책임소송 제기,¹²⁶⁾ 공공피해이론(public nuisance theory)의

123) Costello N et al., Algorithms, addictio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n Interdisciplinary Study to Inform State-level Policy Action to Protect Youth from the Dangers of Social Media,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49(2-3), 2023, 135-172.

124) 앞서 논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생성 콘텐츠에 관한 면책조항인데, 해당 논문의 필자는 통신법 제230조 입법 당시에는 소셜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늘날 같이 소통과 정보의 주요 원천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러한 면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플랫폼이 불법콘텐츠의 개발을 유도하거나 이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플랫폼이 출판업자로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아닌 경우(직접 불법행위에 기여한 경우), 플랫폼이 면책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콘텐츠에 관한 결정이 “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미 연방대법원의 *Twitter, Inc. v. Taamneh*, *Gonzalez v. Google*의 두 가지 사건에 관하여 논의하는데, *Twitter, Inc. v. Taamneh* 사건의 경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ISIS(테러단체) 관련 콘텐츠가 존재하였는데, 필자의 생각과 달리 법원은 소셜미디어회사가 알고리즘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ISIS를 도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Gonzalez v. Google* 사건의 경우 플랫폼이 광고 수익 공유하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플랫폼이 불법콘텐츠로부터 수익을 얻을 경우 면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제시하였음에도 법원은 주장의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소셜미디어가 알고리즘과 콘텐츠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125) 그러나 청소년의 피해가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직접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126) 사후적 대응방안이고 극소수의 청소년만이 구제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인정하였고, 역시 제품의 잘못된 설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적용¹²⁷⁾ 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후술할 캘리포니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데이터보호영향평가가 내부적으로만 수행되고 별도 알고리즘 위험 감사(algorithm risk audit)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소셜미디어플랫폼의 의무사항이 강화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한 법적, 정책적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위험 감사 법안(독립적인 제3자와의 협력 하에 특정 해악 식별/측정/보고 및 개선 목표설정 등을 통해 보고서 작성, 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이러한 법안은 콘텐츠 자체를 규제하지 않고 알고리즘의 기능과 설계를 규제하므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⁸⁾

한편,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이 청소년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함을 전제로,¹²⁹⁾ 입법에 실패한 KOSA와 여러 주법, 비교법적인 시도를 포함하여 현행법상의 법적 보호 시도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연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5조 의견서(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ment 25)상의 국제적 가치가 잘 반영된 (후술할) 캘리포니아 주법(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CAADCA)¹³⁰⁾과 ‘5Rights Foundation’ 관련 지침¹³¹⁾을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었다.¹³²⁾ 캘리포니아 주법이 일정 미만의 수익을 버는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연령 확인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

127) 시애틀 학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상대로, 해당 플랫폼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플랫폼 설계, 마케팅함으로써(플랫폼 이용시간을 늘이기 위한 유해한 알고리즘 이용) 정신 건강 문제를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 예컨대 건강에 해롭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재산 사용을 방해하여 편안한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었다고 한다. 역시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128) 선례로, 뉴욕시가 자동화된 고용 결정 도구(automated employment decision tools)의 인구통계학적 집단 편향성을 평가하는 감사법(20 NYCRR 871)을 통과시킨 사실 등을 제시하였다.

129) 기업이 보호자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판매할 수 있고, 제3자가 선의로 수집한 정보가 도난당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가 잘못된 알고리즘으로 청소년의 관심사를 잘못 연결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고 한다.

130) 청소년의 원칙적 위치정보 수집 및 프로파일링 금지, 데이터 목적에 따른 처리 최소화, 다크패턴 사용 및 청소년의 건강 또는 복리에 실질적으로 해로움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의 금지, 데이터보호 영향평가 완료, 연령적합적 언어로 이용약관, 커뮤니티 정책 고지 등.

131) 디지털환경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적절한 성장 지원에 관한 비영리단체가 내놓은 지침이다. 청소년의 성인 콘텐츠에의 접근 방지, 지인이 아닌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직접 메시징 비활성화, 자동 재생 옵션 삭제, 청소년에게 안전한 검색 모드를 기본으로 설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32) Steinberg, Stacey, *The Myth of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SMU Law Review,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 Research Paper Forthcoming*, 2023, 1-40.

점을 최소화한다고 보았다.¹³³⁾

KOSA가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 특히 우울증이나 초기 정신문제가 있는 성소수자 집단과 같은 일부 하위 집단을 해로운 소셜미디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국가가 플랫폼 회사에 청소년의 잠재적인 피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위험성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려는 점에서는 이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나, 자칫 법이 남용되어 청소년의 복리에 중요한 콘텐츠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조항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¹³⁴⁾

이하에서는 비판론을 위주로 살펴본다.

가)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기술만능주의적 접근

KOSA 등 관련 법안은 대체로 소셜미디어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 미디어 효과성(media effect orientation)을, 소셜미디어 시스템의 설계의 규제에 의한 사회 병폐의 해결에 있어서는 기술만능주의자성(technosolutionist orientation)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¹³⁵⁾ 해당 견해는 시스템에의 무단 접근 배제를 통한 데이터 보호나 미디어의 자동 재생 금지, 위치 공유 제한과 같은 소비자 제품 안전 접근방법(framework)과 달리,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피해는 복잡한 사회심리적 문제로서 그 발생이 소셜미디어 외부에 있고 측정이 난해할 뿐만 아니라 해결도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¹³⁶⁾

133) 그밖에 KOSA가 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엄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간략히 정리하며 여러 대안(기존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을 디지털제품에도 확장하여 적용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법 또는 미국 외 다른 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의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시하는 견해로, Lahti, Kaylee, *Minor Exploitation and Regulatory Shortfalls: Safeguarding Children's Data in the Age of Modern Technology, Theses/Capstones/Creative Projects*, 2024, 1-32..

134) Alemi, Farrokh et al., *Support for the Kids Online Safety Act (KOSA), With Caution, Quality Management in Health Care* 32(4), 2023, 278-280. 자살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의 개인 데이터는 소셜미디어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 필수적임에도 소셜미디어가 이를 공개하지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법의 유익한 부분이 있으나, 성적 소수자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 경험, 필요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더욱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KOSA가 이러한 접근을 차단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135)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CSLAW '24)*, ACM, 2024, 87.

136)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CSLAW '24)*, ACM, 2024, 90. 기술적 결정론 나아가 기술적 만능해결주의(technological solutionism)는 과거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제시된 사회문제가 기술 내지 설계에 의해 결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변이이론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론은 기술변화가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

KOSA 등의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유해성, 위험성을 주장하기 위해 음주, 흡연, 운전과 같이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는 다른 사례를 제시하거나, 법이 차량 제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차량안전띠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소비자제품 안전의 역사를 지적한다고 한다. 그러나 KOSA 등이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자동재생 제한과 같이 특정 설계 기능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으로 하여금 집단따돌림, 우울증 등 수십 년간 전문가들이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복잡한 해악을 예방,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도 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나)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모호한’ 표현에 대한 위헌적 검열

KOSA에서 규율하는 중독성 있는 행동을 나타내거나 장려하는 패턴 내지 기능의 활용 또는 우울증, 섭식장애 등 정신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여실하다는 견해도 있었다.¹³⁷⁾ 성적 착취나 학대, 담배/주류/도박의 홍보나 판매, 약탈적/불공정/기만적이거나 기타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는 마케팅, 신체적 폭력 자체는 헌법상 보호받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와 달리 KOSA가 규율하는 대상은 대체로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표현내용을 규제하는 KOSA가 합헌이기 위해서는 헌법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를 비판하였다. 나아가 KOSA에서 규율대상이 되는 표현이 그 자체로 모호하다는 지적도 하였다.

KOSA를 포함하여 소셜미디어 규제 논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 적합한 정보임에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음을 이유로 그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¹³⁸⁾ 특히 KOSA의 주의의무조항에 따라 플랫폼이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에 관해서 이를 다투는 주체가 연방거래위원회(FTC)라는 점에서, 특정 콘텐츠를 청소년 보호수단으로 무기화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¹³⁹⁾ KOSA가 여러 비판에 대응하여 법

여 결과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며, 사회에서 수용되는 맥락과 관행,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방향으로 사실상 극복되었다고 한다.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 (CSLAW ’24)*, ACM, 2024, 88.

137) Ben Sperry, *A Coasean Analysis of Online Age-Verification and Parental-Consent Regimes*, *ICLE Issue Brief 2023-11-09*,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2023, 23-27.

138)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Child Online Safety Legislation: A Primer*,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24, 10.21428/bfcb0bfff.de78f444, 29.

139)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Child Online Safety Legislation: A Primer*,

안내용을 수정하고 청소년이 “의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검색하는 경우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예외를 두었지만, 이는 소송 시작 전 플랫폼이 사전 검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정부입법에 의해 예컨대 성소수자 콘텐츠 같은 특정 콘텐츠가 유해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미 ACLU(미국시민자유연맹)에서는 연령확인 요구가 성인과 청소년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주의의무 조항은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을 유도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전자프론티어재단)¹⁴⁰도 수정헌법 제1조 문제를 제기하며 주정부가 온라인 서비스와 표현을 대상으로 막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짚은 바 있다.

다) 성인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 및 실효성 없고 유해한 대응이라는 비판

KOSA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온라인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청소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지 못할 수 있는데, 개별 조항이 감시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청소년이 그 발달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가정 내 학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대법원 선례에 비추어 위헌적인 연령 확인 체계를 만들고 성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간략히 지적하기도 하였다.¹⁴¹ KOSA가 연령확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결국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령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를 희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한다. 예컨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성인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고, 신분증 확인은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나 신분증이 없는 성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카드가 없는 18%의 미국인을 배제하고, AI 기반 얼굴 인식은 쉽게 우회될 수 있고 인종적 편향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이 VPN을 이용해 연령 확인을 회피하거나 연령확인, 부모감독이 없는 소규모 소셜미디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미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24, 10.21428/bfcb0bff.de78f444, 30-32.

140)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141) Edward Longe, Keeping Teens Safe On Social Media: A Guide for Free-Market Lawmakers, *Issue Commentary* July 2023, The James Madison Institute, 2023, 3-4. 동지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Child Online Safety Legislation: A Primer,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24, 10.21428/bfcb0bff.de78f444

단점을 지적되었다.¹⁴²⁾

라) 막연히 청소년보다 부모의 권리, 정부의 권한을 우위에 둘 우려

KOSA에 따라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익명으로 웹을 탐색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포르노 사이트나 비판적 인종 이론, 성 건강, 낙태 정보, LGBTQ+ 콘텐츠가 포함된 사이트도 연령 확인이 필요하게 될 수 있어 정부 감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민간 기업이 매우 기밀적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원 도용이나 해킹, 유출, 침해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자칫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부모에 의해 감시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권리를 청소년의 권리보다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¹⁴³⁾ 이는 특히 부모의 통제 증가로 생활필수적인 정보와 공동체를 찾으려는 청소년에게 위축효과를 가할 수 있다고 한다.¹⁴⁴⁾ 예컨대 성소수자의 경우 부모의 디지털 감시를 경험한 후 자기 검열을 하거나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에 놓이고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낙태나 ‘재생산권’이 해롭다고 정의되지 않더라도 연령확인은 관련 정보를 찾는 청소년에게 위축효과를 가져오며, 신분확인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불법이민자의 체포나 추방으로 이용될 수 있어 온라인 이용 자체를 억제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보호 사이의 논쟁의 복잡성과 모순성이 부분적으로는 미국에서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과 프라이버시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는 법적 틀의 부재로부터 비롯됨을 지적하면서, KOSA가 소셜미디어사이트로 하여금 청소년의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특정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콘텐츠 필터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있어야만 하고 동시에 청소년 중심의 대책과 함께 청소년 스스로가 온라인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142)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Child Online Safety Legislation: A Primer*,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24, 10.21428/bfcb0bff.de78f444, 27-27.

143)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Child Online Safety Legislation: A Primer*,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24, 10.21428/bfcb0bff.de78f444, 27-28.

144)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Child Online Safety Legislation: A Primer*,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24, 10.21428/bfcb0bff.de78f444, 30.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¹⁴⁵⁾

마. 각 주의 입법적 대응과 법적 분쟁

전국 주 입법부 협의회(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자료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24년 2월 기준 적어도 30개 이상의 주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 기반 통신수단에 관한 보호조치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내용에는 예컨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연구위원회 또는 대책팀의 설치, 연령에 맞는 설계 코드의 설정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평가 요구, 계정 개설시 연령확인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요구,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다.¹⁴⁶⁾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 주 입법은, 주로 아마존, 구글 등이 회원으로 있는 정보통신업계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의 수정 헌법 제1조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한 법적 대응에 따라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미국 주정부의 대표적인 입법과 이에 관한 법원의 헌법적 판단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현 시점에서도 계속하여 관련 입법이 논의, 발전되고 있으나, 입법절차를 거쳐 실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사례는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 2022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 입법, 2023년 제정된 아칸소주, 오하이오주 입법이 바로 이와 같은 선구적 사례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2023년(오하이오주의 경우 2024년 2월) 이들 법의 시행을 잠정 금지하였다. 다른 주정부 역시 이와 같은 입법을 참고하여 법제정을 시도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볼 실익이 있다.

한편, 유타주는 미국에서 당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규제입법을 시도하려 한 경우에 속하나, 넷초이스가 본래 시행 예정이던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기존 입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치성향은 아칸소주와 같이 보수적

145) Park, Jinkyung et al., Towards Resilience and Autonomy-Based Approaches for Adolescents Online Safety (May 20, 2023),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4608406> or <http://dx.doi.org/10.2139/ssrn.4608406>, 2.

146) “Social Media and Children 2024 Legislation”,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4. 2. 6. 수정, 2024. 4. 1. 접속, <https://www.ncsl.org/technology-and-communication/social-media-and-children-2024-legislation>.

성향이 강한 주에 해당한다. 플로리다주는 오하이오주와 같이 비교적 중도적인 정치성향을 보이는 곳인데, 주지사가 기존 입법시도보다 (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보다 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규제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입법한 사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진보적 성향이 강한 주인데, 캘리포니아와 유사하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플랫폼사업자에게 다방면의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오하이오주의 경우

가) 입법내용 및 동향

2023년 제정, 2024년 1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오하이오주의 소셜미디어부모통지법(Social Media Parental Notification Act)¹⁴⁷⁾은 여러 주법 중 전형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관련 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을 직접 다루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실익이 있다. 동법의 핵심내용은 ‘청소년 이용 필요성이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연령확인 조치 및 강력한 부모도구의 강제’에 있다.

위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접속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웹사이트, 서비스 또는 제품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대상에는 메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게임/활동 회사 등 다른 이용자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며, 사회적 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목록을 만들며,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생성, 게시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그러나 검색엔진, 클라우드,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나,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리뷰하거나 리뷰에 댓글을 다는 경우 또는 확립되고 널리 알려진 언론매체에 코멘트를 다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첫째, 청소년 이용제한은 다음과 같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연령 확인,¹⁴⁸⁾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검증가능한 동의 수령 및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서면 동의 확인서 송부 등을 강제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의 해당 온라인 서비스 등에 대한 액세스 또는 이용을 거부하도록 한다.

둘째, 부모도구 강제는 다음과 같다. 운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특정 프로필에 대

147) Ohio Rev. Code § 1349.09.

148) 우편, 팩스나 전자메일을 통한 동의 양식 징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기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사용, 무료 전화번호로의 전화, 화상시스템을 통한 직원과의 연결, 정부 발급 신분증 양식 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콘텐츠를 검열(censoring)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기능 목록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하여야 한다. 범위반시 금전적 제재(civil penalty)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넷초이스가 오하이오주를 상대로 수정헌법 제1조 등을 위반한다며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오하이오 남부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법시행이 잠정 금지되었다(NetChoice LLC v. Yost 사건).¹⁴⁹⁾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 넷초이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i) 위 법이 너무 모호하여 넷초이스의 회원이 준수 여부에 관한 공정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¹⁵⁰⁾에 위반된다. (ii) 위 법은 화자에 관한 제한이지만¹⁵¹⁾ 내용을 고려하여 화자를 선별하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규제대상과 그 예외조항 역시 명백히 내용 기반의 제한이다. (iii) 표현에 관해 청소년의 접근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과소하게 포괄적으로(impermissibly overinclusive and underinclusive)¹⁵²⁾ 금지한다. 따라서 위 법은 위헌이다.¹⁵³⁾

피고 주법무부장관 요스트(Yost)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i) 위 법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계약할 권리를 제약할 뿐이므로 상업행위 규제에 적용되는 합리적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 (ii) 설령 표현의 자유 제한이어도 내용중립적 제한이고 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부수적이며, 화자 제한 부분도 특정 표현내용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iii) 위 법의 규제는 단순히 플랫폼과 영업적 관행(악의적인 서비스 약관 포함)이 청소년의 프라이버시, 건강과 안전에 큰 위험(성적 착취 포함)을 초래하는 것에 대응하여 계약 규제 메커니즘을 조정할 뿐 표현된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¹⁵⁴⁾ 국가는 자녀의 돌봄에 관한 부모의 권리를 보호,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 예외대상인 구매상품리뷰 사이트나 전통

149)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150)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조항에 해당한다.

151) 특정 발화자나 집단의 표현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제한은 외관상 가치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표현내용을 규제하려는 경우 내용 기반 제한으로 평가되어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

152) 여기서 overinclusive는 문제의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은 표현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underinclusive는 특정 표현만을 제한하면서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 다른 표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153)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11-12.

154)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12-13, 16.

미디어 매체에서는 이용자 간 개인 채팅 등을 할 수 없어 문제가 될만한 “특징과 기능”이 없거나 덜 위협적이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¹⁵⁵⁾ 따라서 위 법은 위헌이 아니다.

다) 법원의 판단

(1) 심사기준

법원은 본안 승소가능성과 회복불가능성을 위주로 판단하였는데, 우선 심사기준에 관해 논하였다.¹⁵⁶⁾ 법원은 설령 원고와 같은 운영자가 이윤을 추구하고 전통적인 언론매체보다 콘텐츠의 전시(curation)에 덜 관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독자 투고를 받는 신문이나 여러 저자의 에세이를 출판하는 출판사처럼) 여러 방식으로 표현에 관여하고, 운영자가 청소년을 상대로 또는 청소년이 한 표현을 게시, 배포하거나, 청소년 스스로 표현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위 법을 단순히 상업, 계약행위 규제로만 볼 수 없어 합리적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⁵⁷⁾

또한 법원은 위 법이 표현의 자유 제한이면서, 내용 기반 규제에 해당하므로 중간수준 심사가 아닌 엄격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법원은 내용 기반 규제 해당 여부는 정부가 논의되는 주제나 표출된 사상 또는 메시지에 동의/부동의하기 때문에 특정 표현을 규제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외관상 내용 기반 규제인 경우에는 해당 법의 “선한 동기” 여하와 관계없이 엄격심사가 적용되고 외관상 그렇지 않더라도 그 법의 목적이나 정당화에 있어 표현행위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한 규제라면 내용 기반 규제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¹⁵⁸⁾ 또한 화자 기반 규제의 경우 반드시 내용 기반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¹⁵⁹⁾ 종종 내용 기반 규제임을 대신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수 있고 다만 특정 주제를 식별하려는 외관상 또는 위장된 내용 기반의 규제가 아니라면 중간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실시하였다.¹⁶⁰⁾ 그런데 위 법의 경우 선한 의도와

155)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17.

156) 참고로 넷초이스가 그 회원 조직은 물론 웹사이트에 액세스하기를 원하는 오하이오주 청소년의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를 대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넷초이스가 그 회원 조직과 오하이오주의 청소년을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157)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13.

158) 가치지향적인 법이 내용 기반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가치지향적이어야만 내용 기반 규제가 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였다.

159) Nat'l Inst. Of Fam. & Life Advocs. v. Becerra, 138 S.Ct. 2361, 2378 (2018), Schickel v. Dilger, 925 F.3d 858, 876 (6th Cir. 2019)의 예를 들어 연방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한다.

160)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13-16.

관계없이 특정 주제를 식별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므로 법원의 입장에서 반사적으로 외관상 내용 기반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엄격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최근 연방대법원의 모순된 판시를 보면 이를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¹⁶¹⁾

(2) 내용 기반 규제 여부

위와 같은 판시 후 법원은 위 법이 내용 기반 규제에 해당하여 엄격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우선 위 법은 운영자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접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운영자는 표현내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만화 같은 청소년 취향의 표현을 넘어 인간 사고만큼이나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이상의 (광범위한) 규제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소셜미디어를 특징짓는 “기능과 특징” 자체가 의사소통적인 내용이라고 보았는데, 위 법상 운영자가 “단순한 전달자(mere conduits)”가 아니라 “이용자와 콘텐츠를 선별하여 플랫폼이 추구하는 커뮤니티 유형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에 따라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편집 재량을 행사”하는데,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중독성 있지만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적은 “무한 스크롤” 같은 기능보다는) 이용자가 포스팅(post), 코멘트(comment)를 달거나, 비밀리에 채팅(chat)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즉 온라인에서 사회적으로 연결하는 기능들의 존재 자체가 “플랫폼이 조성, 추구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유형”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과 특징”을 그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와 분리할 수 없어, 내용 기반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¹⁶²⁾

161)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14-15.

Reed v. Town of Gilbert(2015)(임시 방향 표지판의 크기, 수, 기간 및 위치를 제한하는 조례가 수정헌법 제1조나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표현에 관한 내용 기반 규제로 엄격한 심사 하에 헌법위반으로 본 사례.)는 적어도 어떠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대한 검토가 선행 그 표현내용의 확인을 요한다고 하여 반드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는 내용 기반 규제는 아니라는 듯한 입장을 취한 반면, City of Austin, Texas v. Reagan National Advertising of Austin, LCC(2022)(오스틴 시 규정이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내부 표지판과 외부 표지판을 구별하는 것이 외관상 위헌적인 내용 기반 규제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용 중립적인 규제로 본 사례)에서 다수의견은 내용 기반 규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위해 어떠한 주제나 내용을 선별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를 살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클레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 등의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이 Reed 판결에서의 룰을 잘못 해석하였고, 일단 규제 적용시 메시지가 문제된다면 그 법은 내용 기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62)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19-21.

한편 법원은 위 법이 제품 리뷰 웹사이트 및 뉴스와 같은 “널리 인정된” 미디어 수단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접근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려 하는데, 이러한 예외는 (앞서 살펴본 논증보다도) 더 쉽게 내용 기반 규제임을 확인할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주정부는 (개인 채팅과는 대조적으로) 공적인 매체에서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은 공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의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개인 채팅 기능이 없는 웹사이트의 하위 집합을 ‘내용’에 따라 분류(예컨대 책, 영화 리뷰 웹사이트는 이러한 예외가 아님)하고 있어 주정부가 특정 주제를 보다 선호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것으로, 명백히 엄격심사를 받아야 할 내용 기반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개인 채팅의 상대적 위험성, 입법목적의 타당성은 이와 무관하다고 보았다.¹⁶³⁾

마지막으로 법원은 (주정부가)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사상을 제한할 수 있는 자의적인 자유”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Brown v. Ent. Merchs. Ass'n* 사건¹⁶⁴⁾에 따르면 “국가가 부모가 금지한 사항을 집행할 권한이 있어도 그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청소년이 듣거나 말할 것을 미리 막을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고 “법률은 청소년의 표현과 종교에 관한 부모의 권한을 강제하지 않으며 오로지 부모의 금지(veto)에 따라 정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법은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그의 권한을 강제하는)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내용 기반 규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헌법에 따라 보호되고 외설적이지 않은 콘텐츠에 액세스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도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하였다.¹⁶⁵⁾

(3) 문제되는 법의 위헌성

마지막으로 법원은 위 법이 엄격심사 기준에 따라 “중대한 정부 이익을 증진하고 그 목적에 적합하고 협소하게” 규정되어 “표현의 자유 제한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함을 보이지 못해 위헌이라고 보았다. 청소년 보호가 중대한 정부 이익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위 법이 플랫폼의 비양심적이거나 억압적 계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하고 협소하게 맞춤형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¹⁶⁶⁾ 청소년에게

163)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21-22.

164) 동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청소년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규정을 무효화하였다.

165)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22-23.

166)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없이 *New York Times*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Facebook*과는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웹상의 모든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숨막힐 정도로 무딘 것이고, 부모가 단 한 번의 계정 이용 동의를 할 뿐 부모나 플랫폼이 다른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충분히 맞춤화되지도 않았다. 부모가 국가의 후견적 개입에 관하여 반대하는 경우는 물론 이에 무관심한 경우도 포함하여 청소년에게 표현을 전달하는 제3자를 처벌하는 것 역시 중대한 정부 이익이면서 적절한 수단인지 의심이 있어 위 법이 과도하게 포괄적, 또는/및 과소하게 포괄적이라고 보았다.¹⁶⁷⁾

(4) 모호성 해소 여부 - 수정헌법 제14조 관련

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접속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고 이를 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11가지 요소¹⁶⁸⁾ 역시 “디자인 요소”나 “언어” 등이 포함되는 한편, 예외인 “널리 인정된 미디어 매체도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았다.¹⁶⁹⁾

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 입법내용 및 동향

2022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의 연령적합설계법(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CAADCA)¹⁷⁰⁾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업규모, 수익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접근 가능성이 있는(likely to be accessed by children)”

167)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23-26.

168) 위 법은 청소년대상성을 결정함에 있어 주제, 언어, 설계요소, 시각적 콘텐츠,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용 또는 아동 지향적 활동이나 동기,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 모델의 나이, 아동에게 유명하거나 호감을 주는 자의 존재, 광고, 청중(audience) 구성에 관한 경험적 증거, 기타 의도된 청중에 대한 증거 등 11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169)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26-27.

170) Cal. Civ. Code § 1798.99.29. 오늘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광고를 통해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 광고제공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설정 자체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보다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방 COPPA(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등의 데이터 수집시 제한 및 관련 부모의 결정권한 부여)와 캘리포니아 소비자프라이버시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결정 권한 부여)의 보호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상회하는 강한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CAADCA가 제정되었다.

온라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이다. 동법은 ‘직접적인 연령제한’을 제외하고 설계 제한, 위험평가, 보고 등을 강제하는 등 광범위한 청소년 보호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연방법안인 KOSPA와 다른 주법의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CAADCA가 영국의 연령적합설계법(Age-Appropriate Design Code)을 본따서 제정되었는데, 영국의 경우와 달리 수정헌법 제1조와 같은 헌법이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하였다.¹⁷¹⁾ 한편 위 CAADCA와 별개로, 캘리포니아 주는 2024년 상반기에 소셜미디어플랫폼으로 하여금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 자녀에게 중독성 있는 피드(feed)¹⁷²⁾를 제공하거나 학교에 있는 시간과 야간 시간에 알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Protecting Our Kids from Social Media Addiction bill)과 대규모 소셜미디어플랫폼 제공자로 하여금 자녀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안(Let Parents Choose Protection Act)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¹⁷³⁾

규제대상 업체는 직접적인 연령확인 및 청소년 이용금지 조치 외의 거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i) 데이터보호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를 완료하고¹⁷⁴⁾ 주정부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i) 합리적 수준에서 확실성을 갖고 이용자 연령추정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모든 소비자에게 청소년 수준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조치를 적용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본값을 자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것으로 설정되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약관 등을 접근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간결하고 분명하며 명확한 언어로 제공하고 이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¹⁷⁵⁾

(iii) 특히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청소년의 신체, 정신건강 또는 안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71) Peter J. Benson, NetChoice v. Bonta and First Amendment Limits on Protecting Children Online (LSB1107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2023, 4.

172) 온라인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보는 콘텐츠의 목록을 말하는데, 예컨대 이용자가 팔로우(follow) 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게시물이나 자동 추천되는 콘텐츠, 광고 등을 말한다.

173) <https://sd09.senate.ca.gov/news/20240129-sen-skinner-introduces-landmark-bill-protect-youth-social-media-addiction>; [https://trackbill.com/bill/california-senate-bill-1444-let-parents-choose-protection-act-of-2024/2520714/#:~:text=The%20bill%20would%20prohibit%20the,the%20account%20with%20the%20large](https://trackbill.com/bill/california-senate-bill-1444-let-parents-choose-protection-act-of-2024/2520714/#:~:text=The%20bill%20would%20prohibit%20the,the%20account%20with%20the%20large.). 2024. 8. 1. 접속.

174) 이는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의 목적, 청소년의 이용방법 및 업체의 데이터관리 관행으로부터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피해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법상 열거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역시 평가 대상이 된다.

175) 나아가 공개된 약관, 정책 및 커뮤니티 규칙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소년 프로파일링이나 위치정보 수집도 금지된다. 청소년이 적극적,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 공유 또는 보유해서는 아니 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래 수집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이용하는 아니 된다. 청소년에게 프라이버시 보호 포기 등을 유도, 조장하는 은폐된 패턴 (dark pattern)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iv) 절차적으로는 부모, 보호자 등이 청소년의 활동을 모니터링, 위치추적할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알림을 주어야 하는 한편, (v) 청소년, 부모 등이 청소년의 데이터 등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기 쉽도록 하고, 청소년에게 유해 우려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 법은 2024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넷초이스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입법의 목적이 명백히 중요함에도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인용, 예비금지명령 결정을 하여 장래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Netchoice LLC v. Bonta 사건).¹⁷⁶⁾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 넷초이스는 위 법이 수정헌법 제1조(특히 표현 내용 기반 규제에 해당)와 헌법상의 내재적 통상조항(dormant Commerce Clause)은 물론 연방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¹⁷⁷⁾과 통신법 제230절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⁸⁾ 이에 피고 주법무부장관 본타(Bonta)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은 수정헌법 제1조와 관계없고, 위 법이 내재적 통상조항과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위 법이 표현행위가 아닌 데이터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관행만을 규제하고, 설령 표현규제라고 하더라도 내용-관점-화자의 모든 측면에서 중립적이므로 엄격 심사가 아닌 중간 수준 심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¹⁷⁹⁾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안 승소가능성을 위주로, 위 법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을 규제하고 있고, 엄격한 심사 또는 중간 수준의 심사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 입

176)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177)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15 U.S.C. §§ 6501-6506.

178)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1-2, 6, 17.

179)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2, 10, 17.

증될 가능성이 상당히 보인다고 판단하였다.¹⁸⁰⁾

(1) 표현의 자유 제한 여부

우선 법원은 위 법이 특정 업체의 데이터 수집, 판매 및 공유를 제한함을 이유로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대법원이 *Sorrell v. IMS Health* 판결¹⁸¹⁾에서 “정보의 생산과 배포는 표현행위”라고 한 것처럼 “어떠한 목적으로 일부 화자를 상대로만 정보의 접근가능성과 이용 자체(availability and use)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행위의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i) 보고나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조항은 생산과 배포라는 표현행위를 요구하게 되고 (ii) 일정 기본 규칙이나 정책을 요구하는 조항은 특정 표현 내용에의 접근을 검열하거나 금지하는 효과를 요하므로 결국 표현의 자유 제한이 된다고 본 것이다.¹⁸²⁾

(2) 위헌가능성

법원은 심사 강도에 관해서는, 일단 중간심사가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법의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일단 법원은 청소년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중대한 정부 이익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았다.¹⁸³⁾

그러나 법원은 대체로 관련 법조항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해악을 완화시킬 수 있을 만큼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i) DPIA 및 관련 보고서 작성이 반드시 청소년 해악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ii) 이용자 연령 추정 및 추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 수준의 보호 적용,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기본값 설정은 청소년 피해 완화의 실질적 가능성이 낮고, 업체로 하여금 정보수집을 늘리게 하여 침해 최소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표현행위에 막대한 냉각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성인 이용자조차 청소년 적합한 콘텐츠만 접하게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¹⁸⁴⁾ 나아가 연령적합적인 언어로 서비스약관 등을 설명하도록 강제하는 것 역시 실질적으로 해악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법률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다고 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소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약관의 시행 강제 역시 청소년 해악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180)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6, 37.

181) *Sorrell, Attorney General of Vermont, et al. v. IMS Health Inc. et al*(2010).

182)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11-13.

183)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18-19.

184)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19-25.

(iii)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 이용”은 문언 자체로 대체 어떠한 정보 처리가 해로운 것인지 알기 어렵고 이에 관한 각종 규제 역시 목적에 적합한 수단인 것도 아니다. 청소년 프로파일링 제한은 그에게 유익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데 특히 공동체와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소년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프로파일링이 허용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이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고 정치적 논란 소지도 있다.¹⁸⁵⁾ 청소년에게 해로운 방식의 정보 처리나 은폐된 패턴(dark pattern)의 이용 제한도 충분히 수단적합적으로 좁혀지지 않았는데, 만약 광범위한 콘텐츠가 유아부터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까지 누구에게나 유해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웹사이트는 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어떠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국 청소년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그의 콘텐츠 접근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¹⁸⁶⁾

그 밖에 CAADCA의 나머지 부분도 수정헌법 제1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과 불가분하다고 보아 법시행을 예비적으로 금지하였다.

3) 아칸소주의 경우

가) 입법내용 및 동향

2023년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아칸소주의 소셜미디어 안전법(Social Media Safety Act)¹⁸⁷⁾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핵심은 오하이오주와 유사하게 소셜미디어 회사¹⁸⁸⁾로 하여금 주에 거주하는 모든 계정 소유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가 아닌 제3의 위탁업체에 연령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연령 확인 방법”을 강제한다. 이와 같이 제3의 업체 웹사이트에 운전면허증 등 법상 정해진 신분증을 업로드하여 연령

185)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25-31.

186)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32-34.

187) Arkansas Act 689 of 2023.

188) 여기서 소셜미디어 회사(social media company)는 계정 보유자로 하여금, 다른 프로필 및 계정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개 프로필을 만들고, 콘텐츠를 업로드 또는 게시하며, 다른 계정 보유자의 콘텐츠를 열람하고, “요청과 수락을 통해” 다른 계정 보유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대화형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보관 서비스, 사이버보안 서비스, 경력개발 또는 교육 도구 등은 물론, 이메일이나 직접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 뉴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정보제공형(pre-select) 서비스, 상호작용이 제품리뷰나 구매표시 등에 제한된 온라인쇼핑이나 이커머스 사이트도 제외된다. 매출이나 수익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도 제외된다.

을 증명, 성인 인증이 된 자만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 계정생성이나 플랫폼접근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동의도 부모의 연령, 신원, 청소년과의 관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넷초이스가 아칸소주를 상대로 헌법위반 등을 이유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아칸소주 서부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법시행이 잠정 금지되었다 (NetChoice LLC v. Griffin).¹⁸⁹⁾

나) 법원의 판단¹⁹⁰⁾

법원은 위 법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법원은 위 법의 주요 용어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원고의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규제대상 요건인 “(타 이용자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¹⁹¹⁾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개념으로서 “실질적인 기능(substantial function)”이나, 규제적용에서 면제되는 “지배적 또는 배타적 기능(predominant or exclusive function)”이 비공개적인 직접 메시지 전송인 경우”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의 입증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규정되지 않았는데, 예컨대 부모와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나 이혼한 부모의 자녀의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¹⁹²⁾

다음으로 법원은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하여, 위 법이 엄격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심리 초기임을 고려하여 일단 중간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다만 주정부는 위 법이 소셜미디어에서 청소년의 보호(정신건강 및 성적 착취 배제)를 위한 것이지 정부가 표현내용에 이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므로, 예컨대 청소년의 주점,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규제와 유사하다고 설명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주점 비유가 설

189) NetChoice, LLC v. Griffin, 5:23-cv-05105, (W.D. Ark.).

190) 법원은 본격적인 판단에 앞서, 정부 권고 등을 인용하며 과학계에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유익하면서도 동시에 정신건강 등에 해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폭넓은 합의가 있다는 점,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플랫폼에서 아동포르노, 외설물, 명예훼손적이거나 범죄행위에 수반되는 등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을 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통신사나 광대역 서비스 업체의 자녀 보호 설정, 아이폰(iPhone)과 같은 개별 장치 수준이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의 보호기능 등 기존에도 부모의 자녀 보호에 유용한 많은 도구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실시하였다.

191) 메타, 틱톡, 트위터를 규제하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스냅챗(snapchat)과 같이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한다.

192) NetChoice, LLC v. Griffin, 5:23-cv-05105, (W.D. Ark.), 30-35.

특력이 없다고 보며 상당한 논박을 하였다.¹⁹³⁾ 소셜미디어는 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곳이므로 청소년이 주류를 소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에 대한 규제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의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¹⁹⁴⁾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포함하여 방대한 표현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규제대상에 많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규제가 내용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준다고 하였다.¹⁹⁵⁾

법원은 위 법이 청소년보호(과다사용, 유해콘텐츠 접근)라는 중대한 정부 이익에 부합되도록 효과적으로 협소하게 조정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i) 소셜미디어는 현대의 공공 광장으로서 뉴스, 취업정보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와 지식의 광대한 영역을 탐색하는 주요 원천인데, 위 법상 연령확인 조치는 주정부가 승인한 문서 제출이나 생체인식 등을 거치도록 강제하여 성인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접근하는 행위에 상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이용자가 보안이나 신원 도용 등에 대한 우려로 이용을 억제하게 되고 (기존에 누릴 수 있었던) 익명성도 포기하게 된다. (ii) 청소년의 경우에도 헌법상 방대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주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할 권한이 무제한적인(free-floating) 것은 아니며, 음란물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계정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단순히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표현과 사상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청소년을 배제할 수 없다.¹⁹⁶⁾

(iii) 또한 위 법은 Brown 판결¹⁹⁷⁾의 판시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의 피해와 소셜미디어 사이의 연관성이 피고인 주정부에 의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엄밀하게 규

193) 법원과 피고 주정부 사이의 다음의 비유 논의를 참고해볼 수 있다.

법원: 피고 측 전문증인은 소셜미디어를 쇼핑몰(mall)에 비유하였다. 쇼핑몰에는 바(bar)가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 청소년은 바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는 없지만, 서점이나 옷가게, 운동용품 가게에는 갈 수 있다. 판단대상이 법령은 쇼핑몰 안의 바가 아니라 쇼핑몰 입구를 막는 것이 아닌가?

피고: 그와 같은 비유에 따르면, 주정부의 입장은 쇼핑몰 전체가 바라는 것입니다.

194) 그 중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것으로, 폭력이나 자해행위의 묘사, 다이어트 정보, 집단 따돌림 발언, 신체적 특징, 인종이나 민족, 성적 지향 등. 법원은 이러한 표현까지 제한된다면 엄격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195) NetChoice, LLC v. Griffin, 5:23-cv-05105, (W.D. Ark.), 35-39.

196) NetChoice, LLC v. Griffin, 5:23-cv-05105, (W.D. Ark.), 39-41. 피고 측 전문가의 진술이나 여러 자료 중 어느 것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용가능한 콘텐츠 대다수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또는 음란물에 해당함을 보이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197)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564 U.S., 801-803. 부모의 의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포괄적인 정부규제가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부모가 정부규제를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효과는 ‘부모가 그렇게 하길 원할 것이라는(ought to want)’ 정부의 생각을 실현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이러한 규제가 좁게 맞추어진(tailored) 규제가 아닐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이다.

올되지도 않았다. 예컨대 청소년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유튜브는 위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¹⁹⁸⁾ 입법자들이 입법 근거로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여 반영하지 않았다.¹⁹⁹⁾ 주정부가 인용하는 전문가 발언이나 문헌 어느 것도 매출이나 수익이 일정 액수 이상인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보호자 감독 없이 보내는 시간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뿐이다. 나아가 위 법은 오로지 계정 생성시 단 한 번의 부모의 동의만을 문제삼고, 그 이후의 부모의 콘텐츠 필터링 기타 통제수단을 이용한 모니터링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비유하자면 부모가 그 청소년 자녀를 주점에 데려다주고 나서는 다시 데리러 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생성시 부모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 청소년이 보다 잘 보호받을 것이며 부모도 더 많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주정부의 막연한 가정일 뿐이라고 보았다.²⁰⁰⁾²⁰¹⁾

마지막으로 법원은 위 법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아니라 대량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뿐이라고 보았다.²⁰²⁾ 연령확인 조치는 수신단계에서 선별적 제한(표적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신단계에서 보편적 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또는 그 부모)가 스스로 설치한 기기, 필터 또는 제3의 업체를 통해 자신의 정보 접근을 통제

198) 성적 착취(몸캠피싱, sextortion)의 온상인 게임사이트나 비디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도 제외되었다.
 199) 구글, 왓츠앱(WhatsApp), 스냅챗(Snapchat)과 같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바로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위험한 플랫폼으로 많이 보고된 플랫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아동 성착취로 의심되는 보고가 단 한 건밖에 없었던 넥스트도어(Nextdoor)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200) 법원과 피고 주정부 측의 전문증인 Tony Allen 사이에 다음의 논의가 있었다.
 법원: 부모의 동의가 적법하다고 가정하고 논의해 보자. 17세 청소년이 부모에게 “제 친구들은 모두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요. 나도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싶으니 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운전면허증을 제공해주고, (연령 인증을 위해) 10분 동안 대기해주시겠어요?”라고 말하고, 부모가 “그래”라고 답했다고 하자. 이때 부모가 동의를 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17세 청소년이 자신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서핑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가?
 Tony Allen: 아닙니다. 이는 (계정생성에 대한 동의는 얻는 것에 관하여) 질문받은 것에 대한 답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회사 정책에 따라 18세 미만 이용자를 어떻게 대우할지, 어떠한 자료를 제공할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원: 그러니까 부모가 여전히 자녀가 접하는 콘텐츠를 감독하고 관여해야 한다는 말인가?
 Tony Allen: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통제는 웹 기반이거나 장치 기반일 수 있고, 맞춤형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통제장치는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과 아닌 것을 상당히 잘 구별하고, 부모에 의해 업데이트될 수도 있습니다.
 201) NetChoice, LLC v. Griffin, 5:23-cv-05105, (W.D. Ark.), 41-47.
 202)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안이 미성년자가 특정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면, 위 법은 콘텐츠와 관계없이 계정생성시 연령확인을 요구하는데, 오히려 영국식 접근법이 미 연방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하는 경우보다 더 제한적이라고 보았다.²⁰³⁾

4) 유타주의 경우

유타주는 가장 먼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 한 주정부 중 하나로, 2023년 매우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유타소셜미디어규제법(Utah Social Media Regulation Act)²⁰⁴⁾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일 이전 넷초이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헌 논란이 일자,²⁰⁵⁾ 법시행을 2024년 10월로 연기하는 한편 2024년 3월 다른 주법을 참고하여 내용 일부를 대체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²⁰⁶⁾

위 개정법은 소셜미디어서비스²⁰⁷⁾를 소유, 운영하는 모든 소셜미디어회사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에 관한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캘리포니아주법과 유사하게, 연령확인 조치(최소 95%의 정확도로 식별 필요) 및 청소년 개인 정보 수집, 이용, 공개 전 부모의 동의를 강제한다.

(ii) 청소년 계정의 경우 최고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값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 계정이 다른 계정이나 검색 엔진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 계정의 콘텐츠 공유, 직접 메시지 전송은 기존부터 연결되어 있던(즉, 지인) 계정에만 가능하다. ③ 청소년 계정의 데이터 수집과 영업이 제한된다. ④ 청소년은 자신의 계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 위와 같은 설정

203) NetChoice, LLC v. Griffin, 5:23-cv-05105, (W.D. Ark.), 47-48.

204) Utah Code §§ 13-63-101 to 701(SB 152, HB 311). 동 법은 소셜미디어플랫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부모 동의 없는 계정 보유, 신규 개설을 금지하고 소셜미디어 회사로 하여금 기존 또는 신규 유타 계정 보유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게시물과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기본 설정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의 특정 시간(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계정 이용이 잠금되며, 청소년 계정에 대한 승인받지 않은 직접 메시지 전달이 차단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아 정보를 수집하거나, 청소년을 특정 대상으로 삼아 광고를 게시하거나, 고의로 중독성 기술(특정 콘텐츠 제안 등)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5) NetChoice LLC v. Reyes et al, 2:2023cv00911.

206) Utah Code §§ 13-71-101 to 401, SB 194; Utah Code §§ 78-B-3-1101 to 1106, HB 464. 이에 따라 넷초이스가 제기한 소송의 심리기일도 연기되었다.

207) 소셜미디어서비스는 공적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주로 소셜미디어회사가 아니라 계정 보유자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를 게시하고, 계정 보유자로 등록된 개인을 다른 이용자나 대중에게 공개하는 프로필을 생성하도록 하며,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계정 보유자로 하여금 이용자들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계정 보유자가 시스템 내에서 연결된 다른 계정 보유자의 목록을 공개하고, 계정 보유자에게 타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문서 보기, 공유 및 협업 서비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검증가능한 부모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두어야 한다.

(iii) 나아가 회사는 청소년계정에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푸시 알림 등 이용자 참여를 연장하도록 유도하는 특정 유형의 기능을 비활성화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재량에 따라 계정 활성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모)감독도구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시간 제한 설정, ② 의무적 휴식 예약, ③ 연결된 계정 목록 포함 이용 정보의 확인, ④ 계정설정 변경시 알림 등.

(iv) 또한 회사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의 시행, 청소년 계정정보의 처리 통지, 청소년의 개인정보 삭제권 보장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밖에 개정법은 청소년 또는 그 부모에게 소셜미디어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발생한 피해에 관해 소송법상 유리한 추정을 부여하되 소셜미디어의 청소년보호조치(자동재생과 같은 이용자 참여 기반 디자인 요소 비활성화, 하루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 새벽시간 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 이용시 부모 동의 수령 등) 시행 여하에 따라 그와 같은 추정 복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다른 주법에서 보기 어려운 특징이다.²⁰⁸⁾

5) 플로리다주의 경우

가) 동향

플로리다주에서는 2024년 3월 25일 청소년온라인보호법(Online Protection for Minors)이 입법되어, 2025년 1월부터 효력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플로리다 주의회에서는 연초 모든 유형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주지사가 부모의 권한이 협소함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후 법안이 수정되어 재차 입법되었다.

나) 입법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입법과정에서는 관련 헌법적 쟁점이 사전 논의된 바 있다.²⁰⁹⁾ 이 중 수정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주정부의 권한을 위주로 살펴본다. (i) 표현의 자유의 경우 정부가 청소년의

208) 한편, 위 법은 소셜미디어회사가 위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게시물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수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부당한 자로부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도 명시하였다.

209) The Florida Senate, Bill Analysis and Fiscal Impact Statement – Social Media Use for Minors(CS/HB 1), The Professional Staff of the Committee on Fiscal Policy, 2024. 2. 13.

정보흐름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²¹⁰⁾ 각 주가 이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²¹¹⁾을 전제로, 위와 같은 법의 합헌성은 필요 이상의 제한인지, 즉 내용중립적인지 여부 및 제한의 정도(정부이익의 크기, 법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제한되는 표현의 정도, 대안의 가능성)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이 내용 기반 규제의 경우 가장 제한적인 수단이 선택되었음이 입증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Reno, Ashcroft 판결), Reno 판결에서의 오킨 대법관(Justice O'Connor)의 부분적 반대 의견과 같이 당시의 기술로는 성인의 접근을 완전히 보장하면서 청소년을 배제하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문제된 연령 확인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었지만, 향후 기술발전으로 합헌적인 연령확인 입법이 가능할 여지를 남겼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전 세대와 달리 현재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연령 확인 관련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고도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많은 기술이 가능해졌다고 보았다.

한편, 연령 확인 조치의 위헌성 판단에 있어서 주가 부모의 금지를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자녀들이 듣거나 말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²¹²⁾ 연령 확인 조치가 이용자 설치 장치 및 필터 또는 제3의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과 같이, 이용자 또는 그 부모가 자신의 정보 접근을 통제하게 하거나 이를 돕는 정책보다 더 제한적이라는 점(필터는 정보의 원천에 대한 보편적 제한과 달리 최후 수신자에 대해 선택적인 제한만을 가함), 필터 이용으로 성인은 스스로를 식별하게 할 필요 없이 표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등도 논의되었다.²¹³⁾

(iii)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정부의 권한에 관해서는 주정부가 외설적인 것으로부터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중대한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수단이 성인의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외설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²¹⁴⁾

다) 입법내용

위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²¹⁵⁾ (i) 위 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²¹⁶⁾이 14세 미만

210) *Erznoznik v. City of Jacksonville*, 422 U.S. 205, 214 (1975).

211) *Brown v. Ent. Merchants Ass'n*, 564 U.S. 786, 794 (2011).

212) *NetChoice, LLC v. Yost*, 2024 WL 104336, *8 (S.D. Ohio Jan. 9, 2024)

213) *NetChoice, LLC v. Griffin*, 2023 WL 5660155, *21 (W.D. Ark. Aug. 31, 2023) 참조.

214) *Ashcroft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42 U.S. at 666 등.

215) *Online Protections for Minors*, 2024 FL H 3 참조.

216) 규제대상인 소셜미디어플랫폼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콘텐츠나 활동을 볼

청소년이 계정을 소유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14세 또는 15세 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하에만 이를 허용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계정의 경우 해당 계정을 폐쇄시켜야 하고, 또 계정 소유자나 그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계정을 폐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는 오하이오주나 아칸소주의 경우와 유사한 규정이다.

플로리다주법의 특이한 점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규율에 있다. (ii) 위 법은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자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의도적으로 게시, 배포하는 경우 18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iii) 해당 기업은 익명의 또는 표준적인 연령확인수단을 사용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자료에 접근하려는 사람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익명의 연령확인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미국 주법에 따라 설립된 제3의 독립된 비정부 기관에서 이를 수행하고, 확인에 사용된 모든 정보는 연령확인 후 삭제되어야 한다.

위 법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¹⁷⁾

6) 뉴욕주의 경우

뉴욕주에서는 2024년 6월 20일 청소년 대상 중독성피드(feed)²¹⁸⁾ 악용 방지법(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SAFE) For Kids Act)과 뉴욕청소년데이터보호법(New York Child Data Protection Act)이 입법되어, 2025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가) 청소년 대상 중독성 피드 악용 방지법(SAFE For Kids Act)²¹⁹⁾

뉴욕에서 뉴욕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독성 피드²²⁰⁾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플랫폼 운영

수 있고, 소정의 기준 하에 일일 활성화 이용자 지표를 충족하며, 이용자 데이터나 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특정 중독성 기능(무한 스크롤, 좋아요-공유-재게시 지표 표시, 라이브스트리밍, 클릭 없이 재생, 이용자 관련 특정 활동이나 이벤트에 대한 푸시 알림 등)이 있는 경우이다.

217) “DeSantis signs controversial bill banning kids under 14 from opening social media accounts”, NBC6 and News Service of Florida, 2024. 3. 25. 수정, 2024. 7. 1. 접속, <https://www.nbcmiami.com/news/local/desantis-signs-controversial-bill-to-restrict-minors-from-social-media/3267582>.

218)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보는 콘텐츠의 목록.

219) The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S.7694A/A.8148A.

220) 여기서 중독성 피드는 온라인 웹사이트, 서비스, 앱 또는 그 구성 요소로서, 이용자에 의해 생성 또는 공유된 복수의 미디어를 특징으로 하여 이용자 또는 그 기기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미디어를 추천,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추천 등에 의해 표시되

자는,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18세 미만인 아님을 확인하고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림을 전송할 수 없고,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품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품질을 낮추거나 가격을 인상해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 따라 뉴욕주 법무장관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을 식별하여 18세 미만 이용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시행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 언어로 부모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정의해야 하고, 플랫폼의 규모/재정/기술적 능력, 연령 확인 기술의 비용과 유효성, 이용자 집단, 보편적 산업 관행, 연령 확인 기술의 이용자 안전/효용/경험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규정은 연령 확인 조치를 함에 있어 정부 발급 신분증에만 의존하지 않거나, 또는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하고, 연령 확인 또는 부모 동의 관련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법준수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위 법은 플랫폼은 영자로 하여금 부모에게 자녀의 데이터나 계정에 대한 특별 접근 권한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는 한편, 공공의 민원, 정보 또는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한다. 위반시 금전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나) 청소년데이터보호법(New Work Child Data Protection Act)²²¹⁾

위 법은 뉴욕에서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모바일 앱, 또는 연결장치(connected device)²²²⁾를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온라인운영자로서, 상대방이 18세 미만임을 알거나 주로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primarily directed to users under 18), 개인 데이터의 목적과 수단을 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²²³⁾

는 미디어가 (i) 이용자 또는 그의 기기와 지속적으로 관련 없는 정보에 기반하고, 이전에 다른 이용자 생성, 공유 미디어와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ii) 이용자 선택에 의한 프라이버시 또는 접근성 설정, 또는 기기의 기술적 정보에만 기반한 경우, (iii) 이용자의 특정 검색 요청에만 응답하여 표시하는 경우, (iv) 동일한 저자, 제작자, 게시자 또는 출처의 연속에서 독점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v) 법률 또는 규정 준수에 필요한 경우, 중독성 피드에서 제외된다. 이용자가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요청한 미디어도 중독성 피드에서 제외된다.

221) New York Child Data Protection Act, S.7695B/A.8149A.

222) 무선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도 한다.

223) 그러나 제3자 운영자(third-party operator. 한국식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는 대상 이용자가 데이터 처리를 위해 고지된 동의를 제공했다는 합리적인 서면 진술(representation)을 받은 경우, 또는 이용자가 18세 미만임을 알거나 주로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 법은 운영자가 13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COPPA²²⁴⁾에 따른 부모 동의 또는 13세부터 17세까지의 경우 명시적 동의를 얻거나, 데이터 처리가 특정 활동에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²²⁵⁾가 아닌 한, 대상 이용자로부터 광범위하게 정의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13세부터 17세까지의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는 개별 거래별로 구별하여 획득되어야 하고, 은폐된 패턴(dark pattern) 같이 대상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obscure, subvert, or impair) 메커니즘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데이터 처리가 엄격히 필요하지 아니하고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제시하여야 하고, 동의 거부권을 가장 눈에 띄게 배치하여야 하며, 동의의 철회가 동의의 제공만큼 용이하여야 한다. 위 법은 운영자가 추가 동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도 제한하는데, 운영자는 기존에 얻은 동의가 만료된 경우 데이터를 계속 처리하기 위해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위 법은 온라인운영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강제한다. (i)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의 매매 또는 이를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ii) 대상 이용자가 18세 미만임을 알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 사실을 제3의 운영자 (third-party operator)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²²⁶⁾ (iii) 제3의 운영자에게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주로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18세 미만 이용자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iv)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 (data processor)와 데이터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의 계약 조건 준수 및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v) 해당 기기의 이용자가 18세 미만임을 나타내는 언어 또는 신호가 있을 경우, 해당 이용자를 보호 대상인 이용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금전적 제재 등이 부과된다.

함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위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224) 앞서 설명한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연방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을 말한다.

225) (i) 대상 이용자가 요청한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또는 유지, (ii) 내부 영업활동(마케팅, 광고, 연구개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3자 제공, 이용자가 이용 중이 아닌 상황에서 이를 유도하는 것 제외), (iii) 이미 존재하거나 의도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오류 식별 및 해결, (iv) 악의적, 사기적, 불법적 활동으로부터의 보호, (v) 법적으로 청구를 받은 경우 대한 조사 또는 방어, (vi) 법령의 준수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 (vii) 보안사고 또는 위협의 탐지 및 대응, (viii)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

226) 다만 COPPA에 따른 동의 등을 얻은 경우는 제외된다.

2. 미국 외 입법례 전반

가. 유럽연합(EU)

이전까지 유럽연합에서는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인터넷 규제에 관하여 주로 개인정보를 위주로 논의되었는데, 핵심은 2018년 시행된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EU) 2016/679)이다.²²⁷⁾ GDPR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직접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²²⁸⁾를 제공할 때에는 부모 등 친권보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회원국이 개별 법률을 통하여 동의를 요하는 연령 기준을 13세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다.²²⁹⁾ 또한 정보처리자(controller)가 가용한 기술을 고려하여 해당 청소년의 친권보유자가 동의를 제공하거나 승인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²³⁰⁾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성의 요건 중 하나로 적법한 이익 추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시하되 정보주체 특히 청소년의 이익이나 기본적 권리가 더 중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²³¹⁾ 정보주체 특히 아동에 대한 정보 통지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서 간결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³²⁾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경우 부당한 지체없이 이를 삭제할 의무를 규정하고,²³³⁾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파일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²³⁴⁾

지난 2024년 2월 17일부터는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²³⁵⁾이 전

227) 그 이전에는 EU 데이터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 Directive 95/46/EC)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228) 일반적으로 보수를 목적으로 원거리에서 서비스 수령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GDPR Art. 4(25), Art. 1(1b) of Directive (EU) 2015/1535).

229) GDPR 제8조 제1항.

230) GDPR 제8조 제2항. 연령 검증 자체를 규정하지는 아니하나,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성에 비례한 친권보유자 확인은 요구한다.

231) GDPR 제6조 제1항 (f).

232) GDPR 제12조 제1항 참조.

233) GDPR 제17조 제1항 (f).

234) GDPR 전문 제71항 참조. 한편, GDPR 전문 제38항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과 그 결과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그 밖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처리지침(codes of conduct) 등에서도 청소년의 보호를 권고한다.

235)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이와

면 시행되어 소셜미디어와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청소년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DSA는 중개서비스에 대한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5개 장(chapter) 93개조(article)에 걸쳐 규제대상인 EU이용자를 상대로 한(사업 소재지 불문) 정보사회서비스²³⁶⁾ 제공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자의 감독과 법집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강력한 권한(매출에 비례한 벌금, 서비스 중지명령 등)을 부여하고 있다. DSA는 중개서비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및 온라인검색엔진의 제공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의무를 가중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²³⁷⁾ 청소년의 보호에 관해서는 해당 서비스에서 높은 수준의 청소년 프라이버시, 안전, 보안 보장에 필요한 비례적 조치,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인지한 경우(aware of reasonable certainty)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맞춤형 광고의 금지, 이용자의 성년 여부 판단을 위한 추가 개인정보 처리 의무화 금지 등을 규정한다.²³⁸⁾

나아가 최근 EU 의회는 EU 집행위원회에 EU가 중독성이 있는 디지털 서비스 디자인을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²³⁹⁾ 인터

함께 2024년 3월 7일부터는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Regulation (EU) 2022/19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September 2022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and amending Directives (EU) 2019/1937 and (EU) 2020/1828(Digital Markets Act))도 시행되었는데, 동법은 주로 거대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시장경쟁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되는 내용으로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게이트키퍼(gate keeper)의 핵심 플랫폼 외부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막는 것(DMA 제5조 제2항 이하) 등이 있겠으나, 이는 성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236) 중개서비스(intermediary service)로서, 단순전달(mere conduit), 캐싱(caching), 호스팅(hosting), 그리고 호스팅의 일부로서 온라인플랫폼과 온라인검색엔진이 모두 포함된다.

237) ① 모든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콘텐츠 대응의무, 투명성 보고의무 등을 부담하고(DSA 제8조, 제10조, 제15조 참조), ②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더하여 불법콘텐츠 신고 및 조치 제도 마련 의무, 콘텐츠 삭제 또는 계정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유 통지 의무, 범죄혐의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한다(DSA 제16조 내지 제18조 참조). ③ 온라인플랫폼은 더 나아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내부 불만처리시스템 마련,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접근 정보 제공,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 제공 이용자 제한 등 오남용에 대한 조치와 보호, 추가적인 투명성 보고, 특정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와 구성의 금지, 온라인플랫폼 광고(명확하고 간결하며 모호하지 않은 광고 표시, 상업적 콘텐츠 신고기능 제공, 프로파일링 광고 노출 금지),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매개변수 명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DSA 제20조 내지 제27조 참조). ④ 특히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은 플랫폼에서의 위험평가 및 이를 완화할 의무, 독립 감사의무, 추천 시스템으로 프로파일링 기반이 아닌 옵션 제공, 추가적인 온라인 광고 투명성, 규정 준수 등에 필요한 데이터 열람, 공유 등의 의무 등을 부담한다.

238) DSA 제28조 참조.

239) Addictive design of online services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EU single market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2 December 2023 on addictive design of online services and consumer

넷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중독성 또는 조작성이 있는 것으로 제안된 다양한 관행(무한 스크롤²⁴⁰), 비디오 자동 재생, 개인화된 권장 사항, 버튼과 같은 푸시 알림²⁴¹) 등을 나열하였는데, 이는 DSA 제25조 제1항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구성 또는 운영의무, 즉 특정 선택을 더욱 부각시키거나, 팝업(pop-up) 표시 등의 방식으로 이미 선택한 이용자에게 반복하여 선택을 요청하거나, 서비스 구독보다 해지를 어렵게 하는 경우 등 기만하거나 조종, 그 밖에 자유롭게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능력을 실질적으로 왜곡, 저해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구성, 운영해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보호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연합의 개별 국가 수준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23년 6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15세 미만 사용자 부모의 의무적 동의를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향후 EU 집행위원회의 EU법 준수 여부에 관한 검토결과에 따라 발효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²⁴² 네덜란드에서도 2024년 1월부터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었다.²⁴³

나. 영국

종래 영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²⁴⁴과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연령적합설계지침(Age Appropriate Design Code: a code of practice for online services: AADC)에 의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를 시도하였다. 영국 개인정보 보호법

protection in the EU single market (2023/2043(INI)).

240) 이용자가 페이지 하단에 도달하였을 때 콘텐츠를 계속 로드하도록 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241) 팝업으로 별도 표시되는 짧은 메시지를 말한다.

242) France requires parental consent for under-15s on social media, Le Monde, 2023. 6. 29. 수정, 2024. 6. 1. 접속,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3/06/29/france-requires-parental-consent-for-under-15s-on-social-media_6039514_7.html. 본래 13세 미만은 이용이 불가해야 하나 실제 이용현황을 보면 상당수의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기존의 법으로는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43) Dutch school phone ban to come into force next month, Euronews, 2023. 12. 16. 수정, 2024. 6. 1. 접속, <https://www.euronews.com/2023/12/16/dutch-school-phone-ban-to-come-into-force-next-month>. 학생들의 사회화, 주의력 산만 해소, 학교폭력 감소 등을 위해 도입된 조치이다.

244) 2018 chapter 12. 이와 함께 브렉시트 이후 EU GDPR을 국내법화한 UK GDPR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한다. EU GDPR과 UK GDPR의 내용은 사실상 대동소이하다(UK GDPR Article 8, 12(1), 25, Recital 38, 58 참조).

은 제9절에서 GDPR 제8조 제1항을 수정하여 (16세가 아닌) 13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모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부모 등이 동의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함에 있어 가용한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합당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제123절 제1조는 (개인)정보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으로 하여금 “청소년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관련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²⁴⁵⁾의 적합한 연령 적합 설계를 포함하는 실무지침(code of practice)을 준비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AADC가 제정되었다. AADC는 청소년이 온라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회사로 하여금 비례적인 데이터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청소년 접근가능성이 있는”(즉,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²⁴⁶⁾ 정보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연령 및 발달 단계를 0-5(유아기), 6-9(초등기), 10-12(전환기), 13-15(10대 초반), 16-17세(예비 성인기)로 나누어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 중립적 설계 원칙 및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15가지 핵심 표준사항을 제시하였다.²⁴⁷⁾

245)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전자적 수단으로, 원격으로, 그리고 보수를 받고 제공되는 서비스 (any service normally provided for remuneration, at a distance, by electronic means and at the individual request of a recipient of services)를 말한다.

246) 청소년이 서비스의 성격과 내용상 이용을 염두에 둘지 여부와 이용자가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방식(연령 제한 조치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연결 기반 장난감 및 장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게임, 뉴스 및 교육 웹사이트, 기타 인터넷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이 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 제공 서비스, 영업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컨대 온라인 예약 서비스), 전통적인 음성전화 서비스, 일반방송서비스(TV, 라디오) 청소년 대상 온라인 상담, 예방 서비스 등은 제외한다.

247) 데이터 처리에서 (i)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 보장, (ii) 데이터보호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 수행, (iii) 다양한 연령과 발달에 따른 연령적합 설계의 적용 보장, (iv) 적절한 정도의 투명성 제공(간결하고 눈에 띄며 명확한 언어로 설명 제공, 관련 통지 및 관련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 권장), (v) 데이터의 유해한 이용 방지(광고 등), (vi) 자체 정책 및 커뮤니티 규정 준수, (vii) 가장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본값 설정, (viii) 데이터 처리 최소화(처리목적 이상의 능동적이고 고의적인 개인 데이터 수집, 보유 금지 및 청소년의 선택권 보장), (ix) 제3자 데이터 공유 제한(기업이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이유를 밝힐 수 있는 경우에만 데이터 공유 가능. 수신자 역시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실사 수행 필요), (x) 위치정보에 관한 강화된 보호(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 옵션 비활성화 및 활성화시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표시, 특정 목적을 위한 처리 완료 후 역시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 (xi) 자녀보호기능 관련 통지 제공(자녀보호기능 제공시 연령에 맞는 통제 정보의 제공 및 부모 또는 그 보호자의 모니터링시 이 사실을 청소년에게 명확히 표시), (xii) 필수적이지 않는 한 프로파일링 제한, (xiii) 넛지(nudge. 선택유도) 기술 회피, (xiv) 연결 기반 장난감 및 장치의 관련 규율 준수 보장(청소년 접근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령 맞춤형 구성 및 관련 옵션 활성화 등), (xv)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한 온라인 도구 제공 등이

이후 4년여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2023년 10월 입법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²⁴⁸⁾에 의해 12개 편(part) 241개절(Section)의 방대한 분량에 걸쳐, 아동의 보호 등 인터넷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 규율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법은 이용자 간 서비스 등 규제대상인 서비스 제공자(다만 이용자 기반 규모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차등적으로 의무 부과)²⁴⁹⁾에게 불법 콘텐츠 및 활동²⁵⁰⁾ 및 18세 미만 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활동²⁵¹⁾ 으로부터 비롯되는 위험식별/감소/관리 등 안전한 설계, 운영의무를 부과한다.²⁵²⁾ 한편,

이에 해당한다.

248) An Act to make provision for and in connection with the regulation by OFCOM of certain internet services; for and in connection with communications offences; and for connected purposes. 2023 chapter 50.

249) 영국에 상당수의 이용자를 보유하거나 영국 이용자를 목표 시장 중 하나(또는 유일한 목표)로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서비스가 영국과 연결(link)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서비스가 영국에서 이용될 수 있거나 특정 요소에 의해 영국 내 개인들에게 상당한 해악의 실질적인 위험(a material risk of significant harm)을 발생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같이 해당 서비스가 영국에서 개인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위 서비스 외의 인터넷 서비스로서, 영국과 연결되고 규제받는 제공자의 음란물 콘텐츠가 서비스에 게시, 표시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Online Safety Act 2023, s 4(2), (4), (5), (6), s 80(2) 등 참조). 그러나 이메일, SMS 및 MMS 메시지, 1대1 실시간 음성 통신 및 관련 식별 콘텐츠, 또는 공급자 콘텐츠에 대한 댓글(comment)과 리뷰(review) 등 이용자 직접 생성 또는 업로드, 공유 콘텐츠로서 음란한 내용이 게시,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Online Safety Act 2023, s 5(2), 55(2), (3) 참조).

250) 테러리즘, 아동 성적 착취 및 남용, 별도 열거된 범위반 관련 콘텐츠 등(Online Safety Act 2023, s 59).

251) (i) 음란물, (ii) 자살 또는 의도적인 자해 및 섭식 장애 또는 관련 행동의 장려, 조장, 수단 제공(청소년에게 유해한 주요 우선 콘텐츠), (3)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성향, 장애, 성전환 등에 관한 남용 또는 혐오 조장 관련 콘텐츠(청소년에게 유해한 우선 콘텐츠)를 말한다(Online Safety Act 2023, s 60-62).

252) 유형에 따라 의무 수준에 차이가 있으나, 불법 콘텐츠 및 활동과 아동 유해콘텐츠 및 활동의 적절하고 충분한 위험평가 의무(Online Safety Act 2023, s 9, s 11), 관련 이용자 보호 의무(콘텐츠 차단 및 방지, 피해 위험 최소화, 매우 효과적인 연령확인, 추정, 관련 절차/기능/약관/정책 등의 설계 및 운영 등. Online Safety Act 2023, s 10(2)-(8), s 12(2)-(13); s 10(9), 12(14)), 콘텐츠 신고 및 이용자 불복절차 구비 의무(Online Safety Act 2023, s 20, 21; s 71, 72 (1), (2)); 특히 해당 사업자가 특정 유형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접속에 신원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성인 이용자에게 확인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함. Online Safety Act 2023, s 64), 콘텐츠 제어 등 관련 권한 평가 및 부여 의무(Online Safety Act 2023, s 14, 15), 민주주의적 중요성이 높은 경우 또는 (전문적인) 언론 출판업자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할 것이 요구되며(이는 임의로 서비스 내용을 구분하여 언론관련성이 높은 콘텐츠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서비스 이용자의 계정중지와 같이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특별한 보호의무(Online Safety Act 2023, s 17, 18, 19), 아동의 성적 착취 및 남용, 콘텐츠를 신고의무(Online Safety Act 2023, s 66, 67),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의무(Online Safety Act 2023, s 22(2), (3)), 서비스 관련 기록 보관 및 검토의무(Online Safety Act 2023, s 23; Online Safety Act 2023, s 22(4), (6), (7), s 23 (9), (10)),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Online Safety Act 2023, s 77), 특정 음란 콘텐츠 제공시 신원확인에 관한 법적 의무(Online Safety Act 2023, s 79 이하) 등을 부담한다.

규제기관인 통신청(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에도 보다 강력한 기능과 권한(이용자 권한 평가 및 청소년유해 콘텐츠 예시 등에 관한 실무지침 발간,²⁵³⁾ 청소년유해 콘텐츠 검토, 보고²⁵⁴⁾ 및 위험성평가 감독,²⁵⁵⁾ 특정 유형 사업자 명단 제시²⁵⁶⁾ 및 감독 및 정보 요구, 검사 및 감사,²⁵⁷⁾ 유해콘텐츠 제거 통지 및 요청,²⁵⁸⁾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²⁵⁹⁾ 등)을 부여하고 통신범죄(communications offences)²⁶⁰⁾ 등을 새로이 규율하였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익명화된 표현에까지 규제가 확대될 것이 우려되어²⁶¹⁾ 구체적인 연령확인조치까지 법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았다.²⁶²⁾ 참고로 위 영국법과 미국 KOSA

위험평가에서는 이용자 기반(the user base), 알고리즘에 따른 콘텐츠의 전파 등 이용자 접근가능성, 피해 위험 수준 등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특히 아동 관련 위험평가의 경우 서로 다른 연령 그룹의 아동의 수 및 피해의 성격이나 특정한 특성이나 그룹의 구성원인 아동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피해 위험 수준, 성인의 아동 이용자 검색이나 연락 기능의 가능성, 아동의 서비스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나 특징(예컨대 자동 재생 기능), 식별 위험 증감 수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Online Safety Act 2023, s 7(3), (4), (5), s 11 (2), (3), (4), (5), (6); Online Safety Act 2023, s 35-37, s 38 등 참조).

253) Online Safety Act 2023, s 41-54. 실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안적 조치(alternative measures)의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Online Safety Act 2023, s 49-51).

254) Online Safety Act 2023, s 63.

255) Online Safety Act 2023, s 98 이하.

256) Online Safety Act 2023, s 94 이하

257) Online Safety Act 2023, s 100 이하.

258) Online Safety Act 2023, s 121 이하.

259) Online Safety Act 2023, s 165 이하

260) 상대방에게 사소하지 않은 심리적, 신체적 해악을 유발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false communications offence), 상대방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해악의 위협을 가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threatening communications offence), 상대방에게 전자적 수단으로 섹팜 이미지를 전송하여 뇌전증 등을 일으키는 행위(offences of sending or showing flashing images), 상대방에게 심각한 자해를 조장하거나 돕는 행위(offence of encouraging or assisting serious self-harm),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생식기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sending etc photograph or film of genitals), 상대방의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공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sharing or threatening to share intimate photograph or film) 등(Online Safety Act 2023, s 179 이하 참조).

261) The UK's Online Safety Bill Undermines Encryption and Anonymity, Center for Data Innovation, 2022. 5. 26. 수정, 2024. 6. 1. 접속, <https://datainnovation.org/2022/05/the-uks-online-safety-bill-undermines-encryption-and-anonymity>; Online Safety Bill, Public Bill Committee, 2022. 6. 8. 수정, 2024. 6. 1. 접속,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5803/cmpublic/OnlineSafetyBill/memo/OSB43.htm>.

262) Guidance - Online Safety Act: explainer,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2024. 5. 8. 수정, 2024. 6. 1. 접속,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nline-safety-act-explainer/online-safety-act-explainer>. 통신청은 연령확인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기는 하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맡겨져 있다. Implementing the Online Safety Act: Protecting children from online pornography, Ofcom, 2023. 12. 5. 수정, 2024. 6. 1. 접속, <https://www.ofcom.org.uk/news-centre/2023/implementing-the-online-safety-act-protecting-children>.

(아동온라인안전법)상의 주의의무를 비교하여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한 견해도 있다.²⁶³⁾ 첫째, 영국법은 사회적 해악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위험 평가를 통해 해악을 식별하도록 맡긴다. 둘째, 영국법은 KOSA보다 서비스 설계 또는 운영에 관하여 가능한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규정한다. 셋째, 영국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가 현저히 다른 국가에서 논의, 통과된 것으로 미국에서의 해석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위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보호를 의도한 온라인안전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까지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스마트폰의 구매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⁶⁴⁾ 그러나 이러한 규제 시도는 이미 청소년들의 생활 속에 소셜미디어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허황 되면서도 그 긍정적 작용(사회성 향상, 정체성 탐구, 세상 경험)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고, 청소년의 접근을 음성화할 뿐만 아니라 16세에 충분한 경험 없이 순진한 상태로 갑자기 온라인 사회에 노출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²⁶⁵⁾

다. 일본

일본에서는 2017년 개정된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²⁶⁶⁾을 근거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등 인터넷상의 활

263)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CSLAW '24)*, ACM, 2024, 90.

264) UK Set to Announce Social Media Prohibition Plans for Under-16s Within Weeks, TLR The Law Reporters, 2024. 4. 15. 수정, 2024. 4. 25. 접속, <https://thelawreporters.com/uk-set-to-announce-social-media-prohibition-plans-for-under-16s-within-weeks>. 현재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스마트폰 구매 계약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종량제폰의 경우 그 동의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265) What to do about Sunak's silly plan to curb social media for under-16s? Highlight and delete, The Guardian, 2023. 12. 16. 수정, 2024. 4. 25. 접속,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3/dec/16/rishi-sunak-social-media-encryption-teenager-ban>.

266) 헤이세이 20년(서기 2008년) 법률 제79호(平成二十年法律第七十九号). 약칭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青少年インターネット環境整備法)”.

청소년에의 성적 접근에 관해서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이, 아동 성매매, 포르노에 관해서는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대한 보호를 시도한다. 동법은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青少年有害情報)²⁶⁷⁾가 다수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²⁶⁸⁾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능력의 습득에 필요한 조치 및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フィルタリングソフトウェア)²⁶⁹⁾의 성능 향상과 이용의 보급 등 청소년이 인터넷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열람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율한다. 그 중 핵심은 사업자 측²⁷⁰⁾에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정보 열람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로서 청소년확인 의무, 설명 의무,²⁷¹⁾ (보호자의 반대가 없는 한)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이용 조건부 서비스 제공 의무,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유효화 조치 실시 의무 등을 부과하는 부분이다.²⁷²⁾ 의무 위반시 벌칙 규정은 별도로 존재

등에 관한 법률(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規制及び処罰並びに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이 적용된다. 지방공공단체에서 청소년보호육성조례(青少年保護育成条例) 등을 통해 18세 미만자로 하여금 CERO(일본의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서 정한 성인 전용 앱(app)의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특정 전자 메일 전송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등도 관련될 수 있으나, 연구보고서의 주제와 직접 관련되지는 아니므로 상세히 다루지 아니한다.

- 267) 여기서 청소년유해정보란 인터넷을 이용해 공중의 열람(시청을 포함)에 제공되고 있는 정보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①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요청, 중개, 유인하거나 자살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유인하는 정보, ② 사람의 성행위 또는 성기 등의 외설적인 묘사 기타 현저하게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정보, ③ 살인, 처형, 학대 등의 장면의 처참한 묘사 기타 현저하게 잔혹한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일본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제2조 제3항, 제4항 각 호 참조).
- 268) 동법은 그 기본이념으로 ① 청소년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상 유통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이용함과 동시에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 ② 관련 사업자의 청소년유해정보 열람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③ 자유로운 표현 활동의 중요성 및 다양한 주체가 세계를 향해 다양한 표현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을 배려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민간에서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존중할 것을 제시한다(일본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제3조 참조).
- 269) 인터넷을 통해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근거해 선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일본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제2조 제9항).
- 270)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역무 제공 사업자(携帯電話インターネット接続役務提供事業者)”, “인터넷 접속역무 제공 사업자(インターネット接続役務提供事業者)”, “인터넷 접속기기 제조 사업자(インターネット接続機器の製造事業者)”, “인터넷 접속기기 동작 직접 제어 기능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インターネット接続機器の動作を直接制御する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を開発する事業者)”,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青少年有害情報フィルタリングソフトウェア開発事業者)”, “특정 서버 관리자(特定サーバー管理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 접속기기 동작 직접 제어 기능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특정 서버 관리자 등은 노력의무를 부담한다.
- 271)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으로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정보를 열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와, 필터링 서비스 이용 및 필터링 유효화조치의 필요성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위 법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와 관계 사업자의 책임은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고,²⁷³⁾ 그 밖에 청소년의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발 활동의 추진 등을 규정한다.²⁷⁴⁾ 그러나 소셜미디어 자체에 대한 규율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이용규약을 근거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방법(연령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와 동일하다.

일본의 경우 적어도 법률 차원에서 소셜미디어에서의 청소년의 보호수준이 높지 않고, 청소년유해정보의 발신 억제 및 만남사이트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목적의 접근 행위 처벌을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위 법이 특히 필터링 이용에 관하여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 의무 제공 사업자” 등에 관해서만 규율할 뿐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이나 청소년의 성인과의 접촉에 의한 성적 착취 등에 관해서만 규율할 뿐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의한 정신적 악영향 등에 관해서는 온전히 이용자 측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 등이 한 계로 지적된 바 있다.²⁷⁵⁾

272) 일본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제13조 내지 제23조.

273) 일본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제5조, 제6조.

274) 일본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제9조 내지 제12조.

275) 曾我部真裕, 「モバイル・インターネットにおける青少年保護対策の新しい動きについて, 情報法制研究 1 (0), 2017, 86-87; 「SNSは危険な製品」米で追及強まる 若者の保護対策, 日本は?», コメントプラス(曾我部真裕, 2024. 2. 2. 투고), 朝日新聞デジタル, 2024. 2. 1. 수정, 2024. 3. 1. 접속,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S215R4RS21UHBI00M.html?_requesturl=articles%2FASS215R4RS21UHBI00M.html&pn=5 등 참조. 다만 그 자율규제 중심의 규율이 지속된 배경으로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진국 중에서도 범죄의 발생률이 낮다는 점, 청소년의 행방불명자 수 등이 미국에 비해 적다는 점 등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IV.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의 헌법적 한계

1. 쟁점의 정리

외국에서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여 각종 규제입법을 시도하거나 실제 입법하고 있고, 특히 오늘날 플랫폼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각 주정부가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제한하려는 경우부터 간접적으로 소셜미디어로 하여금 위해성 내지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까지 다양한 법적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선의’의 시도는 대부분 헌법위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그 시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편이므로 언제든지 외국의 ‘선진적인’ 입법례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 등에 비해 국가의 후견 및 규제 중심적 접근을 비교적 쉽게 간과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전 게임물 셧다운제 논란에서 본 바와 같이 비단 소셜미디어 관련 입법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청소년규제입법의 도입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외국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헌법상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에 관해서도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셜미디어에 관한 청소년규제입법이 우리 헌법해석상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문제되는 헌법상 기본권, 국가의 의무

가. 보호대상으로서 청소년

소셜미디어의 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 역시 기본권주체로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향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나아가 구체적인 연령별

기본권행사능력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청소년이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기본권 행사를 보조, 지원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체로 같은 의견일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 하에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청소년보호입법은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 또는 성인과 상호작용하는 세계에서 때로는 그를 보조하면서도 성인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수행하게 되는데, 다만 그 결과 오히려 청소년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보호입법은 청소년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 등의 교육권을 대신하여 실현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이러한 권리에도 헌법적 근거를 둔다.²⁷⁶⁾

한편, 헌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데, 청소년 역시 그 특유의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성으로 인하여 보건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도 의문이 없다.

나. 기본권주체로서의 청소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은 국가의 보호대상임과 동시에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즉 청소년의 기본권은 보호대상과 기본권주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효력을 발하게 되고, 관련 입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양자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이하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이용과 관련된 청소년규제입법이 제한할 수 있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살펴본다.

우선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 제한이 문제된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특유의 접근용이성과 전파성으로 기성 언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청소년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내면적 의사를 외부에 표현함으로써 인격을 발현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게 된다.²⁷⁷⁾ 소

276) 물론 이와 반대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부모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모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이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277) 표현의 자유의 기능에 관한 서술로, 이효원, 대한민국 헌법강의, 박영사, 2024, 368면 참조.

설미디어의 이용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언론매체에 대한 액세스권 모두와 관련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접근가능하여 청소년도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매우 드문 매체일 뿐만 아니라, 저질의 정보부터 전문적 논의까지 인간사고로 표현가능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해당되는데,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위시한 인터넷의 기능과 정보전달력을 생각해보면, 이는 알 권리의 매우 유력하고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해당한다. 소셜미디어는 참정권이 여러 측면에서 제한되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그의 주권적 의사를 형성하여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극소수의 유효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제한은, 여러 미국 주법원의 판시와 같이 소셜미디어 사이트, 앱, 게임 등 인간의 사상과 표현 총체를 청소년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셋다운제 판결 등에서도 청소년보호라는 명목 하에 인터넷게임 일체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 측면에서만 보았다는 점에서 반성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우리 헌법해석상 소셜미디어의 이용 제한은 미국 등의 경우와 달리 표현의 자유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데, 그 헌법적 한계를 논함에 있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내지 직간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여러 기본권의 제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⁷⁸⁾ 다른 언론매체 제한과 달리 표현의 자유만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권 제한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본질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 자체와 구별하기 어려운데,²⁷⁹⁾ 이는 관련 규제입법이 곧 타인에 대한 의사표현 및 수령뿐만 아니라 사실상 온라인상의 모든 사회적 행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표현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한다. 소셜미디어는 대중은 때로는 교육적 기능을, 때로는 게임과 같이 일반 놀이와 같은 기능을, 때로는 소비와 같이 경제생활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가 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소셜미디어 매체가 일률적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에의 접근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에는 당초 입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기본권제한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

278) 이 중 어떠한 행위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79) 헌법재판소는 일단은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632.

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규제입법의 유형에 따라서는 헌법 제10조 등에 근거한 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거나, 비슷한 양상으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제18조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문제의 초점은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 또는 국가에 의해 처리되는 부분에 있고, 비단 사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도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대부분 강제적 연령확인조치의 위헌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규제입법이 연령확인을 강제할 경우 이를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이 다시 표현의 자유나 다른 기본권의 행사를 억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국가의 경우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강제적 연령확인, 또는 연령 미확인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를 기준으로 “표현내용”의 제한적 접근 허용과 결부되었을 때 헌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치부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물론 많은 경우 국가는 청소년의 경우 미성숙성을 전제로 소셜미디어 업체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둬으로써 오히려 청소년의 기본권을 실현하려 하겠지만, 때로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에 따라 반대급부를 얻는 결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법적으로 소셜미디어 업체로 하여금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업체가 청소년에게 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내심의 의향을 반영한 콘텐츠를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소셜미디어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늘리는(반대로 그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양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기본권주체로서의 청소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으로서 대다수 청소년이 받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예컨대 성소수자,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이 소수자로서 보다 기본권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상황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시 셋다운제 사건을 돌이켜보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새벽시간에는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학생은 일과시간에는 학교공부에, 야간시간에는 수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형적이고 완고하며, 다분히 후견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셋다운제를 비교적 쉽게 정당화한 감이 있는데, 어떠한 소수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야간시간이 아니면 인터넷게임(특히나 유해한 인터넷게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을 즐기거나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할 기회를 가질 기회가 없었을 수 있다. 만약 소셜미디어 규제입법이 도입된다면 섣다른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기본권제한 정도가 보다 클 가능성이 있고, 통상 유해성이 다수의 정치논리에 의해 규정됨을 고려하면 소수자에게 보다 가혹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용자의 기본권 항목에서 논의할 것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도 익명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우려도 있음은 물론이다.

다. 다른 기본권주체들

1) 부모

소셜미디어 청소년보호입법은 청소년과 국가 외에도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선 부모²⁸⁰⁾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²⁸¹⁾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므로 공교육 밖을 포함하여 교육의 전 영역에 걸쳐서 미성년 자녀의 교육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²⁸²⁾

이때 국가가 입법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시도함에 있어 단순히 부모의 결정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그 의사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모의 기본권 제한도 문제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물론 하급심에서도 수차례 확인되는 부분인데,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선제적으로 부모의 의사를 추단하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국가후견주의적인 것으로서 기본권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지(기기를 사주지 않을지,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쓸지, 국가가 마련해준 수단을 ‘선택’하여 이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아닌 부모가 그의 기본권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규제입법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80) 이하에서는 부모의 개념에 부모와 같이 청소년의 교육 등을 위해 기본권을 갖는 법정대리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281) 현재 2000. 4. 27. 98헌가16, 판례집 12-1, 427, 446-448 참조.

282)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686면.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은, 과연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하여 부모의 의사를 추단하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항상 입법목적 실현에 유효하거나, 나아가 침해최소적이냐는 것이다. 이는 미국 주법원이 만에 하나 소셜미디어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주점에 비유하더라도, 부모가 최초로 단 한 번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키는 것을 허용하면 이후 모든 청소년유해성이 사라지고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원활하게 행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논증한 것에서 명쾌하게 드러난다. 후술할 미국 심리학회에서 권고하는 사항 중 하나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앞서 살펴본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성 등을 생각해보면, 과연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출되는 여러 청소년 문제가 정말로 국가의 전면적 개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덜 기본권제한적이면서도 대체적인 방안에 의해야 하는 것인지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은 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자녀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청소년 사이에 기본권이 보다 강하게 대립하여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유럽연합의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부분으로, 주입법안 중에는 부모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지하거나, 완전히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관리감독도구를 통제하거나 사용시간을 제어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알림을 주도록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었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영국이나 유럽연합의 입법 역시 청소년의 권리를 중시하여 부모의 과도한 개입 그 자체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2) 소셜미디어 업체

소셜미디어 입법은 소셜미디어 업체의 기본권 역시 제한한다. 주로 언론의 기능에 충실한 기성 언론매체나, 영리 목적으로 상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와 달리, 소셜미디어가 양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특히 영업의 자유²⁸³⁾가 함께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283)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판례집 10-2, 621. 기업 설립과 경영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도 직업(선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도 소셜미디어를 특징짓는 기능과 특징이 그 자체로 의사소통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셜미디어 업체의 경우 전통매체와 비교할 때 그 상업성과 정보매개자로서의 성질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셜미디어별로 기능과 특징으로서 표현방법이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됨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²⁸⁴⁾ 이러한 논의는 우리 헌법해석상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의 경우 사실상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²⁸⁵⁾과, 만약 소셜미디어 업체가 기본권제한성을 다룰 경우 표현의 자유가 문제된다면 후술할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크다.

한편, 소셜미디어가 표현의 자유의 주체이면서 영업의 자유의 주체라는 점, 그리고 소셜미디어 규제에 여러 기본권주체의 요구가 다방향으로 투영된다는 점은 그 규제 자체에 난해함을 더하고, 헌법적 한계 설정도 어렵게 만든다. 소셜미디어가 표현의 자유의 주체라는 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가급적 그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과연 소셜미디어 업체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졌는데, *NetChoice v. Yost* 사건에서 하급심은 “이용자와 콘텐츠를 선별하여 플랫폼이 추구하는 커뮤니티 유형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에 따라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편집 재량을 행사” 자체를 표현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점에서 소셜미디어의 규제는 그 구체적 방향성에 따라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성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실명제 사건 이전에 시행되고 있던 규제입법, 국내 이용자들을 국외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시켰다는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다. 소셜미디어 규제는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들의 기본권에도 영향을 주고, 청소년 규제는 앞서 보호하고자 했던 청소년 이용자들의 기본권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더 빠르게 영향을

백)의 자유에 포함된다.

284) 소셜미디어는 플랫폼으로서 정보의 매개에 주력을 하므로 편집, 발행인이 스스로 정보확산의 주체가 되는 신문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나, 결국 편집과 유사하게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예컨대, 콘텐츠의 나열 방식, 구분 등)으로 자율적으로 전반적인 표현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므로 이에 빗대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신문사업자의 본유적이고 고유한 편집권에 관해 판시한 경우로,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판례집 18-1하, 337, 410-411 참조.

285) 우리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견해로, 표현의 자유의 기능에 관한 서술로, 이효원, 대한민국 헌법강의, 박영사, 2024, 380면.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반면 소셜미디어가 영업의 자유의 주체라는 점은, 물론 이 경우 영업의 자유 자체가 소셜미디어업체의 기본권이지만, 사회와의 연관성이 클수록(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측면에서는 기성언론이나 다른 기업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규제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여지도 있다. 특히 유럽 쪽에서는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플랫폼을 단순히 전달자 내지 도관 이상의 역할로 보아 각종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는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와 책임에는 청소년의 보호 역시 포함되는데, 당연하게도 다양한 계층과 상황의 청소년 스스로 원하는 바와, 그 부모나 보호자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 실제 정책 시행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보다 덜 기본권제한적인 규제의 실현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영업의 자유 제한이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본래의 의도 이상으로 제한, 억압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업체의 기본권이 문제되는 또다른 지점은,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업체로 하여금 실현시킬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그나마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자인 청소년과 그 부모의 기본권을 보조하는 내용, 예컨대 소셜미디어에서 법적, 사실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에 대응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한다는 내용 정도이다.²⁸⁶⁾ 미국의 연방 입법안이나 주입법을 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이에 관해서 업체 측에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 입법은 이미 ‘청소년유해성’에 관한 법적 확신을 갖고 비교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청소년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있고, 국내 소셜미디어업체(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업체 포함) 역시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의 콘텐츠(예컨대 청소년유해성과 관련없는 명예훼손적인 게시물)도 배제하고 있지만, 마약, 주류, 담배와 같은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청소년유해성이 무엇인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업체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헌법적 확신을 갖기 쉽지 않다. 이러한 모호한 규제영역은 자연스레 소셜미디어업체의 기본권행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위축은 그대로 청소년과 성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도 구체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286) 이조차도 오히려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독과점화를 가속시킬 우려는 있다.

3) 다른 이용자

한편,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청소년보호입법은, 만약 연령확인 조치 등을 수반할 경우, 예컨대 특정 입법이 소셜미디어 이용시 반드시 성인 연령을 인증할 것을 강제하거나 연령 인증 없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만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청소년이 아닌 다른 성인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이는 통상 미국식으로는 ‘익명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의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이 커진 점, 미국과 달리 우리는 이러한 매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기본권 역시 본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성인 이용자도 익명으로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할 권리 전반이 제한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청소년규제입법을 강행하기 위하여 성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역시 제한된다.

이와 같은 다른 이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 등에서 간접적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 보호법 조항이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의견은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된 성인의 기본권 위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²⁸⁷⁾ 반면 해당 사건에서 법정의견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 자체에 의해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정보제공이나 수집에 동의한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된다고 판시하여,²⁸⁸⁾ 사건으로 익명표현의 자유에 다소 무심한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미국, 유럽 연합, 영국, 일본 등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받아들인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 특히 익명의 자유에 관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 및 근래 주요 공공기관²⁸⁹⁾이나 플랫폼업체,²⁹⁰⁾ 통신사업자²⁹¹⁾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논란을 보면 과연 이러한 판시사항

287) 헌재 2015. 3. 26. 2013헌마354, 판례집 27-1상, 312, 323.

288) 헌재 2015. 3. 26. 2013헌마354, 판례집 27-1상, 312, 319-321.

289) 대법, 해킹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830명 특정... 유출 사실 개별 통보, 법률신문, 2024. 5. 22. 수정, 2024. 7. 1. 접속, <https://www.lawtimes.co.kr/news/198472>.

290)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151억...국내기업 역대 최다액, 조선일보, 2024. 5. 23. 수정, 2024. 7. 1. 접속,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23/D53KZBWHLJDMLKITXGI4T54O3Q.

291) KT망 '악성코드' 논란 일파만파... KT "그리드 프로그램 대응 차원... 해킹 아냐", G글로벌경제신문,

이 결과적으로도 타당한 것이었는지, 후견주의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과 정부개입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기본권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다소 안이한 접근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은 사실이다.

익명의 자유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또 한 가지 놓쳐온 사실은, 익명의 자유가 모범적이고 평균적이며 건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대적으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적은 편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행정적으로 타국에 비해 잘 갖춰진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고, 국민들이 비교적 균질적인 생활양상을 보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인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발생한 논란을 살펴보면, 강제적 본인확인제를 통해 보다 불이익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우려하기도 한다. 국민 중에서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물론, (미국인 중에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18%의 사람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람, 본인확인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국민처럼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또는 원천적으로 본인확인이 있을 경우 퇴거와 같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등이 그와 같다. 이는 본인확인이 되지 않으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의 기본값 설정으로 정보가 노출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다소 강제성이 덜하더라도 역시 같은 문제로 나타난다.

3. 심사기준

가. 명확성원칙

미국의 여러 사례에서 사실상 소셜미디어 규제입법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규제대상인 소셜미디어 업체나 그 업체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자의적 잣대’ 없이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고, 청소년에게 대체로 이롭거나 그의 접근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예컨대 상품리뷰, 교육적 콘텐츠 또는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입법자의 임의적인 구별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규제방식에 있어서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2024. 6. 21. 수정, 2024. 7. 1. 접속,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160>.

한다는 등 소셜미디어 업체의 의무를 규율하는 부분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유럽연합, 영국 등 다른 권역에서의 논의 역시 사실상 인터넷상의 활동과 구별되는 소셜미디어의 명확한 특징을 찾아내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온라인상의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되, 소셜미디어 자체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즉 형식적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각종 법적 의무를 부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는 하였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셜미디어 규제입법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사실상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 간의 차별적 접근이나, 특정 업체나 기능에 대한 과잉한 제한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 사전검열금지원칙

1) 국가에 의한 검열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사전검열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의 경우 청소년규제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이러한 헌법적 쟁점이 선제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²⁹²⁾ 다만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업체 측의 자율규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음란물이나 불법콘텐츠의 게시를 제한하는 경우와,²⁹³⁾ 소셜미디어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광범위한 유해성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접근 단계에서부터 연령확인이 되지 않으면 접근가능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또 제한되는 정보 역시 유해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디오물 등급제 사건에서 일단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그 공개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경과하여 이용가능한 연령이 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²⁹⁴⁾ 이

292)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표현의 내용을 규제할 것,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제한할 것, 법적 규율을 통해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을 금지시킬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383-384면.

293)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도 견해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294) 현재 2007. 10. 4. 2004헌바36, 판례집 19-2, 362, 372.

러한 판시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없지 않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판시사항이 소셜미디어 규제입법에서도 설득력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예컨대 등급 부여 및 특정 화자를 가려내기 위한 후속조치는 모두 결합하여, 내용에 관한 평가가 선행됨을 전제로 특정 화자가 사전에 표현에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또한 당장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본권제한이 해제된다는 논리는 마치 징역형 등을 살면서 신체의 자유 제한을 받고 있는 수감자도 언젠가 시간이 경과하면 풀려날 것이므로 사실상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지나치게 연소자의 기본권에 대해서 연령에 따른 우월적 입장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접근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한다.

특히 미국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일단 내용 중립적인 제한이라는 전제 하에 엄격심사보다 한 단계 낮은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도 했지만, 이는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 주정부 측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론으로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보호입법이 외관상 청소년과 관련된 방법만을 중립적으로, 청소년이라는 화자를 형식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결국 청소년 유해성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기준을 사용한다는 점 외에도, 청소년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유해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해성의 경계에 있는 콘텐츠는 물론, 소셜미디어상에서 이루어지는 유익할 수 있는/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막대한 인간적 사고와 발상, 정보에 대한 접근이 모두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입법을 통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여러 규제는, 청소년 또는 다른 기본권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해당함은 물론, 다분히 공권력행사에 의해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²⁹⁵⁾ 이는 곧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295) 관련하여 청소년유해성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으로,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 (CSLAW '24)*, ACM, 2024, 94. 소셜미디어로 인해 청소년에게 어떠한 해악이 발생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해악”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기술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어떠한 정보가 불안이나 우울을 유발하는지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음란물 규제법과 오락물에서의 폭력 관련 표현을 규제하는 법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 고전문학이나 동화에서조차 매우 폭력적인 장면을 묘사하기도

금지하는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사적 검열

오늘날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사인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고는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표현의 경우 국가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하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국가에 의한 규제 못지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²⁹⁶⁾ 헌법적으로 사인에 의한 검열도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아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²⁹⁷⁾

소셜미디어가 국민의 의사형성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특히 국민의 의견이 너무 쉽게 검열 내지 차단당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을 특히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업체에 의한 사적 검열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여러 논점에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의 문언상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사실 우리 헌법의 조항 대부분은 사인이 아닌 ‘국가’를 전제로 하는 존재하는 것이고, 근

하지만, 미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모든 폭력적인 묘사를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보지 않음에도 어떠한 묘사가 일탈적, 병적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할 여지가 있다는 점, 즉 폭력성이 낮은 정도에 대한 합의에 이른 적조차 없음을 지적하는 견해로, Ben Sperry, *A Coasean Analysis of Online Age-Verification and Parental-Consent Regimes*, *ICLE Issue Brief 2023-11-09*,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2023, 30.

296) 예컨대 국민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의 가입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업체가 특정 내용의 표현을 자의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의 기본권제한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297) 어느 견해를 특정해서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 내용이 매우 잘 작성, 정리된 경우로, 최규환, 인터넷콘텐츠호스트의 사적 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19; 최규환,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2020, 223-271면의 예를 들자면, 필자는 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 사적 검열은 자율규제의 일환이지만 그 실질은 표현내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본질은 국가와의 공동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독과점화된 인터넷플랫폼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과 공적 영역으로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임의의 사적 검열은 사회적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당사자 간 사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의미를 현저히 축소시키므로, 이에 대해 헌법상의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한다. 필자는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 형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것을 검열로 포괄할 수 있도록 검열 개념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행정권 외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금지조치도 그 실질적 효과에 주목하여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열의 개념 요건으로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전성’과 ‘검열 주체’의 문제를 논하였다.

로3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사인에까지 확장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²⁹⁸⁾ 행정권을 반드시 독점하는 국가권력 내지 공적 조직의 일부가 아닌 사(私)업체에 대하여, 플랫폼의 특성상 독과점화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석상 국가와 사실상 같은 위치에 두도록 그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 속의 사전 검열을 경계하지만, 이는 사실 페이스북의 사전 검열, 카카오의 사전 검열과 같이 개별 업체를 산술적으로 더하여 추상적으로 그 위험성을 우려하는 것이고, 국가에 의한 검열과는 달리 어느 일개 업체의 검열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가 용이한 수단(다른 언론매체, 소셜미디어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물론 국가가 법령으로 소셜미디어가 자율규제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적어도 가이드라인과 같은 공권력에 준하는 작용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율규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둘째, 사전검열금지원칙을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반대로 업체 측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사전검열금지원칙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보면 당시 헌법재판정권자가 사전 검열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음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설령 예외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넓힌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 국가가 아닌 사인이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용자 수, 여론 영향력이 있으면 사전검열이 금지되는가? 적용범위를 넓힐 경우의 실익도 알기 어렵다. 헌법소송을 통해 일반 국민이 업체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받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사인에 확장할 수도 없다. 당초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국가의 한계를 헌법개정이 아닌 헌법해석을 통해 사인의 ‘헌법적’ 한계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업체를 헌정질서의 통제 밖에 두자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열금지원칙과 같이 국가권력의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강력한 헌법적 수단을 사인에게 직접 적용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사인인 업체가 다른 사인의 기본권을 사실상 침해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만약 일반조항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특히 플랫폼업체의 독과점화 및 언론소비자와의 구조적 불평등성이 문제 된다면, 사전검열금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업체의 어떠한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의 통제구조나 소비자 보호입법의 미비 등을 문제삼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298) 이는 헌법의 대사인적 효력의 인정 여부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셋째, 소셜미디어 등에 의한 사실상 사전검열에 의한 기본권 제한적인 효과는,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입법 등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등 대체적인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경우 그 독점적 지위와 사회적 파급력, 기능 등에 비추어 최소한의 공공성 내지 공정성, 그리고 절차적으로 보다 간소한 불복절차를 갖추도록 입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외국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절차상의 공정성을 강제하는 부분이 규제의 핵심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 방송, 신문 등의 기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조항을 국가의 ‘소셜미디어’에 관한 입법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나 영국이 바로 이러한 입법에 의한 공정성의 확보에 초점을 둔 경우에 해당하고, 미국의 연방입법안이나 일부 주입법의 경우에도 언론소비자로서 국민의 보호를 추구한 바 있다.

즉 사전검열금지원칙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오늘날 소셜미디어 업체 등이 새로운 표현매체로서 갖는 공공성과 이에 따른 의무, 책임까지 모두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소셜미디어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국가가 청소년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의무, 예컨대 공정성 의무 등을 법제화하는 등의 이행을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유럽연합과 영국의 예가 바로 일반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경우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을 실현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에 놓여 있을 것이나, 유럽연합과 영국의 예와 같이 절차적으로 최소한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율하지 않는다면, 또는 기존의 규제가 심히 불충분하다면 이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도 볼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²⁹⁹⁾ 다만 이러한 규제에서 유의할 점은, 여러 청소년규제입법 더 넓게는 소셜미디어플랫폼 규제입법과 그 위헌성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공성을 이유로

299)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종래 인터넷상에서 사업자의 보호 및 면책에 관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작용 하였던 통신품위법 면책조항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성매매 등 일부 영역에서는 책임을 면치 못하게 하는 등 업체 측의 공공성을 전제로 한 의무와 책임 부담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한 규제가 플랫폼업체나 그 이용자의 기본권실현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플랫폼에 대한 공공성의 부과는, 공공의 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비용과 시스템 구비를 위해 추가 비용의 지속적 지출을 야기하고, 이는 곧 중소 플랫폼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장을 지배하는 대규모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여러 선진 법제를 빠르게 수입하여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이미 연령확인 관련 입법이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이미 비교적 두텁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의 입법이 모두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입법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헌법적 한계를 갖는지에 관하여, 청소년 문제와 소셜미디어의 특성,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 과잉금지원칙

규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마치 청소년의 주류, 담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소셜미디어의 유해성만을 이유로 그의 접근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각종 청소년보호조치와 청소년유해성 배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실증 근거와 함께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청소년보호입법보다 덜 기본권제한적인 수단이 없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는 미국 등 외국과의 법과 사회문화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국가의 적극적인 후견적 개입을 합헌적인 것으로 보는 한편, 규제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유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싶다. 미국 사례에서 주로 다루어진 쟁점들 역시 근본적으로 이와 같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4. 개별 쟁점별 평가

가.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유해성 평가

미국의 사례를 보면 법원 역시도 본격적인 판단에 앞서 정부 권고 등을 인용하며 과학

계에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유익하면서도 동시에 정신건강 등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폭넓은 합의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 여론 역시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해롭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편향적으로’ 수용하였고, 이에 힘입은 입법자들은 ‘과학적 근거’ 하에 소셜미디어 규제입법을 실제 도입하거나 도입하려 하였다.³⁰⁰⁾

그러나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유해성과 그에 따른 규제 필요성은 위와 같이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만약 그와 같다면 해당 입법목적에 따라 해당 규제입법이 (우리의 경우라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성이 높은 미국 정부의 권고와 미국심리학회의 건강권고만으로도 이를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의 문제 있는 이용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잠재적인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소셜미디어로 인한 청소년 유해성이 주류나 담배처럼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는 없다.³⁰¹⁾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에 대해 심리학계의 견해는 대체로 분분할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이용이 긍정, 부정적인 효과 모두를 가짐은 인정

300) 메타 청문회 이후 KOSA를 발안한 상원의원인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과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설계와 사회적 해악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신”하면서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정부기관에 소셜미디어로 인한 정신건강 위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연방 보건국장(Surgeon General)이 “현재로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충분히 안전한 지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자문의견을 발표하면서 소셜미디어의 해악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건너뛰고 논의가 전개되고, 나아가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메타의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Digital Democracy) 등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이러한 주장이 증폭되었다는 분석으로,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CSLAW ’24)*, ACM, 2024, 91-92.

301) 관련하여 기술-법률 만능주의(techno-legal solutionism)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청소년 온라인 안전 규제를 살피는 입장으로,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CSLAW ’24)*, ACM, 2024, 86-97 참조. 이 논문에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업들에게 설계 자체로 안전하도록 요구하는 입법을 도입하거나 도입하려 하였는데, 이는 소셜미디어 설계가 청소년에게 해악을 초래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제품의 설계만 개선되면 정신건강 문제나 집단 괴롭힘과 같은 복잡다단한 해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추정(presuming)함으로써 기술만능주의자적 논리(technosolutionist logics)를 내포한 것으로, 기술-법률 만능주의가 접근체계/framework로서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 입법 취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에서 흔한 “강한 인과 주장”을 거부하였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르면 메타의 내부 문건(홍보조사결과)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전적으로 청소년의 자기 보고(self-response)에 의존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자기보고가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다른 방법론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경향도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여럿 존재한다고 지적되었다.³⁰²⁾

국내의 여러 연구 역시 그와 유사하다. 그 중 몇 가지 특징을 뽑아보면,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시간에 따라 정신건강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점은 성인의 경우도 다르지 않음),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점의 연장선으로 다루어진다는 점(학교폭력, 우울증, 중독 모두 그와 같음),³⁰³⁾ 소셜미디어의 구체적인 이용 양태에 따라 부작용의 양상이 달라지고 연령 차이를 고려하여 모든 청소년이 동일한 수준의 부정적 효과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반드시 유해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³⁰⁴⁾ 더욱이 소셜미디어의 이용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설령 일부 소셜미디어의 잘못된 이용으로 인한 병폐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목적을 막연히 긍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302) 대표적으로 Madeleine J. George et al, Young Adolescents’ Digital Technology Use, Perceived Impairments, and Well-Being in a Representative Sample, *J. Pediatr.* 219, 2020, 181.

303) 미국에서도 예컨대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이 오프라인 사회의 역할과 깊은 연관이 있다거나, 오프라인에서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겪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거나(또는 온라인 피해를 신고하는 청소년의 특성이 오프라인 피해를 신고하는 청소년의 특성과 유사하다거나), 온라인상의 왕따 문제는 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학교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그와 같다. 대표적으로 Peter K. Smith and Sonia Livingstone, Child Users of Online and Mobile Technologies—Risks, Harms and Intervention,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Frameworks for Clinical Training and Practice*, David Skuse (ed.). John Wiley & Sons, 2017, 14는 이미 취약성이 존재하는 청소년에게 해악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한다.

304) 관련하여 기술 자체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적어도 청소년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의지하는 ‘공간(place)’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오히려 소셜미디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것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시적으로(visible)’으로 보이게 한다는 결론을 내는 입장으로, Danah Boyd, *It’s Complicated: The Social Lives of Networked Teens*, Yale University Press, 2014, 24, 47, 92-93, 110, 113, 122, 136, 212.

나. 유형별 시사점

이하에서는 미국에서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개별 쟁점을 정리한다. 청소년 보호는 구체적인 입법목적에 따라 청소년 증독예방, 제3자의 불법적 접근 방지, 자해와 같은 유해콘텐츠 배제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청소년을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1) 부모의 원칙적 동의를 강제하는 유형 - 연령확인제 전제

종전 미국 소셜미디어 규제는 여타 인터넷규제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자발적인 연령 확인에 의존하였고, 우리의 법제 역시 적어도 소셜미디어의 이용에 관해서는 청소년이용 불가 매체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다. 반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부모의 원칙적 동의를 강제하는 입법은 청소년의 매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연령확인제의 도입을 강제하게 된다.

우선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금지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하나는 소셜미디어의 이용 자체의 유해성을 근거로 부모의 교육권을 청소년의 다른 모든 기본권보다 우월하게 보아야 할 정도로 소셜미디어의 해악이 심대하고, 그와 같은 제한이 청소년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최소한의 것이냐는 점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소셜미디어의 이용 제한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제한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 기본권주체로서 청소년의 연령과 발달단계별 특성에 대한 맞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특히 성인에 가까운 청소년과 유아인 청소년은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 없음),³⁰⁵⁾ 성인의 경우 소셜미디어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삶을 살기 어렵는데 청소년기에 전적으로 노출을 금지하다가 갑자기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소셜미디어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 청소년에게 유익하거나 그 해악의 우려가 적은 경우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³⁰⁶⁾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305) 특히 영국 규제의 경우 이와 같은 연령별 접근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306) 청소년 보호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기기 구입 결정, 시기, 조건 설정/특정 앱 또는 사이트 차단/통신대상 및 기기 사용시간 제한/필터링/모니터링)을 가지고 있고, 부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 지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³⁰⁷⁾ 우리의 섯다운제 판결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비판(예컨대 인터넷게임만 금지하는 것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설령 부모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지어 부모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중립적인 입장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느냐는 것이다. 우리의 여러 규제(예컨대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수 있는 안경의 통신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눈 건강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와 같이)는 수범자의 의사보다는 그의 이익의 총합 특히 공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나,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향후 언제까지 이와 같은 판단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한편 미국 사례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확인제의 도입은 청소년과 부모는 물론, 소셜미디어 업체나 다른 성인 이용자의 기본권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셜미디어의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는 청소년이용불가 매체 등에 관해서는 비교법적으로 대단히 강한 수준의 연령확인제를 강제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포함하여) 막연히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대체로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관련 보호법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령확인제가 불가피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이 단순히 청소년과 그 부모에게 번거로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여러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하여 익명 표현 내지 행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헌법적

정적 외부효과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즉 어떠한 온라인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적합한 지 부모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도구를 더 많이 홍보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장려하는 등 다른 해결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으로, Ben Sperry, A Coasean Analysis of Online Age-Verification and Parental-Consent Regimes, *ICLE Issue Brief 2023-11-09*,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2023, 20-22.

307) 현실적으로 기업이 콘텐츠 제작자, 광고주, 부모, 성인 이용자, 청소년 자체의 “허용된(allowed)” 행동이 청소년의 온라인 경험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으로,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CSLAW ’24)*, ACM, 2024, 93.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청소년 사이의 현실적인 인간관계나 갈등을 조절하거나, 혹여 재해나 역사에 관한 정보 등 어떠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도록 설계될 수 없다고 한다.

정당화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주류 구매와 같이 성인만이 이용가능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연령인증 등에 의해 신분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작 왜 인터넷에서는 그보다 높은 비중으로 신분의 노출을 강제하는 것인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NetChoice, LLC v. Griffin 사건에서 보듯이 연령확인제는 소셜미디어의 이용개시만을 통제할 뿐 그 이후의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남긴다. 연령확인제의 어렵지 않은 우회가능성이나, 금지된 행위의 음성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³⁰⁸⁾

2)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유형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로는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고, 당연하게도 후자의 경우가 부모의 교육권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기본권제한적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1) 부모의 원칙적 동의를 강제하는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소셜미디어의 모든 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일 뿐 수면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같이 특정시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제한의 강도에

308) 한편 미국의 연구 중에는 연령확인 및 (검증가능한) 부모 동의 제도가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부모의 감독과 보호를 강화할 것인지, 반대로 역효과를 일으켜 청소년이 해당 플랫폼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만들 것인지에 관한 법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한 경우도 있다. Ben Sperry, A Coasean Analysis of Online Age-Verification and Parental-Consent Regimes, *ICLE Issue Brief 2023-11-09*,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2023, 1-29. 이에 따르면 종전 연방대법원이 *United States v. Playboy Entertainment Group*, 529 U.S. 803 (2000); *Ashcroft v. ACLU*, 542 U.S. 656 (2004);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456 U.S. 786 (2011) 등의 사건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엄격심사(strict scrutiny)를 하면서 최소한의 제한 수단인지 여부를 살폈는데, 이는 코즈 정리(Coase theorem) - 모든 물건에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이러한 소유권을 비용 없이 이전시킬 수 있다면 완전경쟁이 외부효과를 시장으로 내부화시켜 사회적 최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 - 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을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콘텐츠 규제 대신 부모가 최소비용 지불자로서 기술 내지 효과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전제했다고 한다. 예컨대 위 Playboy 사건에서 법으로 케이블TV에서 성인물의 제공 자체를 차단하거나 제공 가능한 시간을 제한하는 대신 부모에게 콘텐츠 차단기술을 알리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거나, Brown 사건에서 청소년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도 청소년과 부모가 이미 등급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므로 거래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en Sperry, A Coasean Analysis of Online Age-Verification and Parental-Consent Regimes, *ICLE Issue Brief 2023-11-09*,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2023, 6-15.

만 차이가 있을 뿐 주요 쟁점은 다를 바가 없다.

참고로, 우리의 경우 과거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규율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입법적으로 변경된 바 있다.

3) 이용가능한 기능을 제한하는 유형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기능을 제한하는 유형으로는, (i) 청소년 계정의 접근가능한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 예컨대 청소년 계정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스스로도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ii) 청소년 계정에 한해서는 중독성 있는 인터페이스 등 은폐된 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이른바 중독성 기능이나 다크패턴 등의 금지 포함),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프로파일링 금지) 또는 성인 인증이 되지 않는 한 가장 높은 수준의 청소년 보호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개인정보 처리 제한, 유해성 있는 정보의 원천적 노출 금지), (iii) 청소년 계정에 대한 부모의 접근권한을 인정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모든 유형 역시 연령확인제를 전제로 하는데,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해야 그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헌법적 쟁점이 그대로 문제되고, 다만 개별 유형에 따라 제한의 방향성이 다르므로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가 다소 달리 다투어질 수 있을 뿐이다.

위 (i)의 경우 부모의 원칙적 동의를 강제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문제가 제기된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가능 범위를 지인 간 또는 부모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협소하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결국 청소년보호를 명목으로 청소년을 소셜미디어 사회로부터 전면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실효성이 있는지, 침해최소적인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위 (ii)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범위의 기본권제한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보호라는 입법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청소년문제에 있어 중독성이 인터페이스에 의한 것인지, 콘텐츠에 의한 것인지, 성인과 구별되는 청소년의 특징 때문인 것인지 확실하게 구별하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³⁰⁹⁾ 어떠한 기능들은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 역시 동등한 수준으로

309) 유사하게 소셜미디어상 청소년 피해의 경우 그것이 소셜미디어로 인한 것인지, 이용자인 청소년 자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맞춤형 정보의 수집 금지는 법경제학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익한 영업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³¹⁰⁾ 이러한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시장지배적 기업의 영향력만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과 부모가 접근 가능한 콘텐츠의 풀(pool)을 줄이게 되는데, 이 역시 헌법적 판단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³¹¹⁾ 물론 미국보다 덜 시장주의적 접근을 허용하는 우리의 경우, 유럽연합 쪽 입법례와 같이 청소년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실질화 등을 이유로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 소비자로서 이용자를 대등하게, 그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하려는 경우가 그와 같다.³¹²⁾

반면 (ii) 유형 중 성인 인증이 되지 않는 한 가장 높은 수준의 청소년 보호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여러 입법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단순히 청소년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기능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물론 소셜미디어 업체와 다른 성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크게 제한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을 진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위 (iii)의 경우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통신의 비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즉 부모가 모든 연령의 청소년에 대해 교육권을 이유로 그가 주고받는 의사소

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둘의 조합에 의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CSLAW '24)*, ACM, 2024, 88.

310) 즉 중대한 유익성과 동시에 사소한 유해성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과 같으면 청소년을 상대로 서비스를 했을 업체가, 규제입법 이후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

311) 이와 같은 규제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쉬운 거래(easy bargain)가 성사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높아 결과적으로 청소년과 그 부모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 자체의 양과 질을 모두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실상 검열의 한 유형이 된다는 입장으로, Ben Sperry, *A Coasean Analysis of Online Age-Verification and Parental-Consent Regimes*, *ICLE Issue Brief 2023-11-09*,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2023, 16-19.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은 무료 서비스의 아동 정보수집을 사실상 금지시킴으로써 맞춤형 광고 등의 수익을 낮췄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 대상 콘텐츠의 양적, 질적 저하와 함께 일부 상위 서비스로의 집중 현상을 심화시켰다거나, 호주, 캐나다, EU에서 소셜미디어로 하여금 특정 뉴스 콘텐츠에 링크(linking)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자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링크 자체를 제한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 것도 유사한 예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312) 소셜미디어가 속임수 질문을 사용하여 결제를 유도하거나, 계약취소, 해지, 탈퇴 등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대금이 매번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경우 등이 그와 같다.

통의 내용이나 접한 정보 전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모든 정보(대화내역 포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부터 부모의 요청에 따라 업체가 공익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청소년 가출, 약물 문제) 특정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현행법이 대체로 이와 같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4) 유해성 완화에 관한 각종 조치를 요구하는 유형(업체)

업체 측에 유해성(예컨대 중독성이나 유해콘텐츠 노출) 완화를 강제하는 각종 조치를 요구하는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럽연합이나 영국에서 소셜미디어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거나 평가 결과 청소년 유해성 내지 위험을 완화, 감소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나, 이와 유사한 캘리포니아주의 위험보고서 작성 의무화 같은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반드시 연령확인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살펴본 여러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Netchoice LLC v. Bonta*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같이 규제입법과 유해성 완화 사이의 인과관계 및 책임 인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위험평가 내지 완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이와 같은 조치가 청소년 유해성을 완화시키는데 적합하면서도 침해최소적인 수단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다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청소년과 그 부모가 유해성 신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면 커다란 헌법적 문제 없이도 기본권 실현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5. 대안적 논의의 소개

앞서 살펴본 미국심리학회 자료는, 비록 미국 입법자들이 소셜미디어를 규제해야만 하는 근거로 많이 인용되었으나, 반대로 규제 외에 대안적 논의로도 볼 수 있는 다수의 권고사항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청소년규제입법에 관한 헌법적 논의를 함은 물론, 소셜미디어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많은 참

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온라인 연대의식, 정서적 친밀감 등을 제공하는 기능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 기능은 물론 이용, 허가, 동의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져야 하고 일부 설계는 ‘아동’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초기 청소년기(10-14세) 청소년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인의 모니터링(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논의, 코칭)이 권장되고, 자녀가 성장하고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³¹³⁾를 획득하면서 보다 넓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다만 이러한 모니터링이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

④ 정신적 해악을 줄이기 위해 자해, 자살, 타인에 대한 해악 또는 식이장애 행동(식이 제한, 구토, 과도한 운동)을 초래하는 등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부적응한(maladaptive) 행동을 묘사하는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 보고(report)되고, 제거되어야 하며, 관련 기술도 이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⑤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능력 등에 따른 온라인 차별, 편견, 증오 또는 사이버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도 최소화해야 한다.

⑥ “소셜미디어의 문제가 될 만한 이용(problematic social media use)”의 징후에 대한 정기적인 스크리닝(screening)이 필요하다.

⑦ 청소년의 수면과 신체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⑧ 특히 외모 콘텐츠 등 사회적 비교를 위한 이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⑨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균형 잡히고 안전하며 의미 있는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량과 기술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³¹⁴⁾

313) 흔히 디지털 기기의 활용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의 탐색, 이해, 판단,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1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ealth Advisory on Social Media Use in Adolescence, 2023, 4-8.

V. 결론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많이 이용되는 매체이지만, 개념적으로 소셜미디어를 다른 인터넷활동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며,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부작용 역시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병폐 우려보다 훨씬 다채롭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비해 실제 그 자체로 인한 폐해는 오로지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규제하는 입법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넘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종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입장에서, 근래 소셜미디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여러 형태의 규제입법이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헌법적 분쟁도 현재진행형에 있다. 규제입법의 주된 내용은 청소년보호 목적 하에 청소년이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유해한 콘텐츠 내지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미국 법원에 의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반 등의 이유로 제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외의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청소년과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여타 국가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소셜미디어 관련 청소년규제입법은 청소년과 그 부모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업체, 다른 성인 이용자 등 여러 기본권주체의 이익을 실현하거나 또는 제한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양상과 심사기준, 그리고 청소년유해성과 구체적인 규제 유형별 헌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현상은 사회적 병폐의 원인으로 지적되기 쉽지만,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규제입법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수단이 아닐 수 있고,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헌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성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설진아, 소셜미디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이효원, 대한민국 헌법강의, 박영사, 2024.

Danah Boyd, *It's Complicated: The Social Lives of Networked Teens*, Yale University Press, 2014.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Child Online Safety Legislation: A Primer,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24, 10.21428/bfcb0bff.de78f444.

Peter K. Smith and Sonia Livingstone, Child Users of Online and Mobile Technologies—Risks, Harms and Intervention,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Frameworks for Clinical Training and Practice*, David Skuse (ed.). John Wiley & Sons, 2017.

【논문】

강민주,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청소년과 성인초기의 자아정체감 및 친밀감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6호, 2013, 1-28면.

강선경, 최유진, 청소년의 SNS(Social Network Service)과의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 2022년 청소년 정신건강·중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5호, 2023, 359-367면.

고은혜, 배상률,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SNS 이용행태 및 부모중재,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6호, 2016, 451-472면.

김소정, 고그림, 청소년 집단에서의 자해와 SNS 사용: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인지행동치료 제20권 제3호, 2020, 247-275면.

김진희, 김정모, 김영식, 오연주, 청소년의 SNS 과의존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6호, 2017, 155-178면.

김희화, 초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행동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30권 제6호, 2023, 241-262면.

공배완, 아노미(Anomie)적 사회환경과 청소년 범죄: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제15권 제6-1호, 2015, 37-44면.

곽효정, 강상준, 청소년 우울이 인터넷 게임중독과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인문사회 21 제11권 제2호, 2020, 581-596면.

권진, 김보람,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제52권, 2019, 225-248면.

김리원, 전지형, 청소년의 우울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 간 폐쇄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검증, 생명연구 제58권, 2020, 169-189면.

김성화, 독일의 SNS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권법평론 제22호, 2019, 3-36면.

김지혜,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 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건과 셋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3권 제1호, 2014, 111-130면.

김진욱, 양혜정, 청소년의 우울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 - 교우관계 조절효과 검증, 생명연구 제56권, 2020, 101-122면.

김현귀,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법과 정책 제26권 제1호, 2020, 27-59면.

김혜경, 청소년유해성의 새로운 정의기준과 법적 정비,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2009, 669-700면.

김혜영, 민정식,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온오프라인 폭력피해경험 및 소셜미디어 중독, 자기통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8권 제4호, 2014, 323-333면.

나은경, 홍주현, 성형·미용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과 소셜 미디어 이용의 사회심리: 여고생의 신체 이미지와 검열, 사회비교 및 자기만족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26권 제1호, 2018, 71-96면.

문영주, 최은실,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대인불안과 또래관계 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7권 제7호, 2020, 77-108면.

박성훈, 심현정, SNS에서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특징 및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1호, 2015, 156-185면.

박소영, 조성희,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 디지털융복합연

- 구 제13권 제2호, 2015, 371-379면.
- 박영순,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SNS중독경향성 관계에서 우울과 자기몰입의 이중매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1호, 2020, 1973-1980면.
- 박재영, 한치훈, 오주현, 청소년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양육방식과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8호, 2019, 1-13면.
- 박정훈, 미국의 온라인상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와 위험성심사기준 - 청소년온라인보호법(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0권 제2호, 2011, 385-415면.
- 박종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111-145면.
- 박주애, 최응렬, 청소년의 SNS 및 서비스메신저 접촉빈도가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친구관계(애착)의 조절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7권 제1호, 2021, 95-112면.
- 배상률, 이창호,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여가문화 및 팬덤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 페이스북을 활용한 청소년 집단지성 토론단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89-218면.
- 손수진, 정성진, 청소년의 자기과시성향, 사회자본 및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융합학문과 기독교 제3권 제1호, 2022, 41-51면.
- 손자영, 여자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의미, 청소년학연구 제27권 제1호, 2020, 55-83면.
- 심용출, 신경미, 여성청소년의 SNS 과몰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10호, 2017, 29-59면.
- 이규빈, 이찬우, 심재권, 청소년의 SNS 사용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의 원인 및 연관성, 교과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2019, 21-36면.
- 이동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에서 액세스권의 헌법적 의의, 유럽헌법연구 제13권, 2013, 263-292면; 김명수,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제4권 제2호, 2014, 110-145면.
- 이소영, 전해정, SNS 이용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및 충동성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2015, 7607-7616면.
- 이윤주, 손승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내현적 자기

- 애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30권 제12호, 2023, 247-272면.
- 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1-268면.
- 이창호, 이경상,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59-285면.
- 임은영, 이성규, 성혜연, 여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섭식장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25권 제2호, 2023, 51-72면.
- 전신현, SNS는 청소년 삶만족에 이로운가? 현실에서의 부모와 교사, 친구관계, 삶만족 그리고 SNS사용과의 관계, 공공정책연구 제40권 제2호, 2023, 153-179면.
- 조소연, 정주원, 중학생의 SNS중독 경향성에 있어 내현적 자기애와 소외감,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29권 제3호, 2017, 125-140면.
- 천수엽,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외로움과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8권 제4호, 2021, 119-146면.
- 최규환,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2020, 223-271면.
- 한다정, 김빛나,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소외에 대한 두려움(FoMO)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7권 제3호, 2020, 243-261면.
- 황난희, 정하나, 김정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불안통제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제13권 제6호 (통권 제55호), 2022, 4761-4776면.
- 황성기,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 현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 2014, 27-49면.
- 曾我部真裕, モバイル・インターネットにおける青少年保護対策の新しい動きについて, 情報法制研究 1 (0), 2017, 78-87.
- Aichner T. and Jacob F., Measuring the degree of corporate social media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57(2), 2015, 257-276.
- Aichner T., Grünfelder M., Maurer O., and Jegeni D., Twenty-Five Years of Social

- Media: A Review of Social Media Applications and Definitions from 1994 to 2019,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4(4), 2021, 214-222.
- Alemi, Farrokh et al., Support for the Kids Online Safety Act (KOSA), With Caution, *Quality Management in Health Care* 32(4), 2023, 278-280.
- Ben Sperry, A Coasean Analysis of Online Age-Verification and Parental-Consent Regimes, *ICLE Issue Brief 2023-11-09*,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2023, 1-29.
- Boyd D. M. and Ellison N. B.,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007, 210-230.
- Carr, C. T. and Hayes, R. A., Social Media: Defining, Developing, and Divining, *Atlantic Journal of Communication* 23(1), 2015, 46-65.
- Costello N et al., Algorithms, addictio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n Interdisciplinary Study to Inform State-level Policy Action to Protect Youth from the Dangers of Social Media,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49(2-3), 2023, 135-172.
- Edward Longe, Keeping Teens Safe On Social Media: A Guide for Free-Market Lawmakers, *Issue Commentary* July 2023, The James Madison Institute, 2023, 1-8.
- Eric W. T., Spencer S. C. and Karen K. L. M., Social media research: Theories, constructs, and conceptual frame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5(1), 2015, 33-44.
- Joe Cosgrove Jr., Section 230: Twenty-Six Words that Created Controversy, *Infrastructure* 61(2), 2022, 1-16.
- Kaplan A. and Haenlein M., Users of the World, Unit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Social Media, *Business Horizons* 53(1), 2010, 59-68.
- Lahti, Kaylee, Minor Exploitation and Regulatory Shortfalls: Safeguarding Children's Data in the Age of Modern Technology, *Theses/Capstones/Creative Projects*,

2024, 1-32.

- Madeleine J. George, Michaeline R. Jensen, Michael A. Russell, Anna GassmanPines, William E. Copeland, Rick H. Hoyle, and Candice L. Odgers, Young Adolescents' Digital Technology Use, Perceived Impairments, and Well-Being in a Representative Sample, *J. Pediatr.* 219, 2020, 180-187.
-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CSLAW '24)*, ACM, 2024, 86-97.
- Mary B. Kribble, Fear-Mongering, Filters, the Internet, and the First Amendment: Why Congress Should Not Pass Legislation Similar to the 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13(2), 2008, 496-529.
- Nicholas Bradley, Something for Nothing: Untangling a Knot of Section 230 Solutions, *Cardozo Law Review de novo* 87, 2022, 57-89.
- Park, Jinkyung et al., Towards Resilience and Autonomy-Based Approaches for Adolescents Online Safety (May 20, 2023).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4608406> or <http://dx.doi.org/10.2139/ssrn.4608406>.
- Steinberg, Stacey, The Myth of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SMU Law Review,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 Research Paper Forthcoming*, 2023, 1-40.

【보고서, 논평, 토론회 자료집 기타】

- 김윤화,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미디어 이용 제한, KISDI STAT Report 24-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
- 배상률, 이창호, 김남두,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I: 10대 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 이주영, 초점 : 소셜 미디어 서비스 현황 및 활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5권 제9호(통권 제55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 임영호, 김은미,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언론학의 과제 : 정보관계망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학술대회자료, 2011, 195-227면.

조성은, 한은영, 석지미, 김도훈, 소셜 미디어의 이용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소셜 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미래정책(III), 기본연구14-15-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최규환, 인터넷콘텐츠호스트의 사적 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19.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02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ealth Advisory on Social Media Use in Adolescence, 2023.

Kathleen Ann Ruane, How Broad A Shield? A Brief Overview of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LSB1008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2018.

Peter J. Benson, NetChoice v. Bonta and First Amendment Limits on Protecting Children Online (LSB1107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2023.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2023.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미국에서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2024年 9月 5日 印刷

2024年 9月 12日 發行

발행: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인쇄: 성문인쇄사(02·2272·7553)

ISBN 979-11-94029-30-4

<비매품>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